

KOTRA COUNTRY REPORT
KOTRA 국가정보

인도

I. 일반

1. 국가개요

가. 국가개황

국명	인도(The Republic of India)
면적	3,287,263 km ² (자료원 : 인도 정부 포탈(India.Gov.in))
수도	뉴델리(New Delhi)
민족(인종)	
언어	힌두어, 영어 외 21개
종교	힌두(80%), 이슬람(13%), 기독교(2.3%), 시크교(1.9%), 기타(2.8%)
기후	<p>열대 몬순, 온대 기후, 고산 기후 등 다양하다.</p> <p>인도의 국토는 대부분 열대에 속하나 넓은 지리적 규모와 다양한 지형으로 구성되어 있어 지역마다 기후가 달라진다.</p> <p>동부와 서부는 강수량 면에서도 편차가 크며, 수도인 뉴델리(New Delhi), 비하르(Bihar), 우타르프라데시(Uttar Pradesh) 등 인구밀도가 높은 중북부 지역은 아열대 습윤 기후에 속하여 여름에는 45도가 넘는 온도가 이어지나 겨울이 접어드는 10월 말 이후 기온이 떨어져 1월 경에는 4~10도 내외까지 기온이 내려간다. 6월부터 8월은 우기이다.</p>
국가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 원수(대통령): 드라우파디 무르무(Droupadi Murmu)<ul style="list-style-type: none">- 취임일: '22.7.25 (5년 임기)○ 총 리: 나렌드라 모디 (Narendra Modi)<ul style="list-style-type: none">- 취임일: '14. 5. 26 ('19. 5.19. 연임)- 소속 정당: 인도인민당 (Bharatiya Janata Party)

2. 한국과의 관계

가. 한국과의 국교 수립 및 교민 수

국교 수립일

1973-12-10 (자료원 : 주 인도 한국대사관)

협정 발효 현황

협정명	발효일자	발효내용	비고
무역협정 체결 및 발효	1974-08-01	무역협력	연월기준
문화협정 체결 및 발효	1974-08-01	문화협력	연월기준
과학기술협정 체결	1976-03-01	과학기술협력	연월기준. 동년 8월 발효
이중과세 방지협정 체결	1985-07-01	이중과세 방지	연월기준. 1986년 8월 발효
항공협정 체결 및 발효	1992-03-01	항공협력 및 정기 민항노선 허가	연월기준
관광협력협정 체결	1993-09-01	관광협력	연월기준. 동년 10월 발효
투자보장협정 체결	1996-02-01	투자보장	연월기준. 동년 5월 발효
형사사법공조조약 및 범죄인인도조약 체결	2004-10-01	형사사법공조 및 범죄인 인도 협력	연월기준. 2005년 6월 발효
외교관 및 관용여권 사증면제 협정	2005-08-01	외교관 및 관용여권 사증면제 협력	연월기준. 동년 10월 발효
한-인도 방산군수협력 양해각서 서명	2005-09-01	한-인도 방산군수협력	연월기준
세관협력협정	2006-02-01	세관협력	연월기준. 동년 4월 발효
해적방지 및 수색구조를 이한 협력 양해각서 서명 및 발효	2006-02-01	해적방지 및 수색구조 협력	연월기준
과학기술협정(개정) 체결	2006-02-01	과학기술협력	연월기준. 동년 8월 발효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체결	2009-08-01	FTA 협약	연월기준. 2010년 1월 발효
수형자 이송조약 체결	2010-01-01	수형자 이송협력	연월기준. 동년 6월 발효
국방협력 및 국방기술 협력 양해각서 서명	2010-09-01	국방협력 및 국방기술 협력	연월기준
사회보장협정 체결	2010-10-01	사회보장협정	연월기준. 2011년 11월 발효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정 체결	2011-07-01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협력	연월기준. 동년 10월 발효
사증절차간소화 협정 체결 및 발효	2012-03-01	사증절차간소화	연월기준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 체결	2014-01-01	군사비밀정보의 보호 협력	연월기준. 동년 10월 발효
이중과세 방지협정(개정) 체결	2015-05-01	이중과세 방지협정(개정)	연월기준. 2016년 9월 발효
시청각 공동제작협력 협정 체결	2015-05-01	시청각 공동제작협력	연월기준. 동년 9월 발효
항공협정 개정	2015-11-01	항공협정 개정	연월기준
군함건조 협력 양해각서 서명	2017-04-01	군함건조 협력	연월기준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 체결 및 발효	2017-06-01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 공여 가능	연월기준

한국교민 수

11,200 명 (자료원 : 주 인도 한국대사관/2021.1)

나. 최근 양국간 현안이슈

정치

- 제1차 한-인도 고위급 글로벌 이슈 정책협의' 화상 개최
 - 2021.1.7.(목) 오후 3시 30분(서울시간) 함상욱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은 비네이 꾸마르(Vinay Kumar) 인도 외무부 국제기구 담당 차관보와 '제1차 한-인도 고위급 글로벌 이슈 정책협의'를 화상 개최했다.
 - 한-인도 양측은 이번 협의를 통해 2021-22년 인도의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활동 계획, 한반도 문제를 포함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주요 의제와 함께, 우리나라의 올해 12월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 개최 준비, 최근 다자주의에 대한 도전 및 향후 전망 등 주요 국제 현안에 대한 상호 관심사를 논의했다.
 - 이번 제1차 협의는 안보리 신규 비상임이사국인 인도와 다자이슈에 대한 별도 협의채널을 구축함으로써 양국 간 다자협력 기반을 강화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 한-인도 외교장관 의견 교환
 - 2021. 3. 9.(화)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수브라마남 자이산카르(Subrahmanyam Jaishankar) 인도 외교장관과 취임 후 첫 전화 통화를 갖고, 신남방정책의 핵심협력국인 인도와의 양자 관계, 코로나19 대응,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 양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과 나렌드라 모디 총리 간의 각별한 우의와 신뢰를 바탕으로 두 나라가 최상의 특별전략적 동반자관계를 유지해오고 있음을 확인하고, 코로나 상황에서도 더욱 긴밀히 소통하면서 실질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 정 장관은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했으며, 자이산카르 장관은 인도가 2021~2022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인 만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실질적 진전을 지원해나가기로 했다.
- 한-인도 통상장관회담
 - 2022.1.10~12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인도를 방문해 인도 통상장관과 회담을 가지고, 경제, 통상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 지난 코로나19 사태로 2019년 6월 이후 중단된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 협상 재개를 합의하는 등 양 국가간 경

제 협력을 통해, 휴대전화·디스플레이, 자동차, 섬유화학 등 제조 분야에서 더 적극적인 활발한 경제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 코로나19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21년 교역액이 전년대비 40.5%가 증가한 역대 최고치 236억 달성하는 등 2030년까지 양국 교역액 500억 달러 목표 조기 달성을 기대하였다.

경제

○ 2030년까지 양국 교역액 500억 달러 확대 합의, 경제교류 확대

- 2018년 7월 인도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개최된 공동성명을 통해 현재 200억 달러 수준인 양국 간 교역액을 2030년까지 500억 달러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 아울러, 한-인도 간 3P 플러스 협력을 슬로건으로 내세우며, 경제분야에서 구체적으로 제조업 협력강화, 인프라 구축 협력강화, 미래 기술 협력확대, 교역기반 강화의 네 가지 액션플랜을 제시했다.

- 2018년 8월, 한국 정부는 인도를 포함한 신남방국가들과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신남방정책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 중이다.

- 2022년 1월, 한국 통상교섭본부장과 인도 상공부장관과의 면담에서 2030년까지 양국 간 교역액 500억 달러 수준을 달성하기 위하여 양국 간 CEPA 개선협상과 기업 간 교류 확대를 합의하였다.

○ 한-인도 CEPA 개정협상 진행

- 한국과 인도는 2009년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을 체결하였으며, 2010년 발효된 이래 양국 간 교역 및 경제교류 확대에 큰 역할을 했다.

- 하지만, 일본, ASEAN 등 인도가 체결한 FTA 조약에 비해 양허수준이 낮아 활용률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잇달았고, 이에 양국은 2016년 6월부터 CEPA 개정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2018년 7월 양국 정상은 CEPA의 조기성과 도출을 위해 협력할 것을 합의하였고, 2019년 6월까지 8차 개선협상이 진행된 바 있다.

- 2022년 1월 11일, 뉴델리에서 한국 통상교섭본부장과 인도 상공부 장관의 면담으로 2019년 6월 이후 중단되었던 한-인도 CEPA 개선 협상이 재개될 예정이다.

○ 한-인도 전자적 원산지정보 교환시스템(EODES) 도입 예정

- 수출국 원산지증명서 정보를 수입국에 전자적 방법으로 전송하여 통관 시 수입국에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도록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 韓 관세청, 인도와 2023년 EODES 추진 목표 설정('22년 7월)

○ 인도 - 태평양 프레임워크(IPEF) 출범

- 2022년 5월 23일, 무역 촉진, 디지털 경제, 탈탄소화 등에 대한 공동 과제 달성을 추구하는 경제협력체인 인도 - 태평양 프레임워크(IPEF)가 출범했다.

※ 참여국 : 미국, 한국, 호주, 브루나이,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피지

- 14개 IPEF 참여국들은 '22년 9월 8일(목)과 9월 9일(금),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개최된 IPEF 장관회의를 통해 공식적으로 협상 개시를 선언하였다.

○ 한-인도 경제관계 동향

- (무역) 2021년 양국의 무역규모는 전년 대비 40.5% 증가하여 2011년 200억 달러 달성 이후 가장 많은 교역액인 236.6억 달러를 기록했다.

- (수출) 2021년 우리나라의 對인도 상품수출은 전년 대비 30.7% 증가한 156억 달러 기록했다.

- (수입) 2021년 우리나라의 對인도 상품수입은 전년 대비 64.4% 증가한 80.6억 달러를 기록했다.

- (투자) 2021년 상반기 우리나라의 對인도 투자 규모는 투자액 기준 1.33억 달러로, 전년 3.62억 달러 대비 63.3% 감소했다.

※ 삼성 등 대기업의 투자는 57.7%, 중소기업의 투자는 69.7% 감소한 것이 투자 감소의 주요 원인

문화

○ 한국 문화원의 운영

- 인도의 수도인 뉴델리에는 주인도 한국문화원이 개설되어 있다. 한국 문화원은 한-인도 문화교류의 첨병으로 인도인과 현지 교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최근에는 전인도 한국어 말하기 대회, 인디(Indie) 만화 축제 등을 개최하였고, 인도의 K-Pop 관심 증대를 위한 각종 행사를 개최하는 등 양국 간 문화교류 강화를 위해 힘쓰고 있다.

3. 경제현황

가. 주요 경제지표

경제지표	2018	2019	2020	2021	2022
경제성장률 (%)	6.5	4	-8	8.9	
명목GDP (십억\$)	2,702.93	2,831.55	2,667.69	3,041.99	
1인당 GDP (PPP, \$)	6,669.61	6,956.53	6,531.97	7,340.9	
1인당 명목 GDP (\$)	1,998.26	2,070.41	1,935.04	2,282.97	
정부부채 (% of GDP)	70.4	75.1	90	86.7	
물가상승률 (%)	3.4	4.8	6.2	5.3	
실업률 (%)	6.97	7.58	9.27	7.98	
수출액 (백만\$)	330,078.08	324,339.6	276,279.6	395,462.3	
수입액 (백만\$)	514,078.35	486,058.5	372,823.8	573,670.2	
무역수지 (백만\$)	-184,000.27	-161,718.9	-96,544.2	-178,207.9	-
외환 보유고 (백만\$)	375,364.9	457,470	584,107	633,614	
이자율 (%)					
환율 (자국통화, 대미환율)	68.39	74.94	74.13	76.59	

〈자료원 : IMF, Worldbank, CMIE, 인도 중앙은행, GTA〉

나. 경제 동향

인도는 견조한 경제성장과 거대한 내수시장을 바탕으로 전세계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Post China의 최적국가 중 하나로 부상하고 있다. 인도는 2년 연속 코로나19 위기기를 가장 크게 경험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2022년 상반기 경제의 완만한 성장과 함께, 신흥국 중에서도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2021년 하반기를 기준으로 반등하는 V자형 경제회복세를 보였으며, 2022년 상반기에는 코로나19 종식 분위기에 힘입어 완만한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전 세계적인 석유 및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경제가 직

접적인 영향을 받음에도 인구는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아울러 인도는 2023년 G20 의장국을 맡으면서 더욱 책임감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거듭나고 있다.

- 코로나19 종식 분위기에 러-우 전쟁 발발 인플레이션으로 지속적인 관망 필요

2020년 3월 코로나19 대응 조치를 위해 전국적 봉쇄조치를 시행한 이후 2020년 2분기(4~6월) 경제성장률은 -24.4%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이후 상황이 호전되는 듯 하였으나 2021년 코로나 재확산으로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40만 명을 돌파하자, 인도 정부는 지역 봉쇄 조치를 지속적으로 연장하였고, 이는 인도 경제에 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했다. 그러나 인도 정부는 1차 봉쇄 당시 경제에 미쳤던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하여 2차 지역봉쇄 기간 제조업 등 일부 산업에 대해서는 지속 운영을 허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봉쇄조치 이후 빠른 속도로 경제회복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 2021년 4~6월 성장률은 20.1%를 기록하며, 기저효과 등으로 인해 사상 최고치의 분기 성장률을 기록했다. 이어지는 경제 회복세로 '21년 7~9월에도 8.4%의 높은 성장률을 이루어 냈으며, 이후 2022년 상반기 코로나 19 종식 분위기에 힘입어 2022년 4-6월 분기성장률은 13.5%를 기록하며 꾸준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의 GDP 수치, 환율 등을 토대로 자체 산정한 결과, 2022년 1분기(1~3월) 인도의 GDP(명목 기준)는 8,547억 달러를 기록하여, 영국의 8,160억 달러를 넘어 서며 세계 5위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IMF 전망에 따르면 인도는 금년 7%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며, 연간 기준 영국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한다. (IMF 7.4%, Worldbank 7.5%, 무디스 8.8%, 피치 7.8%) 다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주요국들의 러시아에 경제 제재로 인해 원유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원유의 85%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인도의 경우 2022년 소비자물가지수는 2022년 6월 18개월래 최고치인 7.79%를 기록하여 인도중앙은행(RBI)이 발표한 관리 범위(4±2%) 수준을 넘어섰다. 그러나 신속한 금리인하 단행조치와 식량 관련 수출금지 조치를 시행하며 2022년 8월 7.00%를 기록하며 점차 안정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추후 2022-23 회계연도 4분기에는 5.6%대로 낮아질 것을 예상되며 물가 안정을 기대하고 있다. 인도의 주 에너지 공급원인 석탄의 가격 또한 톤 당 8,500루피에서 톤 당 10,000루피로 상승하는 등, '22년 4월 인도 중앙전력청(CEA)은 인도 화력발전소 150곳 중 81곳, 사기업 발전소 54곳 중 28곳의 석탄재고가 위기상태인 것으로 발표했다. 이러한 요인으로 생산, 소비 부문에서 부정적인 지표를 보여주고 있으나, 인도는 여전히 높은 경제성장률을 유지하고 있으며, 2022년 7월 실업률은 전월 대비 1.0% 감소하여 6.8%를 기록하는 등 투자·무역·고용 부문의 개선에 따라 비교적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제조업 중심 성장전략, 생산연계인센티브(PLI)

정부는 자주 인도정책 일환으로 인도를 제조 허브로 만들기 위해 '20.4 전자기기 분야를 시작으로 의료기기, 통신기기, 태양광 등 총 15개 부문 생산연계 인센티브(Production Linked Incentive Scheme, PLI)를 발표했다. 최근에 발표된 반도체 부문 생산시설 설립 기업에 최대 50%의 프로젝트 비용을 지원, 순 매출액의 4~6%를 인센티브로 지원하는 등 7,600억 루피 규모의 인센티브를 책정하였다. 5년간 현지 생산 제품 수출금액의 일부를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형태로 2020년 4월 전자기기 분야에 5년간 5,000억 루피를 지출할 예정임을 발표했으며, '21년 3월 2차 PLI 신청을 받았다. '20년 3개 산업부문의 PLI를 발표 후 '21년 총 12개 산업분야의 PLI를 발표한 데 이어 '22년 4월 20일 드론 및 드론부품 부문 최종 수혜기업 14개사를 발표하며, 특수철강 부문을 제외한 전 분야 수혜기업이 결정되었다.

다. 경제 전망

- 2022년 상반기 인도 거시경제 전망

인도는 2020년 코로나19 영향으로 '20년 2분기 -24.4%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경제에 큰 타격을 입었지만, '20년 3분기 0.4%로 3분기 만에 플러스 반등하며, 인도 경제지표로 2020/21 회계연도 경제 성장률 7.3%를 기록하였다. 이후 인도 중앙은행은 (RBI) 코로나19 종식 분위기에 인도 2022/23년 회계연도 경제 성장률을 7.8%의 완만한 성장률을 예상하였지만, 최근 러-우 전쟁과 이에 따른 원유, 원자재 등 물가상승 요인으로 이전 추정치에서 0.6%하락한 7.2%로 하향 조정하였다.

인도정부는 해외직접투자 촉진을 위해 주요산업 개발을 통해 해외투자 친화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최근 인도 상공부에서 발표한 2021/22 회계연도 3분기(10월~12월) 대인도 투자는 120.2억 달러로 2021/22 회계연도(21.4~12월) 누적 투자는 431.75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동 기간 서비스 부문이 투자금의 16%를 차지했으며, 컴퓨터 소프트웨어·하드웨어, 통신 부문이 각각 14%, 7% 차지하였다

인도의 2022년 1분기(1~3월) M&A와 사모펀드(PE) 총 거래는 전년 동기 대비 49%나 증가한 608건, 거래가치는 9% 증가한 133억 달러를 기록하는 등 인도는 힘든 경제상황 속에서도 외국인투자 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생산연계인센티브(PLI)를 앞세워 현지 제조업 중심의 성장전략을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 미국·인도·일본·호주의 4자 간 국가안보 쿼드(Quad) 동맹

미국, 일본, 인도, 호주 4개국의 비공식 국가 안보협의체인 쿼드는 '21년 3월 12일 첫 정상회담이 화상으로 개최되었다. 1차 회담에서는 법의 규칙, 항행과 비행의 자유, 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민주적 가치, 그리고 영토의 현상유지를 바탕으로 기후 변화 대응 및 코로나19 대응,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했다. 특히,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만들어 중국의 위세를 견제하기 위해 안보 분야 및 비안보 분야에서도 힘을 합칠 것으로 전망된다. 4개국 정상들은 미국의 기술과 미국·일본의 자금력, 인도의 생산 능력, 호주의 수송 능력을 결합해 코로나19 백신 1억 회분을 인도에서 추가 생산해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에 보급하기로 합의했다.

2022년 5월 24일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쿼드 2차 회담에서 쿼드 4국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 논의했고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협력 의견을 일치시켰다. 또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국제질서의 근본 원칙들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하였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중국 영향권 확대에 대한 중국의 의도를 견제하기 위해 5년간 500억 달러 이상 인프라 투자와 채무 문제에 직면한 개발도상국 지원, 4국 위성정보 제공해서 각국의 기후변화 대응 지원에 합의했다. 중국을 직접 거명하지 않았지만 중국을 견제하는 목적으로 인도-태평양에서의 인도의 역할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 IPEF(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 회담

2022년 5월 23일에 도쿄에서 열린 IPEF(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에 인도는 값싼 인건비를 바탕으로 탈중국하는 반도체 공장들을 유입시켜 반도체 생산 공정을 담당하고 원자재 공급에 필요한 대체 가능한 국가로 유연한 공급망 구축을 가능하게 하는 국가의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22년 4월, 인도는 호주와의 FTA를 위한 협상을 시작함에 따라 IPEF 참여는 양국 간 상호 협력 관계 증진에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현지 언론 통해 원활한 IPEF 진행을 위한 국가 간 협력과 IPEF를 통한 인도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가속화를 기대한다고 밝혔으나 국제 노동 법규, 정부의 보조금 지원 등에 대해 인도는 미국 등의 선진국과는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글로벌 디지털 거버넌스 관련 IPEF에 참여하는 다른 국가들과의 의견 및 인프라 수준 차이의 극복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II. 무역

1. 수출입

가. 국가별 수출입

- 수출 상위 10개국

2018년

No	국가명	금액(\$)
1	미국	52,069,010,740
2	아랍에미리트	29,425,955,260
3	중화인민공화국	16,557,805,780
4	홍콩	13,171,737,933
5	싱가포르	10,531,904,522
6	영국	9,830,583,365
7	독일	9,023,847,140
8	방글라데시	8,744,785,175
9	네덜란드	8,727,364,146
10	네팔	7,301,243,683

<자료원 : UN Comtrade>

2019년

No	국가명	금액(\$)
1	미국	54,585,133,903
2	아랍에미리트	29,612,770,375
3	중화인민공화국	17,699,347,942
4	홍콩	11,998,497,648
5	싱가포르	10,772,665,217
6	영국	9,019,911,688
7	네덜란드	8,944,436,858
8	독일	8,646,025,304
9	방글라데시	8,242,921,602

10	네팔	7,108,861,060
----	----	---------------

<자료원 : UN Comtrade>

2020년

No	국가명	금액(\$)
1	미국	49,475,446,436
2	중화인민공화국	19,147,233,850
3	아랍에미리트	17,953,333,453
4	홍콩	9,549,559,041
5	싱가포르	8,328,334,162
6	방글라데시	7,912,818,809
7	영국	7,900,613,640
8	독일	7,726,307,440
9	말레이시아	6,341,264,240
10	네덜란드	6,293,297,654

<자료원 : UN Comtrade>

- 수입 상위 10개국

2018년

No	국가명	금액(\$)
1	중화인민공화국	73,763,531,776
2	미국	32,769,792,916
3	사우디아라비아	28,698,984,087
4	아랍에미리트	27,099,978,037
5	이라크	23,037,985,438
6	스위스	18,050,480,103
7	대한민국	16,517,260,249
8	인도네시아	16,209,562,734
9	홍콩	16,067,952,512
10	독일	15,285,997,739

<자료원 : UN Comtrade>

2019년

No	국가명	금액(\$)
1	중화인민공화국	68,534,900,439
2	미국	35,104,105,491
3	아랍에미리트	30,382,166,913
4	사우디아라비아	27,380,120,373
5	스위스	24,026,037,338
6	이라크	22,085,015,527
7	홍콩	17,393,857,888
8	대한민국	16,310,236,116
9	인도네시아	15,647,322,292
10	싱가포르	14,988,680,825

<자료원 : UN Comtrade>

2020년

No	국가명	금액(\$)
1	중화인민공화국	58,931,872,230
2	미국	27,233,366,398
3	아랍에미리트	23,901,105,386
4	사우디아라비아	17,723,809,556
5	이라크	16,172,948,254
6	홍콩	14,601,142,886
7	스위스	12,846,793,773
8	대한민국	12,452,042,867
9	싱가포르	12,347,254,293
10	독일	12,175,976,678

<자료원 : UN Comtrade>

나. 품목별 수출입

- 상위 10개 수출품목

2018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271019	기타	32,259,970,289
2	710239	기타	24,203,898,197
3	271012	경질유(輕質油)와 조제품	14,962,502,362
4	711319	그 밖의 귀금속으로 만든 것(귀금속을 도금하거나 입힌 것인지에 상관없다)	11,585,715,476
5	300490	기타	10,760,501,983
6	100630	정미(연마 · 광택 여부에 상관없다)	6,827,016,971
7	030617	그 밖의 새우류	4,363,893,962
8	020230	뼈 없는 것	3,332,434,045
9	870322	실린더용량이 1,000시시 초과 1,500시시 이하인 것	3,255,074,948
10	841112	추진력이 25킬로뉴턴을 초과하는 것	3,172,875,542

<자료원 : UN Comtrade>

2019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271019	기타	29,790,423,494
2	710239	기타	20,575,454,904
3	271012	경질유(輕質油)와 조제품	13,126,811,140
4	300490	기타	12,390,505,095
5	711319	그 밖의 귀금속으로 만든 것(귀금속을 도금하거나 입힌 것인지에 상관없다)	12,366,798,208
6	100630	정미(연마 · 광택 여부에 상관없다)	6,616,848,796
7	030617	그 밖의 새우류	4,557,647,702
8	851712	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	3,406,750,589
9	870322	실린더용량이 1,000시시 초과 1,500시시 이하인 것	3,180,308,389
10	841112	추진력이 25킬로뉴턴을 초과하는 것	3,128,453,839

<자료원 : UN Comtrade>

2020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271019	기타	17,626,804,554

2	710239	기타	14,655,837,446
3	300490	기타	14,059,367,356
4	271012	경질유(輕質油)와 조제품	9,168,198,809
5	100630	정미(연마 · 광택 여부에 상관없다)	7,484,135,554
6	711319	그 밖의 귀금속으로 만든 것(귀금속을 도금하거나 입힌 것인지에 상관없다)	5,678,214,816
7	030617	그 밖의 새우류	3,793,318,522
8	760110	합금하지 않은 알루미늄	3,323,375,041
9	851712	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	2,991,706,986
10	020230	뼈 없는 것	2,762,445,639

<자료원 : UN Comtrade>

- 상위 10개 수입품목

2018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27090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114,708,238,124
2	710812	그 밖의 가공하지 않은 모양인 것	31,639,031,519
3	270119	그 밖의 석탄	22,588,622,445
4	710231	원석(단순히 톱질한 것이나 쪼갠 것으로 한정한다)	16,652,100,409
5	271111	천연가스	10,880,773,500
6	710239	기타	9,825,695,359
7	851770	부분품	9,640,152,345
8	851762	음성 · 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수신용 · 변환용 · 송신용 · 재생용 기기[교환기와 라우팅(routing)기기를 포함한다]	5,700,078,137
9	271019	기타	4,615,988,227
10	271113	부탄	4,115,594,949

<자료원 : UN Comtrade>

2019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27090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101,989,200,874
2	710812	그 밖의 가공하지 않은 모양인 것	31,099,306,343
3	270119	그 밖의 석탄	20,118,682,593

4	710231	원석(단순히 톱질한 것이나 쪼갠 것으로 한정한다)	13,480,569,939
5	271111	천연가스	9,550,077,420
6	710813	그 밖의 반가공한 모양인 것	8,999,334,688
7	710239	기타	8,308,820,394
8	851770	부분품	8,168,050,141
9	854231	프로세서와 컨트롤러[메모리 · 변환기 · 논리회로 · 증폭기 · 클록(clock) · 타이밍(timing) 회로나 그 밖의 회로를 갖춘 것인지는 상관없다]	5,313,237,188
10	271019	기타	4,936,788,236

<자료원 : UN Comtrade>

2020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27090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64,579,747,963
2	710812	그 밖의 가공하지 않은 모양인 것	21,818,230,517
3	270119	그 밖의 석탄	14,341,760,034
4	710231	원석(단순히 톱질한 것이나 쪼갠 것으로 한정한다)	9,369,200,116
5	271111	천연가스	7,908,671,675
6	851770	부분품	6,543,206,318
7	710239	기타	6,297,468,679
8	151110	조유(粗油)	4,936,263,290
9	880240	자체 중량이 15,00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비행기와 그 밖의 항공기	4,846,948,359
10	271019	기타	4,772,075,121

<자료원 : UN Comtrade>

2. 한국과의 수출입

가. 한국의 對주재국 교역 현황

- 한국의 對주재국 교역 현황표

(금액 : 백만\$)

년도	수출액	수입액	무역수지
2018	15,606	5,885	9,721
2019	15,096	5,565	9,531
2020	11,937	4,901	7,036
2021	15,603	8,056	7,547
2022	12,991	6,777	6,214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다. 한국의 주요 수출입 품목

- 한국의 주요 수출입 품목 현황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출품목(2021년)

(금액 : 백만\$)

No	코드(MTI 4단위)	품목명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1	8311	집적회로반도체	1,232	11	1,221
2	2140	합성수지	1,693	27	1,665
3	7462	해양구조물	0	0	-1
4	7420	자동차부품	1,130	165	964
5	1336	윤활유	1,139	3	1,136
6	6132	열연강판	735	99	636
7	2190	기타석유화학제품	532	46	485
8	6133	냉연강판	403	3	400
9	6134	아연도강판	360	2	358
10	6261	아연피막스크랩	308	64	243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출품목(2022년 (8월))

(금액 : 백만\$)

No	코드(MTI 4단위)	품목명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1	8311	집적회로반도체	1,526	3	1,523
2	2140	합성수지	1,147	20	1,127
3	7462	해양구조물	978	0	978
4	7420	자동차부품	733	115	618
5	1336	윤활유	672	2	670
6	6132	열연강판	584	3	581
7	2190	기타석유화학제품	343	32	311
8	6133	냉연강판	339	1	338
9	6134	아연도강판	326	0	326
10	6261	아연피막스크랩	234	42	192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입품목(2021년)

(금액 : 백만\$)

No	코드(MTI 4단위)	품목명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1	1334	나프타	0	1,853	-1,854
2	6211	알루미늄괴및스크랩	33	1,804	-1,771
3	2289	기타정밀화학원료	343	342	1
4	6181	합금철	151	234	-83
5	0136	사료	2	5	-4
6	6251	연괴및스크랩	149	227	-78
7	0135	박류	0	179	-180
8	7420	자동차부품	1,130	165	964
9	2262	의약품	72	146	-74
10	4213	면사	0	140	-141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입품목(2022년 (8월))

(금액 : 백만\$)

No	코드(MTI 4단위)	품목명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1	1334	나프타	0	2,248	-2,248
2	6211	알루미늄괴및스크랩	13	1,242	-1,229
3	2289	기타정밀화학원료	204	298	-94
4	6181	합금철	114	229	-115
5	0136	사료	1	225	-224
6	6251	연괴및스크랩	83	190	-107
7	0135	박류	0	167	-167
8	7420	자동차부품	733	115	618
9	2262	의약품	49	99	-50
10	4213	면사	0	91	-91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3. 수출 유망품목

1) 수출유망품목(상품)

품목명 1	합성골 이식재		
HS Code	3006.40	수입액('21/US\$백만)	1364.9
수입관세율(%)	24.32% (CEPA 혜택 적용 시 12%)	대한수입액('21/US\$백만)	4.2
선정사유	<p>인도는 일반적으로 구강 건강 수준이 열악하며, 특히 고령층은 그 정도가 심각한 경우가 많아 노령화가 빨리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골이식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p> <p>이전에 치과 임플란트는 단순 불필요제품으로 간주되었지만, 생활 수준이 향상되고 도시 중산층의 구매력 증가하면서 구강 관리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고 치아 교정에 대한 수요는 이에 따라 빠르게 증가하였음.</p>		
시장동향	<p>합성골은 면역거부반응이나 감염을 걱정할 필요가 없고 다른 뼈 이식재들에 비해 공급이 자유로운 장점이 있어 시장의 요구가 점점 높아지고 있음.</p> <p>2018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연평균 성장률을 약 10.8% 기록할 것으로 예측되며, 2019년 기준 아시아 태평양 치과용 골이식재 시장에서 19.5%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음.</p> <p>IDA(Indian Dental Association)에 따르면 치과용 골이식재(DBGS, Dental Bone Graft Substitutes) 시장은 인도에서 수익성이 높고 여러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을 나타냄.</p> <p>2021년 총 수입액은 2020년(7.29억 달러) 대비 무려 87% 상승한 13억 6490만 달러이다.</p>		
경쟁동향	<p>인도에 치과용 골 이식재 제조업체가 많지 않고 제품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합성골 이식재 시장은 수입 의존도가 높음.</p> <p>골, 연골 재생 재료 분야에서 글로벌 기업인 Geistlich는 인도 치과용 골이식재 시장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으며, 2위와 3위는 NovaBone(Halma)과 Zimmer Biomet가 차지하고 있음.</p> <p>전체 수입의 30% 이상이 미국, 벨기에, 영국 상위 3개국으로부터 일어나고 있으며, 한국은 23위를 기록하여 전체 비중은 1%가 되지 않는 상황임.</p>		
진출방안	<p>한국은 뛰어난 제품 품질을 인정받고 있고 CEPA 적용을 받아 다른 국가에 부과되는 관세 보다 우위에 있는 상황을 잘 활용하여 진출하는 것이 중요.</p>		
품목명 2	영상진단기기		
HS Code	9022.90	수입액('21/US\$백만)	308.5
수입관세율(%)	33.63% (CEPA 혜택 적용 시 18%)	대한수입액('21/US\$백만)	11.7

선정사유	<p>2018년 인도 영상진단기기 시장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20.8%, 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의 30.6%를 차지할 정도로 큰 시장을 이루고 있으며, 2019년 시장 규모는 16.4억 달러로 2024년까지 매년 평균 9% 성장할 것으로 예상.</p> <p>인도는 당뇨병, 고혈압 및 관상 동맥 질환, 혈관 질환 및 뇌혈관 질환의 수가 증가하고 있어 해당 질병을 진료하고 치료하는데 필요한 영상진단 기술 및 제품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p>		
시장동향	<p>GLOBOCAN(The Global Cancer Observatory)에 따르면 2018년에 새로 암 진단을 받은 사람의 수는 인도에서 약 115만 명이고, 이 수치는 2040년까지 2,95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 또한 65세 이상 개인의 암 발병 건수는 2012년 28만여 건에서 2025년 45만여 건으로 37% 증가할 것으로 보임.</p> <p>사립 병원, 의과 대학, 정부 병원 및 진단 센터의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10년 동안 약 200개의 의과 대학이 개교하여 영상진단기기 수요가 증가 예상.</p> <p>2021년 주요 수입원은 미국, 중국, 독일로 상위 3개국으로 전체 수입에서 약 60%의 점유율을 차지하였고, 2019년 대한 수입액은 1,100만 달러로 큰 폭의 성장이 있었으나,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수입액 규모가 약 50% 감소한 559만 달러 기록, 이후 다시 회복기에 접어들면서 2021년 수입액 규모는 1170만 달러를 기록함.</p>		
경쟁동향	<p>인도 영상진단기기 시장의 경쟁은 치열하며 최첨단 영상진단 기술의 발전과 새로운 혁신적인 기술의 도입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업들이 경쟁을 벌이고 있음.</p> <p>현재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기업으로는 GE Healthcare(미국), Fujifilm Holdings Corporation(일본), Hitachi Medical Systems(일본), Koninklijke Philips NV(네덜란드) 등이 있음.</p>		
진출방안	<p>병원에 직접적인 영업망을 가지고 있는 능력 있는 유통 업체와의 계약이 유리함.</p> <p>인도에서 더 낮은 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는 이점을 활용하여 다른 인접 국가로 수출하려는 회사는 인도에 제조 공장을 설립하는 전략을 취할 수도 있으며, 한국이 다른 국가들보다 관세에서 약간 유리한 측면을 활용하는 것도 필요함.</p>		
품목명 3	치과용 의료 장비		
HS Code	9018.4900	수입액('21/US\$백만)	69.9
8수입관세율(%)	26.84% (CEPA 혜택 적용 시 12%)	대한수입액('21/US\$백만)	8.2
선정사유	<p>인도 치과용 의료 장비 수입시장 지속 성장('15~'19 연평균성장률 9.4%)세로 포스트 코로나 수혜 품목으로 예상됨</p> <p>* 수입 규모 \$4,160만('15)→\$6,520만('19)→\$3,720만('20)</p> <p>치과 장비 설비투자액이 수요 대비 낮은 편이며 가처분 소득 증가로 의료시장 활성화 예상</p> <p>*인도 인구당 치과용품 지출비 \$0.2 (한국 \$6.40)</p> <p>*인도 인구 8%, '26년 가처분 소득 \$12,000 도달 예상</p>		

<p>시장동향</p>	<p>인도 치과장비 시장 \$2.7억('22), '19~'24 연평균 10.1% 성장 전망(Fitch)</p> <p>치과장비의 약 75%를 수입에 의존</p> <p>한국제품 수입 점유율 전체 1위인 15% 차지</p> <p>EU 27개국 33%, 중국, 스위스, 미국 등이 각 10~15% 수준</p> <p>치과업계 종사 인력 증가 추세. 인도치과협회(IDA), 매년 12,000~15,000 치과 신규개업 추정</p> <p>치과 99% 이상 민간업체 운영</p> <p>자국생산업체 증가 추세이나 장비 수요가 더 많음</p>		
<p>경쟁동향</p>	<p>인도 자국 생산 정책(Make In India) 일환으로 hscode 9018~9022 수입품목 대상 5% 특별세금 부과 ('20.2)</p> <p>외국기업 Baxter, B. Braun, Becton Dickinson, Johnson & Johnson, Nipro, Philips, Siemens, Terumo사 등 현지생산</p> <p>현지 약 800개 의료기기 생산업체 중 상위 5% 매출액 \$1,600만 이상. 상위 20% 매출 \$160만~\$800만, 그 외 대부분 군소업체 매출 (\$160만 미만)</p> <p>인도 의료관광 유치 등을 위해 Max, Hinduja Group, Fortis Apollo 등에서 고급형 병원 및 인프라 투자 중</p>		
<p>진출방안</p>	<p>인도 Medical Fair India 2022 (22.4월) 참관</p> <p>https://www.medicalfair-india.com/</p> <p>국내 KIMES 등 의료기기 전시회 연관 화상상담회 참가</p> <p>한-인도 CEPA 협정에 따른 관세 혜택 활용</p> <p>인도 주변국 스리랑카, 파키스탄 및 중동지역</p> <p>인도 전역 치과 체인점 진출 기업(Wockhardt, Apollo 그룹, Fortis 그룹 등)과 협력</p>		
<p>품목명 4</p>	<p>태양 전지</p>		
<p>HS Code</p>	<p>8541.4200</p>	<p>수입액('21/US\$백만)</p>	<p>893</p>
<p>수입관세율(%)</p>	<p>50.45% (CEPA 혜택 적용 시 18%)</p>	<p>대한수입액('21/US\$천)</p>	<p>134.7</p>
<p>선정사유</p>	<p>인도는 환경 및 에너지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대대적인 태양광 에너지 사용 정책 추진 중</p> <p>* 7년간 태양광 발전 용량 16배 증가 2.6GW('14)→41GW('21)</p> <p>국립태양에너지기구 추산 인도 태양광 잠재용량 749GW</p> <p>*'22.4월 태양전지 25%, 태양모듈 40% 기본관세 인상(CEPA 세율 적용 시 0%)</p>		

시장동향	<p>인도는 파리협약에 따라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33~35%의 탄소집약도 감축목표 제시</p> <p>정부 전력생산 중 신재생에너지 비율 40%까지 상향</p> <p>인도 정부 태양광 단지(Solar Park) 프로젝트 지속 추진</p> <p>* '21년 7월까지 11개 태양광 프로젝트(9,645MW) 발주</p> <p>'20년 세계 최대 태양광 단지 Bhadla Solar Park (2,245MW, 5,700Ha) 프로젝트 발주</p> <p>코로나 여파로 단기적으로 '20년 2~3GW 프로젝트 지연 및 자본·운영비 압박, 중기적으로 송전업체 리스크 증가, 보수적 추가 프로젝트 발주 및 자국 내 생산 요구 증가 예상</p> <p>송전업체(DISCOM) 재생에너지 의무 구매 비율 (RPO, Renewable Purchase Obligation) 매년 증가</p> <p>* 태양광 RPO 7.25%('20)→8.75%('21)→10.5%('22)</p>		
경쟁동향	<p>중국 전세계 PVV 모듈 생산 71% 차지, 한국 6% 2위</p> <p>인도 내 태양전지 세이프가드 관세 21.7월 만료</p> <p>* 18.7월 중국, 말레이시아 25% 세이프가드 관세부과 (6개월마다 5%씩 감세, 20.7월 만료)</p> <p>* 20.7월 중국, 태국, 베트남 대상 14.9% 세이프가드 관세부과 (21년 7월 만료)</p>		
진출방안	<p>- 인도 정부는 자국 생산 활성화 명목으로 관세, 벤더 등록 등 비관세 장벽 도입 중</p> <p>- 재생에너지부(MNRE)는 별도 리스트를 통해 정부 입찰 참여 제조사를 한정시키고 있음 (21.3월)</p> <p>* 현재 23개 제조사 ALMM(Approved List of Models and Manufacturers of PV Modules) 등록</p> <p>자국 생산기업 대상 PLI(Production-Linked-Incentive) 인센티브 활용 현지 생산 대안 검토</p>		
품목명 5	바이오 플라스틱		
HS Code	3907.99	수입액('21/US\$백만)	263.5
수입관세율(%)	27.735% (CEPA 혜택적용 시 18%)	대한수입액('21/US\$백만)	21.3

선정사유	<p>인도는 연간 946만 톤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발생하는데 이중 43%가 1회용 포장지에서 발생</p> <p>인도 정부는 '클린 인디아 (Swachh Bharat)' 정책의 일환으로 2022년 7월부터 1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하겠다고 발표.</p> <p>구체적으로는 폴리스티렌 등 1회용 플라스틱의 제조, 수입, 유통, 판매, 사용을 모두 금지하겠다는 내용임.</p> <p>이에 따라 바이오 플라스틱에 대한 수요 급증 예상</p>		
시장동향	<p>플라스틱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로 인도의 바이오플라스틱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p> <p>인도의 바이오플라스틱 시장은 2019년 2억 850만 달러이며 연평균 23.91%가 성장하여 2025년에는 7억 5,460만 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p> <p>이에 따라 다수의 기업이 바이오플라스틱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p> <p>2020년 미국 버클리대학교에 소재한 기업 Lygos와 인도 푸네에 소재한 Praj Industries 가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인도에서 유산(lactic acid)을 생산하기로 하였는데 이는 폴리락트산(Polylactic Acid, PLA)이라는 바이오플라스틱 생산의 원료로 활용됨.</p>		
경쟁동향	<p>생분해성 플라스틱을 제조하는 글로벌 기업들은 Nature Works (미국), BASF (독일), Total Corbion PLA (네덜란드), Biome Bioplastics (영국), Tetra Pak International SA (미국), Plastic Suppliers (미국), Kruger (미국), Braskem (브라질), Novamont (이탈리아), Bio-on (이탈리아), Toray Industries (일본), Plantic Technologies (호주), Mitsubishi Chemical Corporation (일본) 등이 있음</p> <p>동 분야의 인도 자생기업으로는 Ecolife, Plastobags, Earthsoul Bio Products, Sunshield Biotech 등이 있는데 주로 생분해성 소재로 의류, 가방, 쇼핑백, 쓰레기봉투, 산업용 포장재, 식기, 컵 등을 생산.</p>		
진출방안	<p>바이오플라스틱 분야에서 수요가 발생하는 분야는 원재료 뿐만 아니라 완제품과 기계류도 포함됨. 시장수요가 있는 구체적인 기계류로는 Twin screw extruder peletizing line, High speed mixer, Conveyor belt pelletizer, Air compressor 등이 있음.</p>		
품목명 6	비료		
HS Code	3101~3105	수입액('21/US\$백만)	9,078
수입관세율(%)	10.25-13.66%(CEPA 혜택 적용 시 5%)	대한수입액('21/US\$백만)	22.8
선정사유	<p>인도에서의 농업은 2020/21 회계연도 기준, 국가 총부가가치(GVA)에서 20.2%에 기여하고 있으며, 인구의 54.6 %가 농업 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만큼 중요한 산업 중 하나임</p> <p>2018년 인도의 비료 생산량은 4,148만 톤이었으며, 2021년에는 생산량이 전년에 비해 4.1%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p>		
시장동향	<p>인도의 전체 비료 소비량의 경우 2020년 6,140만 톤으로 연평균 2.0%씩 성장. 현지 언론에 따르면, 2021년에는 6,800만 톤 소비될 것으로 집계</p>		
경쟁동향	<p>인도 비료 시장은 타타케미컬, 내셔널퍼틸라이저, 코로만델 등이 주요 업체로 활동 중이며 시설 장비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초기 진입장벽이 비교적 높다는 특징이 있음.</p> <p>현재 인도 내에서는 소수 과점 시장의 형태를 보이며 현지 비료 기업과 다국적 기업 등 상위 5개 기업이 전체 시장의 점유율 50~55%를 차지하고 있음.</p>		

진출방안	<p>비료의 경우, 농업과 밀접한 품목이기에 인증 및 공장 허가 등 정부의 시장개입 및 규제가 비교적 강함. 공급자와 소비자의 직접적인 거래가 통상적이지 않고, 정부를 통한 거래가 일반적이며 인도로 수출 시 정부에서 발급된 중개 면허를 소지한 현지 딜러 및 대형 유통 업체를 통하는 것이 필수</p> <p>농가는 소매업자로부터 비료를 직접 구매할 때 소매업자는 POS(Point of Sale) 기계를 통해서만 지불을 받고 구매자에게 영수증을 전달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소매업자의 면허가 무효화될 수 있으므로 진출 전 현지 딜러 및 파트너사를 발굴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p>
------	---

품목명 7	건설장비		
HS Code	8431.49	수입액('21/US\$백만)	835.7
수입관세율(%)	27.735% (CEPA 혜택적용 시 18%)	대한수입액('21/US\$백만)	178.4
선정사유	<p>인도 정부는 국가 인프라 파이프라인(NIP)에 대한 예산을 FY25까지 111조 루피(약 1.6조 달러) 배정</p> <p>- 기존 고속도로 건설예산으로는 연간 1조 루피(약 132억 달러) 수준이었으나, 향후 1~2년 내 예산 규모를 15조 루피(약 2,000억 달러)까지 증가시킬 계획</p> <p>- 2021년 상반기 건설 산업은 전년 동기 대비 65%의 성장 기록하며, '21년 건설장비부분 수입액은 전년대비(4.9억 달러) 71%증가한 8.4억 달러수준</p>		
시장동향	<p>- 건설 장비(MCE) 산업은 2021년 15~20%의 성장 기대</p> <p>- 신용평가기관 ICRA는 건설장비 시장의 고성장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지속되다가 2024년을 기점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p> <p>- 인도 건설장비제조협회(ICEMA)에 따르면, 2020년 인도 내 약 63,500대의 건설장비가 판매되었으며 이중 JCB사 제품은 35,300대를 차지</p>		
경쟁동향	<p>- 인도 내 건설장비 제조 및 판매 업체로는 L&T, 볼보, 현대건설, 마힌드라&마인드라, 캐터필러, 코마슈, ACE건설 등이 존재</p>		
진출방안	<p>- 일반적으로 인도의 글로벌 건설장비 업체는 인도 내 딜러 및 임대 업체와 제휴를 통해 시장진입</p> <p>- 정부의 인프라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진출희망 기업은 현지 유통 및 렌탈 업체와 협력을 통해 인도 인프라 프로젝트 참여를 고려할 필요</p>		
품목명 8	가정용 스마트기기		
HS Code	9405.49	수입액('21/US\$백만)	226
수입관세율(%)	50.45% (CEPA 혜택적용 시 18%)	대한수입액('21/US\$백만)	1.7
선정사유	<p>- 인도의 스마트 홈 제품에 대한 수요는 중산층 증가 및 가처분 소득 증가로 급증하는 추세</p> <p>-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실내에서 보내는 시간이 증가했으며, 소비자들의 수요가 편리하고 안전한 제품을 선호하는 추세로 변화</p>		

시장동향	- 인도 정부는 2015년~2022년 기간 310억 달러의 예산을 배정해 스마트 도시 프로젝트를 시행. - Statista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 스마트홈 시장은 2022년까지 약 60억 달러 시장으로 예상되며 이는 2020년 30억 달러에서 2배 증가한 수치
경쟁동향	- 필립스, IKEA, 샤오미, Syska, Crompton, Halonix 등 다양한 글로벌 기업들이 진출
진출방안	- 일반적으로 글로벌 업체의 경우, 총판을 통해 수출을 진행하는 경우가 대다수 - 전자기기별로 필수 BIS 적용 여부가 다르니, 정부의 BIS 가이드라인을 모니터링해 취급제품의 인증필요 여부를 확인할 필요

2) 수출유망품목(서비스)

품목명 1	온라인 모바일 게임
선정사유	인도의 봉쇄조치는 장기간 지속되었으며, 사실상 경제활동 또한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상황을 겪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게임 시장은 해마다 높은 성장률을 보였으며 올해 약 11억 달러의 시장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됨. 최근 인도에서는 온라인 PC게임보다도 모바일 게임이 더욱 주목 받고 있음
시장동향	글로벌 컨설팅사 KPMG에 따르면, 인도의 모바일 게임시장은 2020년 기준으로 8억 8,500만 달러의 시장 규모까지 성장하였으며 향후 인터넷 인프라 개선과 유저 숫자 증가로 잠재력 면에서도 투자 타당성이 확보될 경우, 글로벌 게임사들의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
경쟁동향	현재 인도에는 15,000개 이상의 게임개발사들이 존재하며,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들은 Nazara, Dream 11, Games24x7, Paytm First Games, Mobile Premier League 및 JioGames 등이 있음. 게임 산업이 성장함에 따라 인도 정부는 산업을 촉진하고 규제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보다 적극적인 장려 및 산업화 유도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
진출방안	인도의 온라인 게임시장은 게임콘텐츠 다변화, 청년층 게임 유저 증가, 인터넷 여건 개선 등을 이루어 봤을 때, 중장기적으로 시장 규모가 성장할 것은 명백. 그러나, 인도에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게임상의 금전적 베틀에 대한 규정을 주 정부 차원으로 규제함. 특히, 판타지 스포츠는 인도 자국 게임사들의 출시작이 이미 많으며 크리켓과 같은 스포츠는 한국에서 즐기지 않은 종목이라는 점에서 공략이 쉽지 않을 수 있음. 또한, 티파티(Teen Patti), 러미(Rummy)와 같은 카드게임도 인도 문화권에 맞게 일부 변형이 되었으며 이미 현지어로 제작된 버전이 있음을 현지 진출 검토 시 참고해야 함
품목명 2	에듀테크

선정사유	<p>코로나19 이후, 온라인 교육이 필수적인 요소가 되며 IT 기반의 교육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어 에듀테크 시장성장 잠재성이 높다고 분석</p> <p>평균연령 27세, 고등과정까지의 학생 수가 약 2억 6천만 명으로 에듀테크의 수요가 높으며 스마트폰 보급률도 계속하여 증가 중</p>
시장동향	<p>인도 투자사인 Blume Ventures에 따르면 인도 에듀테크 시장은 2020년 7억50만 달러를 기록하였고 2025년 40억 달러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p> <p>또한 2021년 7월 인도의 인터넷 사용자는 약 7.8억 명이며 이런 성장세는 에듀테크 시장에 엄청난 성장 기회를 제공함</p> <p>인도교육부는 2030년까지 교육예산지출을 GDP의 약 6%로 늘림으로 에듀테크 시장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p>
경쟁동향	<p>인도 내 주요 에듀테크 기업으로는 Byju's, Vedantu, Unacademy 등이 있음.</p> <p>인도 내 주요 에듀테크 기업인 BYJU'S는 인도 교육시스템에 알맞은 학습플랜과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고 초중고 과제나 학습뿐 아니라 대학 입시 과정 서비스도 제공하며 약 90만 명에 달하는 사용자 보유</p>
진출방안	<p>국내 에듀테크 기업은 인도 교육시스템에 대한 인지도가 낮고 현지 교육과정과 현지어 등 현지화 문제 해결을 통한 시장 접근이 필요. 인도는 교육의 온라인화 초기 단계로써 현지 기업과의 기술적 협업, 기술과 학습 시스템 등의 현지화 및 홍보 필요</p>
품목명 3	웹툰
선정사유	<p>- 인도 내에서는 일본 애니메이션 및 문화에 대한 다양한 팬층이 존재하며 한류열풍으로 웹툰 수요 존재</p> <p>-한국 진출 기업에 따르면, 동사 웹툰 이용자는 일일 6-10만 명으로 기본적인 고객층 존재</p>
시장동향	<p>- 인도 최초의 웹툰 앱인 Kross Komics가 월 110만 명의 신규 사용자를 유치했으며, 관련 앱은 서비스 시작 이후 300만 건 이상의 다운로드를 기록</p> <p>- 2021년 4월 또 다른 웹툰 애플리케이션 Toonsutra 인도 시장진출</p> <p>- 웹툰의 데이터 트래픽에서 웹툰이 차지하는 부분을 분석해보면 1군, 2군 도시의 여성들에게서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p>
경쟁동향	<p>- 웹툰 진출 기업으로는 Kross Komics, Toonsutra 등이 있음</p>

진출방안

- 인도의 웹툰 시장은 초창기 시장으로 현지인들에게는 웹툰이 아직은 생소한 부문임

- 기업은 웹툰의 출판 및 홍보를 위해 주요 웹 출판 업체와 제휴를 통한 진출이 가능

4. 무역협정

가. 무역협정 체결현황

협정명	체결국가	체결일자	발효일자	비고
한-인도 CEPA(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한국	2009-08-07	2010-01-01	
SAPTA(SAARC Preferential Trading Arrangement)	방글라데시, 부탄, 인도, 몰디브, 네팔, 파키스탄, 스리랑카	1993-04-11	1993-04-11	
인도-스리랑카 FTA(Free Trade Agreement)	스리랑카	1998-12-28	2000-03-01	
인도-아프가니스탄 PTA(Preferential Trade Agreement)	아프가니스탄	2003-03-06	2003-05-13	
SAFTA(South Asia Free Trade Area)	방글라데시, 부탄, 인도, 몰디브, 네팔, 파키스탄, 스리랑카	2004-01-04	2006-01-01	
인도-MERCOSUR PTA(Preferential Trade Agreement)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2005-03-19	2009-06-01	
인도-칠레 PTA(Preferential Trade Agreement)	칠레	2006-03-08	2009-01-13	
인도-부탄 FTA(Free Trade Agreement)	부탄	2006-07-28	2006-07-29	
APTA(Asia Pacific Trade Agreement)	방글라데시, 중국, 인도, 대한민국, 라오스, 스리랑카	2005-11-02	2006-09-01	

인도-싱가포르 CECA(Comprehensive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	싱가포르	2007-12-20	2007-12-20	
인도-아세안 FTA	아세안	2009-08-13	2010-01-01	
인도-네팔 무역 협조협정 (COOPERATION TO CONTROL UNAUTHORIZED TRADE)	네팔	2009-10-27	2009-10-27	
인도-핀란드 AEC(Agreement on Economic Cooperation)	핀란드	2010-03-26	2010-03-26	
SAARC(South Asia Association for Regional Cooperation)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부탄, 인도, 몰디브, 네팔, 파키스탄, 스리랑카	2010-04-29	2010-04-29	
인도-말레이시아 CECA(Comprehensive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	말레이시아	2010-10-27	2011-07-01	
인도-일본 CEPA(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일본	2011-02-16	2011-07-01	
인도-모리셔스 CECPA(Comprehensive Economic Cooperation and Partnership Agreement)	모리셔스	2021-02-22	2021-04-01	

인도-UAE CEPA(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UAE	2022-02-18	2022-05-01	
인도-호주 CECA(Comprehensive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	호주	2022-04-02		발효 예정

<자료원 : <https://commerce.gov.in/international-trade/trade-agreements/>>

나. 논의 중 협정

협정명	협정대상국가	협정진행내용	비고
한-인도 CEPA(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한국, 인도	2022년 1월 11일 개선협상 재개 합의 후 논의중	8차 개선협상 완료('19- 6-17)
BIMSTEC (Bay of Bengal Initiative for Multi-Sectoral Technical and Economic Cooperation) FTA(Free T	방글라데시, 부탄, 인도, 네팔, 스리랑카, 미얀마, 태국	논의중	19차 협상 진행중
인도-GCC(Gulf Cooperation Council) FTA(Free Trade Agreement)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바레인, 카타르	논의중	3차 협상 진행중
인도-남아프리카관세동맹 PTA (Preferential Trade Agreement)	남아프리카, 레소토, 스위스, 보츠와나, 나미비아	논의중	5차 협상 진행중
인도-유럽 BTIA (Broad Based Trade and Investment Agreement)	인도, 유럽	논의중	15차 협상 진행중
인도-유럽 자유 무역 연합 BTIA (Broad based Trade and Investment Agreement)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논의중	17차 협상 진행중
GSTP (Global System of Trade Preferences)	알제리 멕시코, 앙골라 모로코, 아르헨티나, 모잠비크, 방글라데시, 니카라과	논의중	3차 협상 진행중
인도-뉴질랜드 FTA (Free Trade Agreement)	인도, 뉴질랜드	논의중	11차 협상 진행중
인도-캐나다 CEP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인도, 캐나다	논의중	11차 협상 진행중

인도-호주 CECA (Comprehensive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	인도, 호주	논의중	10차 협상 진행중
인도-인도네시아 CECA (Comprehensive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	인도, 인도네시아	논의중	
인도-동남부아프리카공동시장 PTA (Preferential Trade Agreement) FTA(Free Trade Agreement) 공동연구	부룬디, 코모로, 콩고, 지부티, 이집트, 에리트레아, 에티오피아, 케냐, 리비아,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모리셔스	논의중	3차 협상 진행중
인도 - 이스라엘 FTA (Free Trade Agreement)	인도, 이스라엘	논의중	9차 협상 진행중
인도-미국 Trade Policy Forum Joint Statement	인도, 미국	논의중	12차 협상 진행중
인도-방글라데시 FTA (Free Trade Agreement)	인도, 방글라데시	논의중	
인도-스리랑카 FTA (Free Trade Agreement)	인도, 스리랑카	논의중	9차 협상 진행중
인도 - 몰디브 FTA (Free Trade Agreement)	인도, 몰디브	논의중	
인도-몽골 FTA (Free Trade Agreement)	인도, 몽골	논의중	
제 2차 인도-싱가포르 CECA(Comprehensive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	인도, 싱가포르	논의중	3차 협상 진행중
인도-태국 CECA (Comprehensive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	인도, 태국	논의중	30차 협상 진행중
인도-영국 FTA (Free Trade Agreement)	인도, 영국	논의중('22년 1월 공식 협상 개시)	

<자료원 : <https://commerce.gov.in/international-trade/trade-agreements/>>

5. 수입규제 및 관세

가. 대한 수입규제 현황

- 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가드/수입쿼터

없음.

수입금지품목

인도의 주요 수입금지·제한 품목 및 인허가 품목은 상공국 산하 무역국(DGFT, Directorate General of Foreign Trade)에서 관할하고 있으며, 주요 수입금지·제한 품목 및 인허가 품목은 다음과 같다.

- 수입금지품목: 주로 동물의 고기, 유지 등이며 2020년 냉매가 채워진 에어컨이 추가되었고, 2022년 드론을 추가하여 2022년 5월 기준 총 100개 품목이 지정됨.

- 수입제한품목: 동식물, 육류, 일부 섬유, 무기, 폭발 등으로 2022년 5월 기준 499개 품목이며, 특정 조건을 충족하여 사전에 수입허가를 받아 승인받은 물량만큼 수입이 가능함. 2020년 7월 컬러TV, 타이어 등에 이어 2022년 3월 귀금속 또는 귀금속화합물을 포함한 웨리스트, 메탄·에탄·프로판의 할로겐화 유도체를 함유한 특정 화학물질 등에 대하여 수입제한 적용 추가.

나. 비관세장벽

인증제도

1) 품질인증제도 BIS (Bureau Of Indian Standards)

인도는 품질인증제도인 BIS는 제품에 대한 기준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 1987년부터 실시하고 있으나, 이는 선택이 아닌 강제 시행제도로 해당하는 품목이 매우 많고 인증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관련 기업에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BIS 인증은 크게 'Mark' 및 'Registration' 제도로 나뉘며, 2022년 5월 기준 'Mark' 제도 대상품목은 395개, 'Registration' 제도는 79개 품목이 인증 대상이다.

'Registration' 제도 인도 내 지정 BIS 검사기관에서 샘플검사를 통해 인증되며, 검사비용은 1,000루피(약 16,000원)이고 약 15~90일 정도가 소요된다. 그에 비해 'Mark' 제도는 BIS 검사관이 직접 파견되어 제조공장 실사를 해야 하며, 그에 수반되는 항공비, 숙박비, 1일 출장비 등이 모두 인증 신청 기업 부담이다. 또한, 대개는 BIS 검사관이 파견 스케줄을 잡는 데까지 많은 기간이 소요되며, 평균적인 인증 소요기간은 6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 소요될 수도 있다. 게다가, 인증대상 품목까지 계속 확대되고 있어 비관세장벽으로 작용될 수 있으므로 인증품목 현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 BIS 주요 품목

- Mark Scheme 주요 품목: 철강, 화학, 시멘트 및 실린더 등
- Registration Scheme 주요 품목: 모니터, 키보드, LED 및 일부 가정용품 등

○ BIS 품목 확인 관련 링크: <https://bis.gov.in/index.php/product-certification/products-under-compulsory-certification/>

2) 화장품인증제도(CDSCO : Central Drugs Standard Control Organization)

인도는 2010년 5월 수입되는 화장품에 대한 규제 조항을 담은 Gazette Notification G.S.R 426(E)를 발행하여 수입 화장품 규제를 강화하였으며, 이에 따라 인도 내에 화장품을 수입 판매하기 위해서는 중앙의약품표준관리기구 CDSCO에 화장품을 등록해야 한다.

CDSCO는 인도 중앙의약품표준관리기구로 의약품 및 화장품에 관한 법 (Drugs and Cosmetics Act 1940 and Rules 1945)에 의거하여, 인도의 보건복지부인 Minisrty of Health and Family Welfare에 속해있는 의약품, 의료 기기, 화장품 규제 담당기관이다. CDSCO는 규정과 표준을 정하고, 약품, 진단법, 장비 및 화장품의 수입 및 생산 허가를 내리는 역할을 수행하는 동시에 콜카타, 뭄바이, 첸나이 및 가 지아바드 네 지역에 사무소를 두고 국내 또는 해외로부터 생산되는 다양한 종류의 의약품에 대해 승인하고 라이선스를 발행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CDSCO 등록 증명서 COS 2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신청서인 COS 1과 함께 총 10개의 서류가 함께 제출되어야 하며, 규정법상 CDSCO 지원서는 접수 후 최대 6개월 이내에 발급이 되어야 하나 인도의 느린 행정으로 발급 기간이 장기화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5년에 한번씩 인증을 다시 받아야 하며, 만료 후 6개월 이내에 갱신 신청을 해야 인증이 유지된다. 품목의 변경이 있을 경우 역시 재신청을 통해 등록 증명서를 다시 발급 받아야 하고 제품의 색깔별로 다른 인증을 요구하는 등의 복잡한 등록 절차는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Cosmetics Rules 2020에 의해 2020년 12월에는 화장품 인증 비용을 기존 카테고리당 2,000달러에서 1,000달러로 인하하고 유효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늘려 이러한 비관세 장벽이 완화된 경향이 있다.

3) 무선통신인증제도(WPC: Wireless Planning &Coordination)

인도 내로 무선송신기, 무선수신기, RC 장난감과 같이 무선통신을 이용하는 제품을 수입하기 위해선 WPC(Wireless Planning &Coordination)기관으로부터 ETA(Equipment Type Approval) 승인을 받아야 한다.

WPC기관은 1952년 설립된 인도 정보통신기술부(Ministry of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Technology)의 산하 기관으로 주로 무선통신장비 및 라이선싱을 포함한 주파수 대역 관리와 모니터링을 담당하고 있다.

블루투스 기능을 포함한 무선통신기능이 있는 모든 제품에 대해 인증을 요구하고 있으며, ETA를 받기 위해서는 Radio Test Report(RF Test Report)를 제출해야 하는데 Radio Test 기준선에 대한 정보가 투명하지 않고 제출 서류 중 일부는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하며 일부는 직접 등록 해야하는 등의 복잡한 인증 절차를 가지고 있다.

4) 식품안전 인증제도(FSSAI, The Food Safety and Standard Authority of India)

FSSAI는 Food Safety and Standard 2006 법령에 의거해 창설된 인도 보건복지부(Ministry of Health and Family Welfare) 산하 정부기관이다. 2006년 제정된 식품안전규정(Food Safety and Standard)에 따라, 식품의 제조, 보관, 유통, 판매, 수입과 관련된 절차와 규제를 운영하며, 세부내용은 2017년 9월 11일에 발표된 Food Safety and Standard Regulation 2017 규칙에 의거, 시행하고 있다.

FSSAI 인증제도에 의거하여, FSSAI에 등록된 수입자만 식품을 수입할 수 있으며, FSSAI수입자격이 있는 수입자라도 실제로 수입할 물품을 사전에 FSSAI 실험실로 보내어 성분 검사를 받아야 하며, 사전 샘플링 테스트에 통과하더라도 실제 통관 시 실품을 실험실로 보내어 같은 성분인지 한번 더 확인해야 하는 복잡한 절차를 가지고 있다.

사전 샘플 실험에 대한 비용은 음료, 물, 우유와 같은 특정 물품은 12,000루피이며, 이외의 품목은 5,000루피가 소요된다.

TBT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 평가 절차 등 국가 간의 교역에 불필요한 장애요인을 형성하는 것을 통칭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 to Trade)이라 한다. 현재 인도는 자국민의 안전과 보건, 환경 등을 위해 각종 인증제도 및 규제 적극 실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인도의 무역기술장벽(TBT)는 다음과 같다.

1) 식품에 대한 유효 기간 규정

○ 식품에 대한 까다로운 유효기간 기준

수입 당시 식품의 유효 기간은 본래 제품 수명의 60% 이상이 남아있어야 하며, 제품 수명은 제조일과 유효기간 만료일을 토대로 산출하는데 이러한 규정은 인도 국내산 제품과 비교하여 수입산 제품에 대한 차별적인 장애요소로 작용한다.

○ 부실한 항만보건소(PHO:Port Health Officer)의 검사 절차

모든 식품 화물은 통관 전에 PHO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 결과 전까지 화물창고에 보관되며, 검사 통과에 실패하면 화물은 반송되거나 폐기 처분된다. 대부분의 식품 통관은 인증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샘플링 테스트를 위한 실험 시설이 부족해 검사 대기 중인 제품은 유료 보관 창고에 장시간 방치되는 경우도 많으며, 일부 창고는 식품 보관에 적합하지 않은 상태이기도 하다.

○ 샘플검사 절차

PHO 검사를 받지 못하는 항만은 해당 항만에서 가까운 중앙식품실험실 또는 보건당국 (Directorate General of Health Service)에서 인가한 실험실에 샘플을 보내 검사를 받아야 한다. 샘플 테스트 결과가 나오기까지 1일에서 1개월까지 소요돼 식품 유효기간이 짧아지고 샘플 테스트 비용이 발생하여 수입자에게 이중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험실의 검사 결과에 대해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나, 검사 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고, 제품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아 잘못된 기준으로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식용유와 유지, 콩류, 시리얼 제품, 분유, 연유, 색소성분 및 첨가물은 필수적으로 샘플 테스트를 거쳐야 한다.

2011년 8월 FSSA의 시행 후 기존보다 1개 추가된 4개 샘플로 변경하여 수집하고 있으며, 1개 샘플은 식품 분석가에게 전달되고, 2개 샘플은 FSSAI가 지정한 관리자, 나머지 1개는 업체 요청 시 정부가 승인한 샘플 실험실로 전달된다. 이때, 식품 분석가와 실험실의 테스트 결과가 상이할 경우 최종 심사를 위해 제3의 실험실로 전달 후 분석된 결과로 판정된다.

FSSA의 시행으로 새로운 조정 절차가 추가되었는데, 분석 결과가 기준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검사 판정에 대한 조정 신청이 가능하며, 주 정부에 의해 임명된 관리자가 조정 절차를 주재한다. 식품 안전 항소 재판소는 법원과 동등한 권한이 부여되므로 심각한 위반 사례에 한해 실제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로 인해 법정 분쟁 사례가 현저히 줄어들고 판결 절차가 간소화됐다.

2) 라벨링 규정의 확대 적용

소매를 목적으로 인도에 수입되는 모든 제품은 Standard of Weights and Measures Rules의 조항들을 준수해야 하며, 다음 사항들을 명시해야 한다.

- 수입자명과 주소
- 포장된 제품의 일반적인 명칭
- 표준 단위로 표기된 총수량
- 제품의 포장연월
- 포장된 형태로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최고 소매가 (세금, 운송비, 수수료, 광고비, 운송비 등 모두 포함)
- 수입국(Source of Import)
- (식품이나 화장품의 경우) 유효 기간

통관 전 루피화로 표시된 최고 소매가(Maximum Retail Price, MRP)를 라벨에 명시하는 것은 對 인도 수출업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는데 라벨에 명시된 제품 가격은 세금 산출 근거로 활용된다. 대부분의 경우 판매업자들은 최고가를 실패매가로 간주하기 때문에 정확한 최고가 예측이 중요하다. 한번 정해진 MRP는 수정할 수 없으며, 가격을 인상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통관 물량부터 인상이 가능하다.

3) 중고 자동차 수입규제

인도 정부는 중고 차량 수입 시, 중고 차량의 연수가 제조일로부터 3년이 넘지 않고, 이륜차 및 삼륜차를 제외하고 모든 중고 차량의 운전 자석은 오른쪽에 위치해 있는 차량만 수입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다. 자동차 내 미터기는 킬로미터로 표기되어 있어야 하며, 중고차량 수입은 모두 뭄바이 세관(Customs Port at Mumbai)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중고 차량은 인도로 수출할 경우 별도의 테스트도 거쳐야 하며 이는 수출 및 선적 전에 완료해야 한다. 테스트는 중앙정부에서 고시하는 시험 인준기관을 통해 받을 수 있는데, the Vehicle Research and Development Establishment, Ahmednagar of the Ministry of Defence of the Government of India, Automotive Research Association of India, Pune or Central Farm Machinery Training and Testing Institute(트렉터) 등이 속한다.

또한, 수입하는 중고 자동차 배기량은 3,000cc를 넘어야 하며 1,000~2,500cc의 중고 차량은 전면 수입이 금지되어 있다. 이륜차의 경우 스쿠터는 50cc~500cc 사이의 모델은 수입 가능하며, 모터사이클은 250cc 이상의 모델에 대해 수입이 가능하나 800cc를 넘길 수 없다.

4) 중고 전자기기 수입규제

인도 대외무역총국(DGFT, Directorate General of Foreign Trade)은 인도 내 중고 전자기기를 수입하거나, 인도 내에서 중고 전자기기를 정비하여 재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었으나, 2019년 5월 7일 중고 전자기기 국내판매 및 수입에 대한 규정(Electronics and Information Technology Goods(Requirement of Compulsory Registration)Order, 2012)을 개정하여 인도에 중고 전자기기를 수입하거나, 인도 내에서 재판매하는 것을 법적으로 허용하였다.

하지만 수입거나 인도 내에서 중고 전자기기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중고 전자기기에 대한 BIS 인증을 다시 받고, 그에 맞는 라벨링 및 포장 을 재시행하여야 하며, 대외무역총국(DGFT)으로부터 중고 전자기기 판매를 허가받아야 하는 조건이 따른다.

5) BIS 인증제도

인도표준국(BIS)는 국제표준에 적합한 물품도 인도 내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인증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인도 내 수입 또는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품질 실험 및 제조공장 실사와 같은 절차를 BIS의 담당자가 직접 진행을 하도록 하고 있어서 실험실과 인력의 부족으로 인증을 완료할 때까지 6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수도 있다. 특히, 2020년부터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해외제조공장 실사가 요구되는 인증 품목의 경우에는 약 2년간 인증 진행이 중단되었으므로 해외제조공장 실사가 정상적으로 재개되는 때까지 인증 진행절차가 지연 될 것으로 보인다.

인증 획득을 위해 신청 수수료(약 13 USD) 뿐 아니라 샘플 검사비용(물품에 따라 상이), 은행보증금(10,000 USD), 해외제조공장 실사 비용(담당자의 항공임 등)이 추가로 소요된다. 또한, 인증을 완료한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인증 갱신 수수료를 납부해야한다.

기타

1) 철강 수입 모니터링 시스템

인도 대외무역총국((Directorate General of Foreign Trade, DGFT)은 2019년 11월 20일부터 철강수입모니터링시스템(Steel Import Monitoring System, SIMS)을 도입하여 철강제품을 수입신고 시 해당 물품의 관련정보를 사전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하였고, 2020년 10월 16일 등록 대상을 기존 HS code 기준 제 72류, 73류 및 86류 중 일부 284개 품목에서, 동일 HS code 내 530개 품목을 추가, 약 810여 개로 확대하여 실질적으로 인도에 수입되는 모든 철강 제품에 대해 사전 등록을 의무화하였다.

2) 반도체 수입 모니터링 시스템

인도 대외무역총국(DGFT)은 '21년 3월, 반도체 수입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반도체 수입 모니터링 시스템(Chips Importing Monitoring System, 이하 CHIMS)'을 신설하고, 반도체(Electronic integrated circuits)로 분류되는 HS code 8542호 물품에 수입신고 시 생산자·원산지·기술사양·가격 등 주요 정보를 사전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하였다.

3) 비철금속 수입 모니터링 시스템

인도 대외무역총국(DGFT)은 2021년 4월 21일부터 비철금속 수입 모니터링 시스템(Non-Ferrous Metal Import Monitoring System)을 도입하여 74류와 76류에 해당하는 약 90개 품목에 대하여 인도 수입 전 해당물품 관련 정보를 사전에 온라인 등록하도록 의무화하여 2019년부터 시행된 철강 및 철강 제품 수입 모니터링 시스템(Steel Import Monitoring System)에 추가하여 비철금속 제품에 대하여도 모니터링 대상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이다.

4) 종이 수입 모니터링 시스템

인도 대외무역총국(DGFT)은 2022년 10월 1일부터 종이 수입 모니터링 시스템(Non-Ferrous Metal Import Monitoring System)을 도입하여 HS코드 8자리 기준, 201개 품목(48류)에 대하여 인도 수입 전 해당물품 관련 정보를 사전에 온라인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다. 관세제도

관세제도 개요

인도의 관세 및 통관 사무는 인도 재무부 산하기관인 관세간접세위원회(CBIC: Central Board of Indirect tax and Customs)에서 관장하고 있다. 인도는 연방 국가로서 중앙 정부와 주 정부가 부과·징수하는 세금이 각각 따로 존재하는데, 수출입물품에 대한 관세는 중앙 정부에서 부과·징수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관세청이 관세 및 통관 사무만을 담당하는 것과는 달리, 관세간접세위원회는 관세뿐 아니라 상품서비스세(GST), 중앙소비세, 서비스세 등 중앙 정부에서 부과·징수하는 모든 간접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1) 인도 관세법 개요

인도는 관세의 부과·징수 및 통관에 관하여는 1962년에 제정된 관세법(Customs Act, 1962)에 따르면 관세율에 관하여는 1975년에 제정된 관세율법(Customs Tariff Act, 1975)에 따른다. 그 밖에 이러한 법률(Act)을 기본으로 하여 다양한 규칙(Rule) 및 규정(Regulation)이 제정되어 있으며, 관세간접세위원회에서는 이들 법령의 개정사항을 고시(Notification)로서 게재한다.

현행법령을 인터넷에서 쉽게 열람할 수 있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인도는 각 법령의 개정 연혁을 파악하기 어렵고 예외 규정도 많아 법령의 정확한 파악이 어렵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는 관세법 분야도 마찬가지로서, 기본적인 실효세율 조차 수백가지의 관세 감면 규정 등으로 인해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정확한 법령 검토를 위해서는 회계사(CA), 관세사(Customs broker 또는 CHA) 등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인도의 수입 관세 구조

인도에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기본관세(Basic Customs Duty), 사회보장세(Social Welfare Surcharge), 통합부가세(IGST)가 부과되며, 농업 기반시설 및 개발 부가세(AIDC: Agriculture Infrastructure Development Cess), 건강부가세(Health Cess) 등이 추가적으로 부과된다. 세율은 일반적으로 HS Code 8자리 기준으로 결정되나, 같은 HS Code라도 예외적으로 물품의 용도 및 종류에 따라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다.

3)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세금

○ 관세

관세는 CIF기준 과세가격에 관세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관세의 과세가격은 관세법 제14조에 따라 산정하며, 인도 역시 WTO 체약국이므로 WTO관세평가협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관세율은 관세율법(Customs Tariff Act, 1975)의 별표 제1호(The First Schedules)에서 세계관세기구 품목분류체계(HS Code)에 따라 기본관세율(Basic Customs Duty)을 정하고 있으며, 별도의 고시를 통해 개별 품목의 관세율을 조정하는데, 이 고시관세율(Notification Customs Duty)이 기본관세율에 우선 적용한다.

○ 사회보장세(Social Welfare Surcharge)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의 10%를 사회보장세로 부과한다. 2018-19 예산안을 통해 기본관세에 가산되었던 교육세(Education Cess) 대신 신설되었다.

○ 통합부가세 (IGST)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와 유사한 세금으로서, '관세의 과세가격 + 관세 + 사회보장세 + 기타 세금'에 IGST세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IGST 세율은 품목에 따라 0%, 5%, 12%, 18%, 28%로 차등 부과한다. 납부한 IGST에 대하여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건강부가세(Health Cess)

HS Code 9018~9022에 속하는 의료기기에 대하여 관세의 과세가격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건강부가세로 부과한다. 단, FTA 등에 따라 기본관세(Basic Customs Duty)가 면제되는 수입에 대하여는 건강부가세가 면제된다. 2020년 2월부터 시행되었다.

○ 농업 기반시설 및 개발 부가세(AIDC, Agriculture Infrastructure and Development Cess)

일부 품목의 경우 농업 기반시설 및 개발 부가세(이하 "농업세")를 부과한다. 농업세 세율은 품목마다 상이하며, 기본관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농업세가 면제된다.

관세율 알아보는 법

HS코드 10자리를 사용하고 있는 한국과 다르게 인도는 HS코드 8자리를 사용 중이며, 세분된 상품 분류번호에 따라 관세율 및 수입규제 등이 다르므로 인도의 정확한 HS코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 Indian Trade Portal을 통한 관세율 확인 방법 안내

- 링크: <https://www.indiantradeportal.in/>

- ① 사이트 중간 ITC-HS Code란에 해당 HS코드 6자리를 기입한다.
- ② 해당 HS코드에 해당하는 아이টে임을 선정하여 'Import'를 클릭한다.
 - * 아이টে임을 정확한 영어 명칭을 모를 경우에는 가장 근접한 영어 명칭을 클릭해도 무방함.
- ③ 해당 6자리 HS의 세부적인 8자리 HS코드를 선택하고 Next를 클릭한다.
 - * HS코드는 세계 6자리까지는 공용이며, 한국은 세부적으로 10자리, 인도는 세부적으로 8자리를 사용하고 있음.
- ④ 국가 중 수출국가(예-South Korea)를 선택하고 Next를 클릭한다.
 - * ALL, APTA, CEPA, MFN를 모두 클릭.
- ⑤ 관세율을 확인한다.
 - Most Favoured Nation Tariff은 기본관세율을 의미한다.
 - Asia-Pacific Trade Agreement Preferential Tariff 는 APTA 관세율을 의미한다.
 - Asia-Pacific Trade Agreement Preferential Rules Of Origin는 APTA 원산지 기준을 의미한다.
 -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Preferential Tariff은 CEPA 관세율을 의미한다.
 -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Preferential Rules Of Origin은 CEPA 원산지 기준을 의미한다.
 - * CEPA 및 APTA 적용 품목이 아닌 경우에는 'Not Applicable'로 표시

6. 통관·물류

가. 물류정보

물류정보

1) 주요 무역항 및 물동량

○ 주요 무역항

인도는 주요 항로에 위치하여 세계 무역의 중심이 되는 국가이다. 주요 항구는 콜카타(Kolkata), 파라딕(Paradip), 비자크하파트남(Visakhapatnam), 엔노레(Ennore), 첸나이(Chennai), 자와할랄 네루(Jawaharlal Nehru, JNPT), 칸들라(Kandla), 뭄바이(Mumbai), 무오가오(Mormugao), 투티코린(Tuticorin), 코친(Cochin), 뉴망갈로르(New Mangalore)에 위치하고 있다. 이들 항구로 들어오는 화물은 중동, 유럽,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일본, 한국 등에서 출발한다. 한국에서 출항하는 화물은 대부분 뭄바이와 첸나이를 통해 인도로 운송되고 있다.

○ 주요 무역항별 물동량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19/20 회계연도 기준 전체 무역항의 물동량은 전년대비 4.6% 감소하였다. 특히, 뭄바이(Mumbai), 코친(Cochin), 뉴망갈로르(New Mangalore), 첸나이(Chennai) 항구의 물동량은 전년대비 약 7% 이상 급격하게 하락하였다. 그러나 2021/22 회계연도 기준으로 콜카타(Kolkata), 파라딕(Paradip), 비자크하파트남(Visakhapatnam) 등 12개의 주요 항구의 물동량은 전년대비 6.94% 증가한 719.38억 MT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한 물동량 감소세를 회복하였다.

2) 주요 공항 및 물동량

○ 주요 공항

인도는 전국에 15개의 국제공항이 있으며 뉴델리(New Delhi), 뭄바이(Mumbai), 콜카타(Kolkata), 첸나이(Chennai) 등 4대 거점 도시와 암다바드(Ahmadabad), 벵갈루루(Bengaluru) 등 주요 대도시에 국제공항이 있다. 특히 뉴델리 공항은 2021년부터 유럽, 미국, 두바이, 호주 등 여러 나라로 의료장비, 의약품, 백신 등의 화물을 운송하는 항로의 중심이 되어 2019년 대비 16개가 추가된 87개국을 목적지로 화물을 운송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인도정부는 2010년 뉴델리의 인디라간디국제공항이 공항시설을 현대화한 것을 시작으로 현재 뭄바이, 벵갈루루, 첸나이 등에 위치한 공항에 대해서도 시설 개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뉴델리의 동쪽 우타르 프라데시(Uttar Pradesh)주의 노이다(Noida) 및 그레이트 노이다(Great Noida)지역에 총 31억 달러를 투자하여 2018년부터 Jewar 국제공항을 건설하고 있으며 2023년부터 운영될 예정이다.

○ 주요 공항 물동량

인도 공항 물동량의 약 60%는 국제 운송량, 나머지 40%는 국내 운송량에 해당하며 회계연도 2014/15년부터 5년간 국제 운송량과 국내 운송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각각 연평균 6.14%와 5.37%의 증가율을 보였다. 회계연도 기준 2020/21년 기준 전체 공항의 국내 운송량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전년대비 6.4% 감소한 333만 MT를 기록했으나, 2021년 4월부터 9월까지의 기간동안 전체 공항의 국내 물동량은 전년 동기 대비 72.1% 증가하여 코로나19의 영향에 의한 물동량 감소세를 회복한 것으로 보인다. 인도에서 가장 규모가 큰 공항은 뉴델리 공항으로 서남아 지역의 가장 큰 물류 허브이며 연간 총 180만 MT의 물량을 수용할 수 있다. 2020년 뉴델리 공항의 물동량은 약 73만 MT이며, 2021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을 회복하면서 유럽, 중동 등 여러 국가의 물류 거점 역할을 하며 전년대비 27% 증가한 약 93만 MT의 물동량을 기록하였다.

3) 유의사항

인도 내 화물 운송의 65%가 육로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연방 국도의 대부분이 2차로이고, 비포장도로로 굉장히 열악하므로 화물 운송에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인도 내에서 5만 루피 이상의 위탁 화물을 운송하고자 할 때 E-way bill이란 서류를 의무적으로 생성

해야 한다. 이 제도에 따라 화물의 운송인은 상품의 중량을 포함한 세부사항과 목적지, 공급자(송하인), 공급받는 자(수하인), 운송인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기재한 서류를 선적, 운반 시 관계당국 공무원에게 제시해야 한다. E-way bill은 소유권에 상관없이 운송인이 발행하게 되어 있으며, 이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E-way bill 포털에 사전등록을 마친 후, 15자리의 고유번호가 포함된 ID를 부여받은 상태여야 한다.

4) 기타 참고사항

인도 정부는 2015년부터 2035년까지 인도의 수출입 및 국내 물류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Sagar mala라는 프로젝트를 시행하여 약 820억 달러를 투입할 예정이다. 이 프로젝트는 항구의 현대화 및 항구 간 네트워크 연결 개선과 함께 6개의 대형 항구를 건설하고, 101개의 강을 개발하여 수륙운송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또한, 인도 정부는 공항 개발 프로젝트인 UDAN(Ude Desh ka Aam Nagrik)에 따라 전체 항구의 수용량을 2022년까지 8억 1,800만 톤을 추가하여 확장하고, 공항 신설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인도 정부의 투자로 2022년까지 인도 전체 무역항의 물류 수용능력이 약 5~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 통관제도

통관 유형별 절차

1) 일반통관

인도에서 일반적인 경우 통관에 소요되는 시간은 행정상 운송 수입의 경우 3~4 근무일, 항공 운송은 약 1~2 근무일이 소요된다. 일단 물품이 입항하게 되면 보세구역장치에 적하되고, 이후 전자데이터교환(EDI)신고 또는 수작업신고 통해 수입신고를 하게 된다. 이후 인도 관세청의 수입요건, 관세 평가 등을 검사하는 Appraiser Section과 관련 서류 및 관세율을 재점검하는 Audit Section 과정을 거치게 되며, 이를 통과하면 모든 서류에 서명받게 된다. 이후 인도 관세 납부를 위해 Challan No.라는 번호를 부여받게 되고, 이를 근거로 관세를 완납하게 되면 물품을 반출할 수 있다.

○ 수입 준비 단계

인도에서 수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인도 대외무역총국(DGFT)로부터 IEC(Importer Exporter Code)를 발급받아야 한다. 참고로 IEC를 발급받으려면 신청인 서명의 디지털본, PAN(영구계좌번호, Permanent Account Number)사본 및 취소 수표(Cancelled Cheque)가 필요하므로, 사전에 은행 계좌를 개설 및 PAN 발급이 필요하다.

또한, 거래은행에서 AD Code(Authorized Dealer Code)를 발급받아 수입관할 세관에 등록하여야 하고, 간접세 납세의무자에게 부여되는 GSTIN(Goods and Service Tax Identification Number)를 수입신고 신고서에 필수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므로 사전에 발급받아야 한다.

○ 수입 통관 단계

물품을 수입하려면 수입자 또는 통관사가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수입신고는 ICEGATE 웹사이트를 통해 통합신고서(Integrated Declaration)를 제출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며, BIS 인증과 같은 요건 구비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인도는 2021년 3월 29일부터 입항 전 수입신고를 의무화하였다. 따라서 선박의 경우 화물 도착일 1일 전까지, 항공기의 경우 화물 도착

일까지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수입신고기한을 준수하지 않으면 경과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경과 후 3일 동안에 대하여 일당 5천 루피, 그 이후에는 일당 1만 루피의 신고 지연 과태료가 부과된다.

2) 임시통관(ATA Carnet)

인도에 들어온 품목을 사용하지 않고 24개월 이내에 다시 반출할 목적이 있는 경우 임시통관이 이루어지게 된다. 임시통관을 위해서는 해당 품목의 관세를 납부해야하는 데, 다시 반출할 시 장치했던 시간에 비례하여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인도 내로 반입되지 않고 바로 반출할 경우 최대 98%까지 환급이 가능하나, 인도 내 해당 물품이 사용될 경우 기간과 상관없이 관세의 환급이 불가하다.

ATA Carnet는 Admission Temporaire이라는 임시통관을 뜻하는 불어와 Temporary Admission의 영어 그리고 수첩을 뜻하는 불어 Carnet의 머리 글자 조합으로, 임시 통관을 위한 수첩을 말한다. ATA 협약에는 인도를 포함하여 전세계 71개국에 서명하여 발효 중이며, ATA 통관 수첩은 국제 관세 서류(International Uniform Customs Document)의 일종으로 물품의 임시 통관 시 관세 및 보증금을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일종의 보증서 역할 및 수출입 신고 시 세관에 제출하는 수출입 신고서 역할을 한다.

3) 전시물품의 통관

전시·박람회, 학회, 세미나, 견본품 및 각종 회의를 위한 물품의 통관은 관세가 면제된다. 하지만 그 관세액이 5,000루피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1년에 그 누적 관세액이 60,000루피를 초과하거나 샘플의 개수가 15개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샘플의 가치가 10,000루피 이하일 경우 관세가 면제되나, 샘플의 가치가 10,000루피 이상일 경우 9개월 안에 반출되어야 하며, 필요의 경우 각 세관의 Assistant Commissioner of Customs 권한으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세관에서 판단하여 고가의 샘플의 경우 보증 관세를 지불하고 9개월 안에 재반출한다는 조건으로 통관할 수 있다.

4) 간이통관

2,000루피 이하의 제품의 경우, 간이통관 적용이 가능하다. 이는 전자상거래의 물품에도 적용된다. 인도는 2,000루피 이하의 품목을 3가지 분류로 나누어 HS코드를 적용하고 있으며, 그 분류는 다음과 같다.

- 9804.10.00 개인 사용 목적 의약품
- 9804.90.00 개인 사용 목적 기타 물품
- 9805.10.00 선(기)내 판매 목적 생선, 고기, 야채 등 식품 및 생활용품

인도 상공국 산하 무역국(Directorate General of Foreign Trade)은 위의 3가지 분류 HS코드의 과세가격에 총42.08%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다만, 수입 제한·금지 품목으로 분류되지 않으며, 자가사용으로 판단되는 물품은 면세되나, 실무적으로는 세관공무원에 따라 자가사용 물품에도 관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다.

5) 허가 통관

수입의 제한 품목 및 식물, 씨앗, 과일 등을 수입하는 경우, 별도의 수입허가 신청을 해야한다. 정식 통관과 그 절차가 다르지는 않으나 수입 전에 발급받은 수입허가를 받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수입신고 시점에 선적서류와 함께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식물, 씨앗, 과일 등의 경우에는 동식물 검역소에서 샘플의 테스트를 통해 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수입제한 품목의 경우 인도 대외무역총국(DGFT)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물품의 세부정보와 용도, 사용처 등을 등록 후, 수수료(약 7 USD)를 납부하고, 그에 해당하는 수입 라이선스를 발급받아야 수입할 수 있다.

<자료원 : 관세간접세위원회(CBIC), 대외무역총국(DGFT), 인도 관세법 (The Customs Act, 1962)>

통관 시 유의사항

○ 통관의 지연

인도의 통관은 행정상 일반적으로 3~4 근무일이 소요된다. 이를 단축하기 위해 통관 시스템 현대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만 아직 그 행정 시스템이 완전하지 않으며, 한국과 다르게 거의 모든 서류를 오프라인으로 직접 제출해야 하므로 통관 지연이 자주 발생한다. 또한 사소한 서류 기재 오류 등을 이유로 통관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이를 빌미로 뒷돈을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 통관 정보의 불투명

인도의 관세 행정은 한국에 비해 그 정보 및 기준이 전반적으로 불투명하며, 실무선의 재량권이 크고 융통성 없는 처리 관행으로 인해 통관 애로가 자주 발생한다. 인도는 한국과 달리 통관 단계(Appraiser Section)에서 관세평가를 하는데, 중고 기계 등과 같은 물품의 경우 송장(Invoice)상의 가격과소평가(Undervalue)를 문제 삼아 직권으로 상품 가치를 정하고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 FTA 사후 협정 적용 불가능

인도는 공식적으로는 FTA 사후 협정 적용을 인정하고 있으나, 세관의 행정 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아 실무적으로 FTA 사후 협정 적용이 불가능하다. 다만, 통관 시 FTA 협정 적용을 위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 중이라는 증명서를 제출하면, FTA 사후 협정 적용을 받아주는 경우가 있으나 통관을 담당하는 세관 공무원의 재량이 크게 작용한다. 또한, 관세 혜택이 주어지는 다른 제도의 경우에도 증빙이 충분치 않다는 이유로 통관을 거부하는 사례도 자주 발생한다.

○ 인도 지역별 세관관할

인도의 세관행정은 명목상 통일되어 있으나, 지역별 차이나 관할 세관 당국 간 소통 미비로 인하여 관세통관 상의 애로해소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한 세관지에서 특정 HS코드로 정식통관이 되었다고 하여도, 다른 세관에서 같은 품목을 통관할 때는 해당 HS코드를

인정받지 못할 수 있는 세관별로 서로 다른 기준이 적용되기도 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 서류의 수정

인도는 통관에 필요한 서류에 기재 오류나 상호 간의 불일치가 있을 시 이를 수정하기가 매우 어려우며 이로 인해 통관절차가 2,3주씩 지연되기도 한다. 영문 한글자 오타를 수정하는데 3주를 허비해야 할 수도 있으며, 허위신고를 이유로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다.

○ 원산지관리규칙 시행(CAROTAR 2020)

2020년 9월 21일부터 인도 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관리규칙 시행으로 한-인도 CEPA 등 인도와 체결한 무역협정의 관세 혜택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수입신고 시 수입물품에 적용된 원산지 기준 및 생산공정 등을 기재한 Form I를 제출하여야 한다.

○ 입항 전 수입신고 시행

기존에는 화물 도착 후 24시간 내 수입신고를 하는 것을 의무화하였으나, 2021년 3월 29일부터 수입신고 관련 내용을 개정하여 화물을 선적한 선박 등이 인도의 수입항 등에 도착하기 전날(휴일 포함)까지 수입신고서(Bill of Entry)를 제출하여야 한다. 예외적으로 방글라데시, 몰디브, 미얀마, 파키스탄, 스리랑카로부터 도착하는 경우에는 화물을 선적한 선박 등이 도착하는 날(휴일 포함)까지 수입신고서(Bill of Entry)를 제출하여야 한다.

- 자료원 : KOTRA 자체 정보 종합 -

나. 주요 포워딩 업체 및 통관업체

○ KGL Network Private Limited

주소	Plot No. 261-262, 2nd Floor, -6,, Street Number 6, Mahipalpur Extension, Mahipalpur, New Delhi, Delhi 110037
전화번호	+91)11-4570 9700
이메일	YsCHANG@kglindia.com
홈페이지	http://kglindia.com/
비고	한국업체

○ Taewoong Logistics

주소	No 75 beekeyen towers coral merchant street manady Chennai, Chennai, Tamil Nadu 600001
전화번호	+91)44-43432716
이메일	James@taewoong.in
홈페이지	http://www.e-tgl.com/index.jsp
비고	한국업체

○ Hanaro Logistics Pvt. Ltd.

주소	1006, 10th Floor, Tower-A, BPTP Park Centra, Sector-20, Gurgaon, Haryana - 122003
전화번호	+91)124-4634500
이메일	htjung@htns.com
홈페이지	https://www.htns.com
비고	한국업체

○ CTC FREIGHT CARRIERS PRIVATE LIMITED

주소	No. C-510, Steel Chambers, Kalamboli, Navi Mumbai - 410218, Maharashtra
전화번호	+91)22-27420241
이메일	ctcfreight@yahoo.com
홈페이지	http://www.ctcfreight.com/
비고	뭄바이 소재

○ Gati Ltd.

주소	Plot No.20, Survey No.12, Kothaguda, Kondapur, Hyderabad – 500084
전화번호	+91)40-71204284
이메일	customerservice@gati.com
홈페이지	https://www.gati.com/contact-us/contact-details/

○ 쉐커 인디아

주소	DLF Building No. 8-C, 12th Floor, DLF Cyber City, Phase II Gurgaon, Haryana
전화번호	91 124 4645000
이메일	marketing.india@dbschenker.com
홈페이지	https://www.dbschenker.com/in-en/

<자료원 : KOTRA 뉴델리 무역관>

III. 투자

1. 투자환경

가. 투자유치제도

외국인투자법

1) 외국인투자법(외국인투자 관련 법규, 투자신고 방법 및 절차)

대인도 투자기업이 직면하게 되는 주요 투자 관련 법률로는 산업법, 외환관리법, 회사법, 공장법, 소득세법 및 중앙물품세법 등이 있다.

○ 산업법

- 상공부에서 관장하고 있는 산업법(Industries Development and Regulation Act, 1951)은 각종 산업별 개발 관련 규제를 총망라하고 있는 법률로 투자 대상 산업에서 어떤 인허가가 필요하고 어떤 산업장려책이 시행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할 법률이다. 이 법률의 제정 목적은 정부의 경제개혁 의지를 반영하고 실질적인 경제성장을 이뤄 인도 경제가 세계 경제와의 통합을 조화롭게 추진하는 데 있다. 산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은 크게 38가지로 분류되며 주요 산업은 금속산업, 연료, 보일러, 전자장비, 기계 등이 있다.

○ 외환관리법

- 외환관리법(The Foreign Exchange Management Act, 1999)은 인도중앙은행의 외환 규제국이 관장하고 있으며 인도의 대외교역을 촉진하고 인도 외환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유지를 장려하기 위한다는 취지로 제정됐다. 투자자금 도입 같은 자본금융 거래, 자산 및 청산자금 송금, 해외 자금 차입과 상환에 관련된 모든 외환의 대인도 유출입을 규정하고 있다.

○ 회사법

- 회사법(The Companies Act, 2013)은 기업부에서 관장하는 법률로서 1956년 제정된 이후 2013년 전면 개정됐다. 인도의 회사 설립, 유지, 청산에 관한 제반 절차는 이 법에 규정돼 있으며 자본금 및 이사 선임 등 회사 설립 및 청산과 관련된 제반 문제를 총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 소득세법

- 소득세법(The Income Tax Act, 1961)은 재무부에서 관장하고 있는 법률로 개인소득세과 법인 소득세 등 직접세를 관장하며 용역, 라이선스 및 기술사용료 등 각종 해외 지급 수수료를 규정하고 있다.

○ 중앙물품세법

- 중앙물품세법(Central Excise Duty Act, 1944)은 소득세법과 마찬가지로 재무부에서 관장하고 있으며 판매세, 물품세, 서비스 세, 부가가치세, 관세, 물품 진입세 등 간접세 전반을 규정하고 있다.

2) 투자신고 방법 및 절차

FDI에 대한 승인은 정부 사전승인이 불필요한 자동승인과 정부(외국인 투자진흥 위원회, FIPB)의 사전승인이 필요한 FIPB 승인의 두 종류가 있다. 대부분의 제조업 및 서비스 분야에 대해 외국인 투자 장려 목적으로 절차 및 시간을 간소화한 자동승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 자동승인

- ① 투자 대금 납입 후 30일 내, 인도 중앙은행(Reserve Bank of India) 지역사무소에 사실 통보 → ② 주식(지분) 발행 후 30일 내 인

도 중앙은행 신고

○ 정부승인(일반투자자의 경우)

- ① 인도 재무부(Department of Economic Affairs; DEA) 제출 → ② 산업별 정부 담당기관의 심사 → ③ 상기 자동승인 과정을 거침

투자인센티브

1) 중앙정부 주요 인센티브

Invest India에 따르면 인도 중앙정부의 주요 인센티브는 특별경제구역(Special Economic Zones), 수출촉진용 자본재제도(Export Promotion Capital Goods schema), 재화 수출제도(Merchandise Exports from India schema), 산업별 연구개발 촉진제도(Industrial R&D Promotion Program), 무관세 수입허가제도(Duty Free Import Authorisation Scheme & Project Import Scheme)등 5개 이상이 있다. 대표적으로 인도 정부는 2005년 6월 특별경제구역을 설치하고 입주 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및 입주 요건 완화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 제조업 연계 인센티브 (Production Linked Incentive Scheme, PLI)

모디 정부는 인도 제조업 육성 및 수출을 강화하기 위해 '20년 3월 1차 생산연계인센티브제도(PLI)를 발표했으며, 선정 기업에 향후 5년간 동안 매출액 증가분의 4~6%에 상당의 인센티브 제공할 계획이며, 현재 15개의 핵심부문에 대한 PLI 제도 시행 중이다. PLI 대상 품목은 아래와 같다.

- 모바일폰 및 모바일 부품
- 의약품 원료
- 첨단 화학전지
- 전기전자기기
- 자동차 및 관련 부품
- 의약품 원료
- 통신기기
- 석유
- 식품 가공
- 태양광 발전 모듈
- 의료기기
- 백색가전 제품
- 특수철강
- 반도체
- 드론

2) 주 정부(지방정부) 주요 인센티브

Invest India에 따르면 인도의 주정부 인센티브에는 맞춤형 인센티브제도(Customised Package Incentive Scheme), 이익보조금제도(Interest Subsidy), 세금 인센티브(Tax Incentives), 인지세 감면제도(Stamp Duty Exemption), 자산 보조금제도(Capital Subsidy), 전기세 감면제도(Electricity Duty Exemption) 등 6개 이상 있다. 그 중 Electricity Duty Exemption는 전기세 감면 및 면제 혜택을 부여하며 구역별로 차등 적용되며, Tax Incentives는 세금 감면을 지원한다.

○ 주요 주별 인센티브는 동 링크 내 KOTRA 발간 보고서'인도 주요 주별 인센티브 안내서'에서 확인 가능 : <https://url.kr/un2sip>

제한 및 금지(업종)

1) 투자 제한 및 금지 업종

외국인 투자자의 인도 회사에 대한 최고 투자 허용 한도 및 분야별 제한은 산업 분야에 따라 상이하다. 외국인 직접투자자는 비거주자에 의한 인도 회사 지분참여 자동 승인 또는 승인 조건부에 따라 허용되며, 이 경우 FDI 정책에 규정된 특정 한도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 연금, 보험, 민간항공 등 투자가 제한된 분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산업 분야에서 100%까지 투자를 허용한다.

○ 투자 금지 업종

- 정부, 민간, 온라인 및 기타 복권 관련 사업
- 카지노를 포함한 도박 및 내기 사업
- Chit funds(인도식 계모임, 공동사업자금)을 이용한 사업
- Nidhi company(기금을 받아서 활동하는 회사, 조합원끼리 금전거래)
- 양도 가능 개발권의 거래(TDRs; Transferable Development Rights)
- 부동산업이나 농가 건설
- 시가, 궤련(cheroot) 포함해 담배 및 담배 대체물 제조
- 민간부문 투자에 개방되지 않는 투자활동 및 분야(원자력 에너지, 허가된 철도 운영을 제외한 부분)
- 복권 사업 및 도박 활동을 위한 가맹점 영업권, 상표, 브랜드명, 영업 계약 허가를 포함하는 어떠한 형태의 외국 기술 협력 역시 금지

○ 정부승인 및 자동승인 업종

- 방위산업(74%까지 자동승인)
- 인공위성 분야 (74%까지 정부승인)
- 방송콘텐츠서비스(분야에 따라 49% 혹은 100% 정부 승인)
- 민간 부문 은행업, 민간보안회사(49%까지 자동승인, 이후 74%까지 정부승인)
- 멀티브랜드 유통업(51%까지 정부승인)
- 정기 노선 항공수송서비스(49%까지 자동승인, 이후 100%까지 정부 승인)
- 통신서비스 (49%까지 자동, 이후 정부 승인)
- 증권 인프라사, 연금, 전력거래 (49%까지 정부승인)
- 출판매체(신문, 뉴스 및 시사)를 다루는 정기간행물 발간의 경우 지분 26%까지 정부승인)
- 공공 부문 은행업(20%까지 정부승인)
- 비 공공부문 은행업 (49%까지 자동승인, 이후 74%까지 정부승인)
- 보험(74%까지 자동승인)

나. 투자입지여건

특별경제구역 및 자유무역지대

1) 특별경제구역(SEZ)

인도 정부는 2005년 6월 SEZ 설치 및 입주 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및 입주 요건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제특별구역법(Special Economic Zone Act, 2005)과 경제특구시행령(Special Economic Zone Rules, 2006.2)을 공표해 SEZ 설립에 실효성을 부여했다.

2) SEZ 지정 현황

인도 정부는 2022년 1월까지 총 425건의 SEZ를 정식으로 승인하였고, 35건의 원칙승인이 허용됐다. 이 중 364건이 고지된(Notified) 상태이고, 268건의 SEZ를 운영하고 있다. 고지된 364건의 SEZ 중에서 중앙정부가 운영하는 SEZ는 7개로 Kandla SEZ, SEEPZ SEZ, Noida SEZ, MEPZ SEZ, Cochin SEZ, Falta SEZ, Visakhapatnam SEZ이다. 그 외의 SEZ는 주정부가 관할한다.

(1) 중앙정부 운영 SEZ

- Kandla SEZ의 지역은 Kandla와 구자라트 지역이며, 해당되는 업종은 화학과 철강 등이 대표적이다.
- SEEPZ SEZ의 지역은 뭄바이와 마하라슈트라 지역이며, 해당되는 업종은 전자, 보석류 업종이다.
- Noida SEZ의 지역은 우타르 프라데시 지역이며, 해당되는 업종에는 주로 전자제품 등이 있다.
- MEPZ SEZ의 지역은 첸나이와 타밀나주 지역이며, 해당되는 업종은 자동차와 조선 등이 있다.
- Cochin SEZ의 지역은 코친과 케랄라 지역이며, 해당되는 업종은 농식품과 IT 등이 있다.
- Falta SEZ의 지역은 Falta와 웨스트벵갈 지역이며, 해당되는 업종은 대표적으로 화학과 전자제품 등이 있다.
- Visakhapatnam SEZ의 지역은 Visakhapatnam와 안드라프라데시 지역이며, 해당되는 업종은 대표적으로 엔지니어링, 건설, 화학 등이 있다.

(2) 주(州) 별 SEZ 운영 개수 및 특화 산업

- Tamil Nadu주 운영 중 SEZ 50개: IT, ITES(29), 엔지니어링(8), 섬유(4), 제약(1), 기타(8)
- Maharashtra주 운영 중 SEZ 37개: IT, ITES(21), 제약(3), 엔지니어링(3), Solar(1), 기타(11)
- Telangana주 운영 중 SEZ 35개: IT, ITES(24), 제약(5), 보석류(1), 항공(1), 기타(4)
- Karnataka주 운영 중 SEZ 34개: IT, ITES(27), 엔지니어링(2), 제약(2), 항공(1), 섬유(1), 기타(1)
- Andhra Pradesh주 운영 중 SEZ 24개: IT, ITES(5), 제약(6), 섬유(4), 농식품(2), 기타(7)
- Gujarat주 운영 중 SEZ 21개: IT, ITES(6), 섬유(2), 엔지니어링(3), 제약(1), 화학(1), 기타(8)
- Kerala주 운영 중 SEZ 20개: IT, ITES(14), 농업(1), Solar(1), 전자(1), 기타(3)
- Uttar Pradesh주 운영 중 SEZ 14개: IT, ITES(10), 엔지니어링(1), 기타(3)

- Haryana주 운영 중 SEZ 7개: IT, ITES(7)
- West Bengal주 운영 중 SEZ 7개: IT, ITES(5), 보석류(1), 기타(1)
- Madhya Pradesh주 운영 중 SEZ 5개: IT, ITES(4), 기타(1)
- Odisha주 운영 중 SEZ 5개: IT, ITES(2), 알루미늄(1), Mineral(1), 기타(1)
- Punjab주 운영 중 SEZ 3개: IT, ITES(2), 제약(1)
- Rajasthan주 운영 중 SEZ 3개: 보석류(2), 기타(1)
- Chandigarh주 운영 중 SEZ 2개: IT, ITES(2)
- Chhattisgarh주 운영 중 SEZ 1개: Solar(1)
- Delhi, Goa, Jharkhand, Manipur, Nagaland, Puducherry, Tripura주는 현재 운영 중인 SEZ 없음

3) SEZ 지역의 주요 인센티브

- 소득세법 10AA 조항에 따라, 최초 5년 동안 SEZ 지역의 수출 이익에 대하여 100% 소득세 면제받을 수 있으며 다음 5년 동안은 50% 소득세 면제, 그다음 5년 동안은 증가한 수출 이익의 50%를 면제를 받을 수 있다.
- 소득세법 115JB 조항에 따라, 최저한세 면제받을 수 있다.
- Central Sales Tax, Service Tax, State sales tax를 면제받을 수 있다.
- 2017년 IGST 조항에 따라, SEZ 지역에 위에 3가지 세금은 GST로 통합되고, 0%의 세금을 부과한다.

인도 정부의 SEZ 목록 및 인센티브 등 세부내용은 SEZ in India 홈페이지(<http://sezindia.nic.in/#>) 에서 확인가능하다.

산업단지

- 노이다, 그레이트 노이다(Noida and Greater Noida)

규모	202km ²
위치	#169, Chitvan Estate Sector Gamma-II Greater Noida(201308), Uttar Pradesh

임차료	Addition to 4000 to 8000 스퀘어미터 : 9,300루피 Addition to 8000 to 20000 스퀘어미터 : 7,800루피 Addition to 20000 to 40000 스퀘어미터 : 6,300루피 Addition to 40000 to 80000 스퀘어미터 : 5,100루피 Above 80000 스퀘어미터 : 3,900루피
관할기관 및 연락처	Greater Noida Industrial Development Authority Phone : 0120 233-6030, P: 0120 233-6031 Fax : 0120 233-6002, 233-6006 담당자 : Mr.Anup chandra Pandey 직책 : Chairman 이메일 : chairman@gnida.in 담당자 : Mr. Narendra Bhooshan 직책 : CEO 이메일 : ceo@gnida.in
비고	주요 유치산업으로 전자 가전 제품, 섬유, 의류,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 등이 있다.

○ 비히와디(Bhiwadi)

규모	21.45km ²
위치	Udyog Bhawan, Tilak Marg, Jaipur, Rajasthan 302005
임차료	Phase 1-4(bhiwadi) : 6,000루피 Rampur mudana : 6,000루피 kuskhera Phase 1-3 : 5,000루피 Tabugeda : 5,000루피 Pathredi : 5,000루피 Chaupanki : 5,000루피 Karoli : 60,000루피 Selarpur : 6,000루피
관할기관 및 연락처	Rajasthan State Industrial Development and Investment Corporation Phone : 91-141-2227751-755 &4593201-205 담당자 : Kuldeep Ranka 직책 : Chairman 담당자 : Mr.T.C. Bhatt 직책 : 지역 담당자 RIICO Ltd, Unit-I Bhiwadi, Distt Alwar RIICO Ltd., Bhiwadi-II Phone : 91-01493-223070/220070 담당자 : Mr.Shiv Kumar 이메일 : bhiwadi1@riico.co.in, bhiwadi2@riico.co.in
비고	주요 유치산업으로 알루미늄, 섬유, 의류, 운송장비, 화학제품, 전선 케이블 제품 등이 있다.

○ 구르가온(Gurgaon)

규모	32km ²
위치	Plot No: C-13-14, Sector 6, Panchkula-134109, Haryana, INDIA

임차료	Guugram : 48,000루피 Gurgaon 34-35 : 32,000루피 Industrial estate , Gurugram : 48,000루피 Gurugram phase-1-5 : 48,000루피
관할기관 및 연락처	HSIIDC Industrial Estate, Phase V, Vanijya Nikunj, Udyog Vihar, Gurgaon Phone : +91-172-2590481, 2590482, 2590483 Fax: +91-172-2590474 이메일 : info@hsiidc.org.in 담당자 : Mr. Arun Kumar Garg, Mr. Subhash Vats, Ms. Babita sharma
비고	주요 유치산업으로 자동차, 자동차 부품, 오토바이, 플라스틱 등이 있다.

○ 마네사(Manesar)

규모	13.76km ²
위치	HSIIDC (Estate Wing) Industrial Model Township, Manesar, Distt. Gurgaon
임차료	IMT, Manesar(Phase 1-4, TPT Hub/WHTH) : 23,237루피
관할기관 및 연락처	HSIIDC (Estate Wing) Industrial Model Township, Manesar, Distt. Gurgaon. Phone : +91-0124-2291351, 2290326 담당자 : Ms. Priya Sardana, Mr. Subash Vats, Ms. Aninderbir Kaur
비고	주요 유치산업으로 자동차, 자동차 부품, 오토바이, 플라스틱, 섬유 등이 있다.

○ 바왈(Bawal)

규모	13.35km ²
위치	HSIIDC, Sector-3, Delhi-Jaipur Highway, IMT Bawal(Distt. Rewari)
임차료	IMT Bawal(Phase I - IV) : 7696루피
관할기관 및 연락처	HSIIDC Growth Centre, Sector-3, Delhi-Jaipur Highway, Bawal (Distt. Rewari) Phone : +91-0128-4264120 이메일 : hsiidcbawal@gmail.com 담당자 : Mr. Sunil Dutt Paliwal, Mr. Mukesh Gupta, Mr. Ram Kumar
비고	주요 유치산업으로 오토바이, 자동차부품, 알루미늄 제품 등이 있다.

<자료원 : 관할기관 홈페이지 등으로부터 KOTRA 뉴델리 무역관 종합>

주요 지역별 여건

○ 구자라트(Gujarat)

- 면적: 196,063km²
- 인구: 6,040만 명
- 상업수도: 아메다바드(Ahmedabad)
- 주요 산업: 화학 및 석유화학, 항공 우주 및 국방, 제약, 농업 및 식품 가공
- 주요 지역: 다헤즈(Dahej) 석유화학 투자지역은 바루치(Bharuch)지구의 캄바트만 해안 벨트의 453km² 재개발 지역에 조성되었다.
- 비고: 세계에서 가장 큰 정유 공장 잠나가르(Jamnagar)와 세계에서 가장 큰 선박 해체 야드 바브나가르(Bhavnagar)가 있으며, 인도 유일의 액체 화학 항구 터미널이 있다. 구자라트는 인도에서 전기가 남는 주 중의 하나이며, 주요 공산품으로 시멘트, 석유화학 제품이 있다.

○ 하리아나(Haryana)

- 면적: 44,212km²
- 인구: 2,530만 명
- 주도: 찬디가르(Chandigarh)
- 주요 시설: 뉴델리 및 찬디가르의 2개의 국제 공항
- 주요 산업: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인도 자동차 생산의 50%, 이륜차의 33%, 트랙터의 11% 생산), 농업기반(인도의 2번째 곡물 생산 지이며 전국 바스마티 쌀 수출의 60% 이상 차지), 식품 가공 산업, 섬유 및 의류 산업, 전자 및 IT/ITeS(인도의 3번째 소프트웨어 수출 지역), 신재생 에너지 및 태양광 단지
- 비고: 인도 에스컬레이터의 80%, 크레인의 52%, 이륜차의 33%가 생산되며, 약 1,670개의 대기업 및 중견기업과 9만 개 이상의 중소기업들이 있으며, 국제공항을 보유하고 있다.

○ 카르나타카(Karnataka)

- 면적: 191,791km²
- 인구: 6,110만 명
- 주도: 벵갈루루(Bengaluru)
- 주요 시설: 3,250Km의 철도망을 구축하여 물류 이동이 원활함. 11개의 항공이 있으며, 뉴 망갈로르 항만은 인도 9번째로 큰 항만임.
- 주요 산업: 식품 가공, 전자 시스템 설계 및 제조, 섬유(인도 전체 의류 생산의 20% 차지하며 대형 의류회사들이 진출함. 144개의 R&D센터와 168개의 인력개발센터가 있음),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IT 및 BPM(벵갈루루는 세계 4번째로 큰 기술 클러스터이며, 인도 최대의 소프트웨어 수출기지)
- 비고: 인도의 기술 혁신, R&D 자본으로 유명한 주이다. 인도에서 가장 큰 바이오 기술의 허브 지역으로 인도 의료기관 및 의료 산업개발 기관이 밀집해있고, 소프트웨어 산업단지도 밀집해있다.

○ 마하라슈트라(Maharashtra)

- 면적: 307,713km²
- 인구: 1억 1,200만 명
- 주도: 뭄바이(Mumbai)
- 주요 지역: 8개의 전문 식품단지(부티보리, 산드라, 네바사, 라투르, 오스마나바드, 난데드, 치플룬), 주요 자동차 산업단지(Pune, Nashik, Aurangabad, Mumbai, Nagpur)
- 주요 산업: 자동차(푸네 핼프리 친치와드 지역의 글로벌 자동차 및 부품 생산시설, 아우랑가바드에는 Skoda, Bajaj Auto, Audi AG), 국방제조(푸네에 마힌드라, 타타자동차, Bharat Forge), 식품 가공, 섬유
- 비고: 4개의 국제공항과 7개의 국내선 공항이 별도로 있으며, 2개의 주요 항만과 53개의 중소항만이 있다. 특히 자왈할랄 네루 항구는 인도에서 컨테이너 물동량이 가장 큰 항구이다.

○ 라자스탄(Rajasthan)

- 면적: 342,239km²
- 인구: 6,850만 명
- 주도: 자이푸르(Jaipur)
- 주요 지역: 자동차 클러스터 비와디(Bhiwadi)는 8,000에이커에 달한다.
- 주요 산업: 광산 및 광업분야로 138개의 주요 광물 광산, 15,136개의 소형 광물 광산, 74개의 탐사 허가, 18,249개의 채석장 허가가 부여되어 직접고용 80만 명과 250만 명 간접 고용을 제공해왔다. 건설의 경우 2022년까지 100만 채의 저렴한 주택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자이푸르, 우다이푸르, 아지메르, 코다가 주요 스마트 도시 사업지로 선정되었다.

○ 타밀 나두(Tamil Nadu)

- 면적: 130,058km²
- 인구: 7,215만 명
- 주도: 첸나이(Chennai)
- 주요 지역: 첸나이의 3개 항구와 투티코린의 1개 항구는 인도 내 가장 편리한 항구로 첸나이 컨테이너 터미널은 인도 내 가장 높은 효율성을 보인다.
- 주요 산업: 자동차 산업,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IT 및 ITeS 산업에 대한 토지, 건물 구입 시 50% 감면)
- 비고: 생명공학 정책으로 글로벌 제약사 화이자, 글로벌 화학 회사 다우 케미컬, Shasun 화학 등의 투자가 활발한 지역이다.

○ 우타르프라데시(Uttar Pradesh)

- 면적: 240,928km²
- 인구: 1억 9,980만 명
- 주도: 러크나우(Lucknow)
- 주요 지역: 노이다(Noida), 그레이터 노이다(Greater Noida) 지역은 모바일 및 가전 기업들의 제조 공장이 밀집되어 있음.
- 주요 산업: 인도 관광에서 가장 유명한 타지마할이 소재하여 최근 노이다-그레이터 노이다-아그라(Noida-Greater Noida-Agra) 노선의

야무나(Yamuna) 고속도로(165km)를 개통하며 관광산업이 발달했다. 특히, 노이다와 그레이트 노이다는 인도 북부의 최대 제조공장 밀집 지역으로 이 지역은 인도 IT 기업들의 본사와 지점이 많이 있으며, 농업 및 원료 제조 기업의 공장들이 밀집해 있다. 대표적으로 TATA, IBM, 인도 설탕 제조업체의 공장이 위치한다.

- 비교: 한국 기업으로는 2018년 완공된 삼성전자 노이다 공장이 대표적이며, 관련 1, 2차 벤더 공장들도 밀집해있다. 특히 LG전자, 동국제강, 세아제강, 삼화페인트 등 여러 한국 제조업체의 공장이 설립되었으며, 최근 중국 전자·모바일 제조업체들이 상당수 진출한 지역이다. 2019년에는 중국 유명 가전업체 하이얼(Haier)은 그레이트 노이다 지역에 4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여 제2생산단지를 조성했다.

2. 외국인직접투자

가. 대내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 대내 외국인직접투자 현황표

(금액 : 백만\$)

2017	2018	2019	2020	2021
39903.8	42156.2	50558.3	64072.2	44735.1

<자료원 : UNCTAD Stat>

나. 대외 직접투자 현황

- 대외 직접투자 현황표

(금액 : 백만\$)

2017	2018	2019	2020	2021
11140.5	11446.9	13144.1	11109.2	15522.3

<자료원 : UNCTAD Stat>

3. 한국기업 투자

가. 한국기업 투자 통계

- 한국기업투자 통계표

(단위 : 건, 개 천 달러)

연도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2019	452	129	685,575	534	452,580
2020	308	75	588,368	341	624,829
2021	245	56	352,085	268	335,311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나. 업종별 투자 동향

- 업종별 투자 동향표

- 2019년 업종별 투자 현황

(단위 : 건, 개 천 달러)

업종대분류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농업, 임업 및 어업	1	0	650	2	1,650
제조업	251	68	417,889	314	362,595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2	0	5,215	3	5,215
건설업	20	6	13,085	16	13,058
도매 및 소매업	57	20	23,971	63	22,352
운수 및 창고업	20	4	15,597	22	14,505
숙박 및 음식점업	14	4	755	16	767
정보통신업	33	11	30,591	35	26,986
부동산업	1	1	171,500	3	20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36	10	2,740	39	2,688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 업	6	1	2,433	10	1,429
교육 서비스업	8	3	933	8	916
예술, 스포츠 및 여 가관련 서비스업	3	1	216	3	216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 2020년 업종별 투자 현황

(단위 : 건, 개 천 달러)

업종대분류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농업, 임업 및 어업	1	0	200	1	200
광업	3	1	61	3	61
제조업	169	37	411,161	197	380,009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1	1	11,245	1	11,137
수도, 하수 및 폐기 물 처리, 원료 재생 업	1	0	970	1	970
건설업	20	5	17,433	15	16,246
도매 및 소매업	35	12	9,321	37	7,135
운수 및 창고업	8	4	395	10	1,190
숙박 및 음식점업	7	1	355	7	355
정보통신업	28	5	36,120	32	27,617
금융 및 보험업	2	1	97,620	1	12,262
부동산업	0	1	0	5	165,40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3	4	1,618	24	1,599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 업	6	2	1,247	3	21
교육 서비스업	1	0	440	1	440
예술, 스포츠 및 여 가관련 서비스업	2	1	141	2	141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	0	41	1	41
--------------------------	---	---	----	---	----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 2021년 업종별 투자 현황

(단위 : 건, 개 천 달러)

업종대분류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농업, 임업 및 어업	2	1	354	2	354
제조업	149	22	201,846	168	196,491
건설업	6	2	1,727	4	727
도매 및 소매업	32	16	59,914	36	51,331
운수 및 창고업	2	0	151	1	150
숙박 및 음식점업	5	1	732	4	434
정보통신업	16	6	60,751	19	60,031
부동산업	0	0	0	2	184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0	4	603	21	602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7	3	24,903	5	23,903
교육 서비스업	6	1	1,104	6	1,104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다. 한국기업 진출현황

○ 기아자동차

진출연도	2018
진출형태	판매, 생산법인
업종	자동차, 자동차 부품
취급분야	자동차, 자동차 부품
모기업명	기아자동차

○ 동국제강 인도법인

진출연도	2011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금속
취급분야	냉연강판
모기업명	동국제강

○ 산다-한성 테크놀로지

진출연도	2014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고무, 플라스틱, 금속
취급분야	플라스틱 사출 및 프레스 가공
모기업명	한성IMP

○ 성지트레이닝

진출연도	2016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의복, 잡화류
취급분야	성인의류 및 아동복
모기업명	없음

○ 시방제과점

진출연도	2010
진출형태	없음
업종	없음
취급분야	제빵업
모기업명	없음

○ 씨제이 다슬 로지스틱스

진출연도	2017
진출형태	서비스법인

업종	없음
취급분야	물류서비스
모기업명	씨제이 대한통운

○ 유아이엘

진출연도	2017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전기.전자.정밀기기.부품
취급분야	휴대폰 부품류(소물, 악세서리류)
모기업명	없음

○ 이안 인디아

진출연도	2014
진출형태	생산, 서비스
업종	전기.전자.정밀기기.부품
취급분야	휴대폰 케이스 조립 및 불량 검수
모기업명	(주) 이안전자

○ 이에스텍

진출연도	2018
진출형태	연락사무소
업종	기계.장비
취급분야	없음
모기업명	(주)이에스테크인터내셔널

○ 인텍전기전자(주)

진출연도	2015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기계장비, 전기.전자.정밀기기.부품
취급분야	없음

모기업명	없음
------	----

○ 제페토 인디아

진출연도	2017
진출형태	서비스법인
업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
취급분야	PC 게임 및 모바일 게임
모기업명	(주)제페토

○ (주)네오바이오텍

진출연도	2018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기타 제품 제조업
취급분야	임플란트기기
모기업명	없음

○ (주)삼양감속기

진출연도	2017
진출형태	연락사무소
업종	기계.장비
취급분야	기어 및 동력장치 제조
모기업명	없음

○ 주식회사 태화기업 인도법인

진출연도	2004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전기.전자.정밀기기.부품
취급분야	1. 냉장고 컴프레셔용: 모터 코어타발, 열처리, 모터조립, 하우징. 2. 자동차: 모터 코어타발, 하우징 3. 실링팬, 환풍기 팬 완제품
모기업명	주식회사 태화기업

○ ㈜아이델

진출연도	2017
진출형태	연락사무소
업종	전기.전자.정밀기기.부품, 기타 제품 제조업
취급분야	합성수지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
모기업명	없음

○ 중부 에스캠 인도법인

진출연도	2015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화학.의약
취급분야	페인트
모기업명	중부 에스캠

○ 케이엠티씨 인디아

진출연도	2013
진출형태	서비스법인
업종	없음
취급분야	해상운송 서비스
모기업명	고려해운㈜

○ 김신 파인 푸드 (주)

진출연도	2007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식료품
취급분야	식품 제조 및 유통
모기업명	없음

○ 한국야금(주)

진출연도	2011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기타 제품 제조업
취급분야	절삭공구
모기업명	한국야금

○ 히달고 로지스틱스

진출연도	2008
진출형태	서비스법인
업종	없음
취급분야	없음
모기업명	덕양유엘씨(주)

○ GS건설

진출연도	2006
진출형태	서비스법인
업종	기타 서비스업
취급분야	설계도면 작성 및 제공 서비스
모기업명	GS건설(주)

○ GS글로벌뉴델리지사

진출연도	1979
진출형태	연락사무소
업종	및 기타 서비스업
취급분야	수출입/유통업
모기업명	GS글로벌(주)

○ KC코트렐

진출연도	2008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기계,장비
취급분야	대기오염방지시설
모기업명	KC그린홀딩스

○ LG전자인도생산법인

진출연도	1997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전기, 전자 부품
취급분야	전기, 전자
모기업명	LG전자㈜

○ LG전자인도판매법인

진출연도	1997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
취급분야	전기, 전자
모기업명	LG전자㈜

○ LG하우시스인도법인

진출연도	2010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고무, 플라스틱
취급분야	건축용 내외장재 및 자동차 부품
모기업명	LG하우시스㈜

○ Tv18 Homeshopping Network Limited (Homeshnop18)

진출연도	2010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없음
취급분야	없음
모기업명	GS홈쇼핑

○ 기가테라

진출연도	2015
------	------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없음
취급분야	LED
모기업명	(주)기가테라

○ 기업은행

진출연도	2015
진출형태	지점
업종	없음
취급분야	금융 서비스업
모기업명	IBK기업은행(주)

○ 까마인디아

진출연도	2000
진출형태	서비스법인
업종	부동산, 컨설팅 서비스업
취급분야	무역컨설팅, 회사설립컨설팅
모기업명	KAMAINDIA Pvt., Ltd.

○ 나진무역

진출연도	2005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기타 제품 제조업
취급분야	연마제
모기업명	현지 단독진출

○ 농협은행

진출연도	2016
진출형태	연락사무소
업종	없음

취급분야	금융서비스 제공
모기업명	NH농협

○ 대교인도법인

진출연도	2015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교육
취급분야	Learning Center 방문형 모델 사업 및 프랜차이즈를 개발
모기업명	대교(주)

○ 동광무역

진출연도	2003
진출형태	서비스법인
업종	부동산
취급분야	델리 NCR지역 부동산
모기업명	현지 단독진출

○ 동진전자

진출연도	2007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전기, 전자, 정밀기기, 부품
취급분야	PCBA
모기업명	동진테크(주)

○ 두산파워시스템즈인디아

진출연도	1994
진출형태	독립법인
업종	기계, 장비
취급분야	발전플랜트 건설, 발전용 보일러 생산 및 발전소 운영 관련 서비스
모기업명	두산중공업(주)

○ 롯데 글로벌 로지스틱스 인디아

진출연도	2007
진출형태	서비스법인
업종	없음
취급분야	물류,통관
모기업명	롯데 글로벌 로지스

○ 바텍인디아

진출연도	2014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전기,전자,정밀기기,부품
취급분야	치과용 엑스레이 진단장비
모기업명	바텍

○ 범한판토스인도법인

진출연도	2003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없음
취급분야	해운, 항공 화물 주선업, 창고, 운송업
모기업명	범한판토스(주)

○ 브릭스인디아(주)뉴델리

진출연도	2009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없음
취급분야	식료품, 유통
모기업명	현지 단독진출

○ 삼성중공업

진출연도	2007
진출형태	서비스법인

업종	전문, 과학 및 기술
취급분야	선박 도면 설계
모기업명	삼성중공업(주)

○ 삼성전자 인도법인

진출연도	1995
진출형태	법인
업종	전기, 전자, 정밀기기 부품
취급분야	휴대폰, 가전제품
모기업명	삼성전자(주)

○ 삼성화재

진출연도	2009
진출형태	연락사무소
업종	없음
취급분야	보험 정보 조사업
모기업명	삼성화재(주)

○ 삼화인디아에너지세이빙스

진출연도	2009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없음
취급분야	전자부품(콘덴서)판매
모기업명	삼화콘덴서그룹(주)

○ 세라젬

진출연도	2005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기타 제품 제조업
취급분야	마사지기기

모기업명	세라젬(주)
------	--------

○ 신라인프라텍

진출연도	2013
진출형태	서비스판매
업종	식료품, 전기, 전자, 정밀기기, 부품
취급분야	광통신 부품
모기업명	현지 단독진출

○ 신한은행뉴델리지사

진출연도	2006
진출형태	지점
업종	없음
취급분야	수신(예금), 여신(대출), 외환(수출입 등), 보험
모기업명	신한은행(주)

○ 쌍용건설뉴델리지사

진출연도	1998
진출형태	연락사무소
업종	없음
취급분야	토목 및 인프라 건설
모기업명	쌍용건설(주)

○ 에스디로직스인도법인

진출연도	2009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전기, 전자, 정밀기기, 부품
취급분야	냉장고 컴프레서 용 부품정밀가공
모기업명	에스디 이엔티

○ SK 루브리컨츠 인도법인

진출연도	2011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기타 제품 제조업
취급분야	윤활기유, 윤활유, 그리스, 석유류, 제조, 도소매/부동산(점포,토지) 임대 등 윤활유 및 그리스 제조업체
모기업명	SK루브리컨츠㈜

○ 에이에이스튜디오뉴델리

진출연도	2005
진출형태	서비스법인
업종	없음
취급분야	건축설계, 인테리어탄키
모기업명	현지 단독진출

○ 에치엠디지털인디아

진출연도	2015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전기, 전자, 정밀기기, 부품
취급분야	물 수질 계측기: TDS, PH, ORP 측정 계측기 / 당도계, 염도계, 타이머 생산, 판매
모기업명	에치엠디지털㈜

○ 엘에스전선

진출연도	2007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전기, 전자, 정밀기기, 부품
취급분야	전력용 초고압 및 배전 케이블 및 통신용 케이블 생산 및 시공
모기업명	LS전선㈜

○ 이니스프리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화학, 의학
취급분야	화장품/생활용품 제조

모기업명	아모레퍼시픽(주)
------	-----------

○ 이투스교육

진출연도	2012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교육
취급분야	공대/의대 입시 시험 대비 교육영상 서비스
모기업명	이투스교육

○ 제일인디아

진출연도	1998
진출형태	서비스법인
업종	기타 서비스업
취급분야	광고 기획 및 제작(ATL, Digital), 기업 프로모션 행사 기획 및 실행, 리테일 제작물 제작 및 설치(매장 구축, 집기 제작, 간판, 브랜딩)
모기업명	제일기획(주)

○ (주) 아이센스 인도법인

진출연도	2015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없음
취급분야	혈당측정기, 및 진단제품(한국본사생산)의 인도지역 수입, 판매법인
모기업명	(주) 아이센스

○ 만도소프트텍 인디아

진출연도	1997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자동차, 자동차부품
취급분야	자동차 부품: Steering, Brake, Suspension
모기업명	(주) 만도

○ 케이씨코트렐(주)프로젝트오피스

진출연도	2008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기계, 장비
취급분야	대기오염방지시설(집진기, FGD, SCR etc.)
모기업명	KC그린홀딩스

○ 코인도트레이딩

진출연도	2004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없음
취급분야	의료기기, 화장품 수입 후 유통 및 판매 진행
모기업명	현지 단독진출

○ 포스코건설인도법인

진출연도	2007
진출형태	서비스법인
업종	없음
취급분야	토목, 건축 서비스업
모기업명	포스코건설(주)

○ 포스코대우 인도법인

진출연도	2007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없음
취급분야	철강, 화학, 석유가스, 비료, 식량, 비철, 기계, 자동차부품 등
모기업명	포스코대우

○ 포스코인디아

진출연도	2005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금속
취급분야	제철소 건설 및 철강재 생산, 철강 전품목
모기업명	포스코(주)

○ 포커스텍

진출연도	2007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전자, 정밀기기, 부품, 자동차, 자동차부품
취급분야	2륜, 4륜 자동차 관련 부품조립
모기업명	현지단독진출

○ 하나로로지스틱스

진출연도	2015
진출형태	서비스법인
업종	없음
취급분야	운송
모기업명	하나로TNS(주)

○ 한국건설

진출연도	2010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없음
취급분야	건설, 건축, 인테리어, 현지인 인력공급, 스크랩, 스크린골프
모기업명	현지 단독진출

○ 한국관광공사

진출연도	2008
진출형태	연락사무소
업종	공공행정
취급분야	관광정보제공
모기업명	한국관광공사

○ 한국무역보험공사

진출연도	2008
진출형태	연락사무소
업종	없음
취급분야	보험 관련 연구
모기업명	한국무역보험공사

○ 한국무역협회뉴델리지부

진출연도	2014
진출형태	지부
업종	협회 및 단체
취급분야	없음
모기업명	한국무역협회

○ 한국수출입은행

진출연도	1994
진출형태	연락사무소
업종	없음
취급분야	공적수출신용(Official Export Credit)
모기업명	한국수출입은행

○ 한국철도시설공단

진출연도	2016
진출형태	연락사무소
업종	기타 서미스업
취급분야	인도 렉나우 메트로 기술용역 General Consultancy
모기업명	없음

○ 한림정공 주식회사

진출연도	2011
------	------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없음
취급분야	없음
모기업명	한림정공(주)

○ 한솔로지스틱스 인도법인

진출연도	2008
진출형태	서비스법인
업종	기타 서비스업
취급분야	창고운영 및 배송, 포워딩, 수출입통관
모기업명	한솔로지스틱스

○ 한전KPS구르가온

진출연도	1998
진출형태	지점
업종	전시, 가스, 증기 및 수도
취급분야	전력
모기업명	한전KPS

○ 현대로템

진출연도	2001
진출형태	지점
업종	기타 제품 제조업
취급분야	철도차량
모기업명	현대로템

○ 현대자동차인도법인

진출연도	1996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자동차, 자동차부품

취급분야	크레타, i-20, 1-10등
모기업명	현대자동차(주)

○ 현대제철

진출연도	2011
진출형태	연락사무소
업종	없음
취급분야	철강제품(열연, 냉연, 후판, 봉형강, 강관 외)
모기업명	현대제철(주)

○ 현대종합상사뉴델리지사

진출연도	1984
진출형태	지점
업종	없음
취급분야	무역
모기업명	현대종합상사(주)

○ 현대캐피탈인도법인

진출연도	2012
진출형태	서비스법인
업종	기타 서비스업
취급분야	자동차 금융 컨설팅 서비스
모기업명	현대캐피탈(주)

○ 효성

진출연도	2018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섬유, 피혁
취급분야	나일론 원사, 폴리에스터 원사, 스판덱스/섬유, 의류
모기업명	효성TNC

○ 롯데첨단소재 인도 지점

진출연도	2013
진출형태	지점
업종	화학, 의약
취급분야	Plastic Resin Material(ABS, PC)
모기업명	롯데첨단소재

○ 동부인디아

진출연도	2011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없음
취급분야	냉연강판, 용융아연도강판, 석도강판, 칼라강판
모기업명	동부제철㈜

○ 누가메디칼인디아

진출연도	2008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없음
취급분야	의료기기(온열기)
모기업명	누가베스트

○ 궁

진출연도	2004
진출형태	서비스법인
업종	숙박 및 음식점
취급분야	음식
모기업명	현지 단독진출

○ LG생명과학

진출연도	2002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생명공학
취급분야	의약품
모기업명	LG생명과학(주)

◦ LG화학

진출연도	2013
진출형태	서비스법인
업종	기타 서비스업
취급분야	본사 인도 영업 지원
모기업명	LG화학(주)

◦ 삼성엔지니어링 IndiaPvt.,Ltd.

진출연도	2006
진출형태	서비스법인
업종	없음
취급분야	설계, 플랜트건설
모기업명	삼성엔지니어링(주)

◦ 대한항공

진출연도	2016
진출형태	연락사무소
업종	없음
취급분야	항공
모기업명	대한항공(주)

◦ 두원오토모티브시스템인디아

진출연도	2007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자동차, 자동차부품
취급분야	자동차부품
모기업명	두원공조(주)

○ 디어포스-카이코디어

진출연도	2005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비금속광물
취급분야	연마제품(산업소모품), 멤브레인(수처리소모품)
모기업명	DEERFOS

○ 삼성물산 상사부분 인도법인

진출연도	1980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없음
취급분야	전기, 전자, 정밀기기, 부품 제조업
모기업명	삼성물산(주)

○ 삼성물산 건설부문 인도법인

진출연도	2007
진출형태	서비스법인
업종	없음
취급분야	빌딩, 지하철, 댐, 항만 등
모기업명	삼성물산(주)

○ 삼성SDS 인도법인

진출연도	2009
진출형태	서비스법인
업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
취급분야	IT
모기업명	삼성SDS

○ 씨이비엔지니어링

진출연도	2007
------	------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자동차, 자동차부품
취급분야	CNG 및 LPG 차량 개조 및 서비스
모기업명	KNC-Korea(주)

○ 에스폼

진출연도	2012
진출형태	지점
업종	없음
취급분야	건축자재
모기업명	에스폼(주)

○ 오토닉스

진출연도	2005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전기, 전자, 정밀기기, 부품
취급분야	기계 센서 및 컨트롤러
모기업명	현지단독진출

○ 이노션

진출연도	2005
진출형태	서비스법인
업종	전문, 과학 및 기술
취급분야	광고대행
모기업명	이노션(주)

○ 이랜택인도법인

진출연도	2006
진출형태	없음
업종	전기, 전자, 정밀기기, 부품
취급분야	모바일폰 부품(케이스, 충전기, 배터리 등)

모기업명	이랜텍(주)
------	--------

○ 조이로지스틱스

진출연도	2008
진출형태	서비스법인
업종	없음
취급분야	물류, 운송, 통관
모기업명	현지 단독진출

○ 카스(주)

진출연도	1999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전기, 전자, 정밀기기, 부품
취급분야	전자저울
모기업명	카스(주)

○ 푸른기술인도법인

진출연도	2012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전기, 전자, 정밀기기, 부품
취급분야	금융자동화기기, 출입통제기기
모기업명	푸른기술

○ 플렉시언비즈니스엔지니어링

진출연도	2008
진출형태	서비스법인
업종	전문, 과학 및 기술
취급분야	텔레마케팅, 컨설팅 에이전시, 소프트웨어개발 아웃소싱
모기업명	현지 단독진출

○ 한화석유화학뉴델리지사

진출연도	1987
진출형태	연락사무소
업종	없음
취급분야	석유화학
모기업명	한화케미칼(주)

○ 허테크노엔지니어링

진출연도	2006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자동차, 자동차부품
취급분야	플라스틱 에칭
모기업명	현지 단독진출

○ 미래에셋자산운용인도

진출연도	2006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금융, 보험
취급분야	보험
모기업명	미래에셋자산운용

○ 삼성물산

진출연도	1984
진출형태	서비스법인
업종	도매, 소매업
모기업명	삼성물산(주)

○ 한국선급

진출연도	2009
진출형태	연락사무소
업종	기타
모기업명	한국선급(사)

○ 이랜드 패션 인디아

진출연도	2011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의복, 잡화류
모기업명	이랜드 월드(주)

○ 에스케이 네트워크스

진출연도	2007
진출형태	연락사무소
업종	도매, 소매업
모기업명	에스케이 네트워크스

○ 에스티엑스

진출형태	연락사무소
업종	기타
모기업명	STX(주)

○ 무브맥스 시스템 로지스틱스

진출연도	2009
진출형태	서비스법인
업종	서비스업
취급분야	기타 서비스업
모기업명	무브맥스시스템

○ 동아에스티(주)

진출연도	2011
진출형태	연락사무소
업종	도매, 소매업
모기업명	동아쏘시오홀딩스(주)

○ 현대자동차몸바이지사

진출연도	1998
진출형태	연락사무소
업종	도매, 소매업
모기업명	현대자동차(주)

○ 유코카캐리어스 인디아

진출연도	2003
진출형태	연락사무소
업종	기타
모기업명	유코카캐리어스(주)

○ 농우씨드 인디아

진출연도	2017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농업, 임업, 어업
모기업명	농우바이오

○ 대흥인디아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자동차, 자동차부품
모기업명	대흥알앤티

○ 두루코퍼레이션

진출연도	2017
진출형태	서비스법인
업종	서비스업
취급분야	사업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 미라벨

진출연도	2017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도매, 소매업
취급분야	화장품

○ 이랜드 어패럴

진출연도	2011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섬유, 피혁
모기업명	(주)이랜드월드

○ 인트라고 엔터프라이즈 인디아

진출연도	2006
진출형태	판매법인
취급분야	도매, 소매업

○ 창원정공인디아법인

진출연도	2011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기계, 장비
모기업명	창원정공(주)

○ 미주정밀

진출연도	2010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도매, 소매업
모기업명	미주정밀(주)

○ 코콘인디아

진출연도	2005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기계, 장비
모기업명	한국콘베어(주)

○ 현대 글로벌스

진출연도	2006
진출형태	서비스법인
업종	운수업
모기업명	현대글로벌스(주)

○ 현대 위아 인도법인

진출연도	2010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자동차, 자동차부품
모기업명	현대위아(주)

○ 현대모비스

진출연도	2005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자동차, 자동차부품
모기업명	현대모비스(주)

○ 현대모터인디아

진출연도	1996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자동차, 자동차부품
모기업명	현대자동차(주)

○ 현대해상화재보험

진출연도	2006
진출형태	연락사무소
업종	기타
모기업명	현대해상화재보험(주)

○ 화신인디아

진출연도	2002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자동차, 자동차부품
모기업명	화신(주)

○ 정인

진출연도	2008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자동차, 자동차부품
모기업명	지맥스(주)

○ 포레시아인디아-배기사업부

진출연도	2009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자동차, 자동차부품
모기업명	포레시아코리아(주)

○ 한일튜브 인디아

진출연도	2007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자동차, 자동차부품
모기업명	한일튜브

○ 코모스

진출연도	2007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자동차, 자동차부품
모기업명	SECO KOMOS(주)

○ 한일리어

진출연도	1997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자동차, 자동차부품
모기업명	서연이화(주)

○ 현대하이스코

진출연도	2006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자동차, 자동차부품
모기업명	현대제철(주)

○ 슈피겐코리아

진출연도	2018
진출형태	판매, 생산법인
업종	모바일 악세서리

취급분야	모바일 약세사리
모기업명	슈피겐코리아

○ STRAFFIC

진출연도	2018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기차, 전철 부품
모기업명	STRAFFIC

○ TAIXIN 프린팅

진출연도	2018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산업용지, 인쇄용지
모기업명	고문당인쇄

○ 센추리

진출연도	2018
진출형태	판매, 생산법인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냉동, 냉열 장비
모기업명	센추리

○ 오리온

진출연도	2018
진출형태	판매, 생산법인
업종	식품 제조업
취급분야	식료품 제조
모기업명	오리온

○ 국민은행

진출연도	2018
진출형태	지점
업종	금융업
취급분야	금융업
모기업명	국민은행

○ 국도화학

진출연도	2019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화학 제조업
취급분야	화학
모기업명	국도화학

○ India SeAH Precision Metal Pvt.Ltd

진출연도	2019
진출형태	비공개주식회사
업종	철강
취급분야	철강
모기업명	세아제강

○ KH VATEC INDIA

진출연도	2019
진출형태	비공개주식회사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모바일 부품 제조
모기업명	KH 바텍

○ FINETECHWW GLOBAL INDIA PRIVATE LIMITED

진출연도	2019
진출형태	비공개주식회사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금형제작
모기업명	파인테크

◦ SO INDIA CONSTRUCTION MANAGEMENT PRIVATE LIMITED

진출연도	2019
진출형태	비공개주식회사
업종	건설업
취급분야	건축설계 및 사무소
모기업명	삼우씨엠 건축사사무소

◦ YOU NEED CONTENTS PRIVATE LIMITED

진출연도	2021
진출형태	비공개주식회사
업종	애니메이션 제작사
취급분야	애니메이션, 캐릭터 제작
모기업명	유니드 캐릭터

◦ Cafe24 India Private Limited

진출연도	2021
진출형태	비공개주식회사
업종	서비스
취급분야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
모기업명	카페24

<자료원 : KOTRA 뉴델리무역관 자체조사>

4. 투자진출방식

가. 투자진출 형태

법인

1) 현지법인

현지법인은 인도의 회사법(companies Act)에 따라 인도 기업등록청(Registrar Of Companies)을 통해 설립되며, 사전 승인을 거쳐 인도 국내기업으로 인도기업과 동일한 법적지위를 지닌다. 설립소요기간은 2~3개월 정도 소요된다.

- 단독 투자자회사(Wholly owned subsidiary)

현재 인도에서는 현지법인 설립을 고려하는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대부분의 제조업은 물론, 인프라 서비스업에 대해서도 투자 개방의 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어 원칙적으로 투자제한 업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이 100% 허용된다.

- 합작투자(Joint Venture)

현지 법인 설립을 결정한 후 100% 직접투자가 가능한 업종이라 하더라도, 투자를 고려하는 기업별 사업 여건 등 경우에 따라서는 합작투자를 고려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다. 보편적으로 해외 진출에 있어 합작투자보다는 단독투자의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인도의 경우에는 오히려 반대라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종교 및 인종의 다양성과 문화의 이질성 등 우리나라와 다른 요소가 상대적으로 많은 나라가 인도로, 오랜 신뢰 관계를 구축하여 파트너와 협조 관계가 원만하다는 확인을 바탕으로 합작을 해도 진출 후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빈번하다. 그러므로 51% 이상의 지분을 확보한 경우라도 실제 의사 결정에 있어 파트너와의 갈등으로 결정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경우가 흔하다. 자본재, 플랜트, 기술 등을 좋은 조건으로 판매하는 경우가 아닌 일반적인 투자 진출의 경우, 이러한 합작투자의 문제점을 한번 더 고려해보아야 한다. 단독투자를 희망한다 하더라도, FDI 규제에 따라 의무적으로 합작투자만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인도 자국 산업 보호 육성을 위해 투자 지분을 제한하고 있는 업종으로의 진출이 그러한 경우이다.

지사

1) 지사(Branch Office)

지사는 말 그대로 외국기업의 인도 지사로서의 지위로, 기본적으로 외국기업이라 할 수 있다. 인도는 외국기업과 인도기업 간 법인세율에서 외국기업에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어, 지사 또한 당연히 법인세에 있어 외국기업에 적용되는 세율(40%)을 적용받는다. 지사는 법인이 아닌 인도에 있는 외국기업으로 간주된다. 외국기업 지사의 활동은 인도 중앙은행에 의해 제한되며 지사의 역할은 본사를 대신한 구매 및 판매 에이전트 활동, 조사 활동, 수출입 업무의 수행, 인도기업과 기술 및 자본 협력 추진, 전문 컨설팅 서비스 제공, 소프트웨어의 개발과 정보 기술 서비스 제공, 본사에서 공급한 제품에 대한 기술 지원으로 한정된다. 지사는 인도에서 실질적인 비즈니스를 수행할 수 있으며, 납세의 의무를 진다. 그러나 지사 사무소는 물품의 제조 과정에 참여할 수 없다.

인도에 지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인도 중앙은행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서 지사 설립을 신청하는 비거주기업은 본국에서 직전 5년 동안의 수익 창출 실적을 보유해야 하며, 순자산은 10만 USD 이상 또는 그에 상당해야 한다. 지사는 세금을 납부한 후 발생한 이익을 인도 은행을 통해 송금할 수 있으나 사전에 인도 중앙 은행의 외국환 관리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한편 인도에 지사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인도 기업법에 따라 규정된 서류를 사무소가 설치될 주정부의 기업 등록청(ROC)과 뉴델리에 있는 기업 등록청 본청에 각각 제출해야 하며, 지사가 등록된 이후 매년 회계서류를 기업 등록청에 제출해야 한다.

연락사무소

1) 연락사무소(Liaison 또는 Representative Office)

외국기업들의 경우 인도와의 비즈니스를 개시하기 위하여 초기에는 연락사무소를 개설하는 것이 보통이나 인도에서 직접 상거래를 수행할 수는 없다. 연락사무소는 사업 기회의 발굴이나 제품 홍보 등을 위하여 개설되며 인도에서 일체의 상업적 활동을 할 수 없으므로 매출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연락사무소는 납세 의무를 지지 않는다. 또한 연락사무소는 커미션을 받거나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를 받아서는 안 된다. 사무실에서 집행하는 모든 비용은 해외에 있는 본사에서 송금되어야 하며 연락사무실을 철수할 때에도 인도로부터의 자금 인출은 일체 금지된다. 인도에서의 연락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을 규정하고 있는 외국환관리법(Foreign Exchange Management Act, FEMA)은 인도중앙은행은 연락사무소 설립을 승인하고, 승인 기간은 최초 설립 후 3년으로 연장할 수 있다. 기업등록청(ROC)에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회사 정관, 재무제표 그리고 인도에 사무실 설립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인도 기업부의 회계규정의 완화로 인하여 연락사무소는 전체 재무제표를 제출할 필요 없이 인도 회사법에서 명시한 손익 계산서만 제출하면 된다. 연락사무소의 형태는 기본적으로 사업 및 활동의 범위에 따라 정해진다.

연락사무소와 지사를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은 지사의 경우 영업 행위가 가능한 반면 연락사무소는 단순 연락 업무 또는 시장조사 등의 업무만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이다. 현지법인은 통상 진출 국가의 국내기업으로 등기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국내 법인과 동일한 권리를 누리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현지에서 직접 생산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연히 현지 법인 설립이 전제되어야 하며, 100% 외국인 직접투자 기업이라 할지라도 인도 국내 기업으로 간주된다. 국가에 따라서 차이는 있으나 인도의 경우 영업상의 측면이나 조세부담, 기타 국내법 및 제도의 적용에 있어 지사와 현지법인이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현지법인으로 등기하는 경우 현지법인의 활동에 관계된 채권자, 노동자 등 이해 당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사에 비해서 여러 가지 제한이 가해진다. 그러한 제한이 주어지는 만큼 법인은 거래, 자금 조달 등에 있어 지사에 비해 우월한 지위를 갖게 된다. 한편 인도정부는 지사는 제조 활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조업 투자 진출의 경우 현지법인 설립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나. 투자진출시 유의사항

투자진출시 유의사항	<p>1) 개인정보보호법(PDPB) 개정안 다국적 컨설팅 기관인 A.T.Kearney가 발표한 '외국인직접투자 신뢰지수(Foreign Direct Investment Confidence Index)에서 인도는 2017년 7위, 2018년도 11위, 2019년 16위를 기록하였고, 이후 2020~2021년 2년 연속으로 상위 25위권에 안착하지 못하였다. 이번 결과는 인도 의회에 상정된 '개인정보보호법(PDPB)' 개정안으로 인해 외국인직접투자 신뢰지수가 떨어진 것으로 예측된다. 해당 법안은 기업들이 사전동의를 통해 수집한 사용자 정보의 비개인화 데이터를 인도정부에도 공유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법률 실행 시 인도 정부는 별도의 사전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개인정보와 관심사항 등을 쉽게 확보할 수 있다. 이를 규제 없이 인도 정부가 사용할 경우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인도 정부가 '중요 정보'로 정한 데이터는 무조건 인도에서 보관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인도 진출 또는 투자한 외국기업은 추가 서비스 운영에 따른 운영비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p> <p>2) 투자진출 형태별 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합작투자) : 보편적으로 해외 진출에 있어 합작투자보다는 단독 투자의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인도의 경우에는 오히려 반대라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종교, 인종 및 문화의 다양성 등 우리나라와 이질적인 요소가 많아, 오랜 신뢰 관계를 구축한 파트너와 합작하여 진출한 이후에도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빈번하다. 그래서 51% 이상의 지분을 확보한 경우라도 실제 의사 결정에 있어 파트너와의 갈등으로 결정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한다. 자본재, 플랜트, 기술 등을 좋은 조건으로 판매하는 경우가 아닌 일반적인 투자 진출의 경우, 이러한 합작투자의 문제점을 한번 더 고려해보아야 한다. 단독 투자를 희망한다 하더라도, FDI 규제에 따라 의무적으로 합작투자만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인도 자국 산업 보호 육성을 위해 투자 지분을 제한하고 있는 업종(보험, 광산, 전력 거래, 금융, 방위산업 등)으로의 진출이 그러한 경우이다. ○ 해외지사 : 지사는 인도 내에서 제조업을 할 수 없기에 기업이 제조 과정에 참여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반드시 내국 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 또한, 부동산 취득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기에 필요하다면 별도의 허가를 취득해야 하며, 이렇게 취득한 부동산은 제3자에게 임대하여 수익을 얻을 수 없다. 지사 설립 자격 조건으로 본국에서 직전 5년 동안의 수익 창출 실적을 보유해야 하며, 순자산은 10만 USD 이상 또는 그에 상응해야 하므로 지사 설립 전 기업 활동 범위, 설립 조건 충족, 부동산 취득 필요 유무 등을 확인해야 한다. <p>3) 높은 세율 인도에서의 법인세율, 소득세율, 관세율은 매우 높은 수준이다. 2019년 9월 인도 재무장관은 기존 법인세율(30%)을 연 매출 규모와 상관없이 22%로 기본세율을 인하하여 법인세 완화를 실시하였다. 특히, 주식 회사의 경우에는 2019년 10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 사이에 제조 시설을 설립한 경우 15%의 기본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인도 관계 당국에서는 한국에서 받은 급여와 인도에서 받고 있는 각종 지원(주택 임차 등)에 대해서도 높은 세율로 과세하고 있어 합법적으로 세금을 절약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필수적이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세율: 인도법인(22%), 외국기업(40%), 외국 지점의 경우 1천만 루피 이상 소득 시(42.024%), 1천만 루피 이하 소득 시(41.2%) - 소득세율: 30.9%(대부분의 경우) - 관세율: 약 22%(일반 품목의 경우) - 추가부담금: 2%(외국기업에만 해당) <p>한편 높은 세율 이외에도 복잡한 조세체계 및 납부 방식, 세금 환급의 어려움, 불필요한 행정 처리, 빈번한 세법 및 관행 변경, 조세 당국의 고압적 자세 등이 애로사항으로 꼽히고 있다.</p> <p>4) 규제 및 불투명한 행정 인도에서 카스트 제도는 법적으로 폐지됐지만 현실에서는 엄연히 존재하고 있으며 개인과 사회 현상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실제로 카스트와 얽힌 사회 문제나 갈등은 인도 전체의 사회통합이나 인도가 하나의 목표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여러 종교, 인종, 언어가 혼합되어 있다 보니 일상적인 행정 처리에 있어 비효율성이 큰 편이다. 인도에서 기업 활동을 합법적으로 하려면 시간의 8%를 대정부 접촉 업무에 소비하고, 일관성 있고 투명한 기록 체계가 없어 소송 시 법원이 요구하는 양의 증거를 제출하기 어려우며, 상사분쟁 해결에도 빨라야 5~10년은 걸린다.</p>
------------	---

다. 회사 유형

주식회사

1) 공개주식회사

공개회사란 주식의 공모를 위해 기업공개를 한 회사나, 향후 주식 공모를 할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를 말한다. 2013년 회사법 개정안으로 최소 자본금 기준은 폐지되었고, 7인 이상의 주주와 3인 이상의 이사가 있어야 하며, 이사 중 최소 1인은 회계연도 기준 인도에서 182일 이상 체류한 자(인도인, 외국인 모두)이어야 한다. 주주의 최대인원에는 제한이 없다. 공개회사는 상장회사와 비상장 회사로 나뉜다. 또한 이사회 3분의 1 이상은 사외이사로 구성해야 하며, 공개회사의 이사회에 반드시 여성 사외이사를 포함하고, 공개회사의 자회사가 비공개회사일지라도 공개회사 기준을 적용받는다.

2) 비공개주식회사

한국기업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형태인 비공개회사(Private company)는 한국에서의 회사 형태로 보면, 상장을 전제하지 않는 주식회사와 같다. 2013년 회사법 개정안으로 최소 자본금 기준은 폐지되었고, 설립 시 2인 이상의 주주와 2인 이상의 이사가 있어야 하며, 최소 1인은 회계연도 기준 인도에서 182일 이상 체류한 자(인도인, 외국인 모두)이어야 한다. 주주는 최대 200명을 넘을 수 없다. 이사 중 최소 1인은 당 회계연도 내 인도에서 182일 이상 체류한 인도인 혹은 외국인이어야 한다. 비공개회사가 공개회사에 비해 회사 운영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편임에 따라, 인도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의 대다수는 비공개회사(Private Limited)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유한책임회사

1) 파트너십(Partnership)

인도에서의 파트너십은 파트너십법(Partnership Act)에 규정되어 있다. 파트너들은 파트너십 계약으로 합의된 바에 따라 모든 수익을 공동으로 향유하며, 사업으로 발생한 모든 책임 및 각각의 파트너로서 파트너십을 통해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 공동으로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외국인은 및 비거주자는 인도 중앙은행의 사전 승인 없이는 파트너십 형태로 인도에 투자할 수 없다.

2) 유한책임파트너십(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유한책임파트너십(Limited Liability Partnership)은 인도기업으로 간주되며, 회사와 파트너십의 특성이 섞여있는 법인 형태로서 주식을 발행하지 않고, 이사회 및 주주총회가 없다. 각 파트너가 지분을 소유하고 법인을 운영하는 지배구조를 갖고 있기에 소유와 경영이 집중되어 있다. 또한, 유한책임파트너십은 법인과 다르게 인도 회사법에 적용받지 않고, 별도의 유한책임파트너십법(LLP Act)에 적용받는다. 유한책임파트너십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최소 2인 이상의 파트너가 필요하고, 이 중 1인은 인도에 거주해야 한다.

인도에는 유한책임파트너십 형태가 존재하며, 인도에서의 유한책임파트너십(Limited Liability Partnership)은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와 파트너십의 특성이 혼재되어 있는 새로운 형태이며, LLP법(LLP Act)에 의해 규정된다. LLP의 특성은 영속성을 지닌 법인이며, 파트너들을 분리하는 법인격이 있는 단체라는 점이다. 유한책임파트너십을 설립하기 위해 파트너들은 회사의 경우 정관과 유사한 설립서류(incorporation document)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서류의 제출에 따라 유한책임파트너십으로서의 법인이 설립되었음을 증명하는 법인등록증(Certificate of Incorporation)이 기업등록청(RoC)에 의해 발행된다. 외국인투자정책에 따라 100% 투자를 허용하고 있는 산업분야에서는 유한책임파트너십을 통한 외국인투자가 허용된다.

개인사업자

1인 회사의 형태는 주주가 단 1명이어도 회사를 설립할 수 있으나 주주는 회계연도 기준 인도에서 182일 이상 체류한 인도인이어야만 한다. 외국인이 회계연도 기준 182일 이상 인도에 체류한 경우에는 1인 회사의 등기이사는 될 수 있다.

라. 회계/법무법인 안내

◦ EY

전화번호	91-124-443-4850
주소	Golf View Corporate Tower B Sector 42, sector road gurugram- 122002, Haryana, India
홈페이지	http://www.ey.com
이메일	jaewon.chang@in.ey.com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장재원 변호사
비고	인도 총괄 및 뉴델리 지사 장재원 변호사(상무), 권용우 회계사

◦ KPMG

전화번호	91-124-719-1351
주소	Building No. 10, Tower B, 8th Floor, DLF Cyber City, Phase – II, Gurgaon, Haryana
홈페이지	http://www.kpmg.com
이메일	yeongminlee1@kpmg.co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이영민 회계사
비고	인도 총괄 및 벵갈루루 지사 이영민 회계사

◦ BUDDTREE

전화번호	91-124-668-8194
주소	One Horizon Centre, Level 18, Golf course road, DLF Phase V, gurugaon, Haryana, India
홈페이지	http://www.buddtree.com
이메일	you@buddtree.com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유지혜 변호사
비고	유지혜 변호사(코리안 데스크)

<자료원 : EY, KPMG, BUDDTREE>

5. 외환

가. 외환제도

외환 제도 개요

1) 인도의 외환제도 및 환율제도

(1) 외국환관리법

인도에서의 외환거래는 2000년 6월 1일부로 발효된 외국환관리법(Foreign Exchange Management Act, 1999)에 따라 인도중앙은행(RBI, Reserve Bank of India)에서 관리하고 있다. 외국환관리법(FEMA, 1999)은 이전의 외환규제법(Foreign Exchange Regulation Act, 1993)을 변화된 대내외 환경에 맞추어 개정하면서 이름이 바뀐 제도이며 FERA는 FERA of 1973, FERA of 1947 등 1947년에 처음 제정된 후 1973년에 개정된 바 있다.

(2) 환율제도

인도는 1993년부터 변동환율제를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환율은 외환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된다. IMF에서는 자율변동환율 제도를 '변동폭의 제한 없이 시장에서 환율이 결정되며, 외환 당국의 시장개입이 최근 6개월간 3회 이내로서 개입내역을 공개하는 경우'로 정의하고 있다. 인도중앙은행(RBI)에서는 급격한 환율변동이 나타나는 경우에만 시장개입을 한다고 대외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더 자주 시장개입을 하고 있어 IMF의 기준에서의 인도 환율제도는 자율변동환율제가 아닌 관리변동환율제로 구분된다고 볼 수 있다.

인도 환율제도는 영국으로부터의 독립 이전에는 영국 파운드화에 연계된 pegged 고정환율제(페그제)가 사용되었고 독립 이후 1947년에서 1971년까지는 금과 영국 파운드화에 연계된 고정환율제도(Par Value System)가 사용되었다. 1971년 이후에는 미국 달러화와 영국 파운드화에 연계된 고정환율제도를 사용하다가 1976년 브레튼우즈 체제가 붕괴하면서 영국 파운드화가 급락하자 화폐가치 하락에 대응하기 위하여 주요 교역상대국 통화들의 가중평균환율에 연계하고 상·하한 5% 범위에서의 변동을 허용하는 통화 바스켓 연계 고정환율제를 도입하였다. 이후 1991년에서 1993년까지는 변동환율제로의 이행을 위한 과도기로서 이중환율제도를 사용하였다.

이중환율제도에서는 40%는 인도중앙은행에서 고시한 공식환율로, 60%는 시장에서 결정된 시장환율로 거래되도록 하였으며 공식환율은 주로 원유, 석유, 비료 등 주요 수입품목의 결제에 적용되었다. 1993년 인도중앙은행에서 공식환율 고시를 폐지함에 따라 시장에서 환율이 결정되고 상·하한 변동폭의 제한이 없는 변동환율제가 도입되었다.

2) 인도의 외환시장

인도에서의 외환거래는 인도중앙은행으로부터 허가받은 은행(Authorized Dealer Category, 통칭 AD Bank)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인도는 외환보유고, 대외부채 등 대외 거시건전성 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외환거래를 통제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외환거래(외화의 매입/매도)는 그 거래의 목적과 증빙자료의 제출이 요구된다.

외화계좌의 경우 개인의 경우에는 NRI(Non Resident Indian, 인도인 비거주자) 등 허용된 몇몇 경우를 제외하고 개설이 제한되며 기업의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수출기업만 개설할 수 있다. 수출기업이 개설한 외화계좌(EFEC, Exchange Earners Foreign Currency)의 경우 수출의 대가로 영수한 외화만 입금할 수 있으며 입금된 외화는 일정 기간 이내로만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외화의 보유도 제한되어 있다. (현재 규정으로는 다음 달 말까지 보유 가능하며, 초과하여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 AD 은행의 승인 필요)

인도 루피화는 원화와 마찬가지로 역외에서는 거래가 제한되는 ND(Non Deliverable) 통화로 분류된다. 따라서 루피화로 해외송금/수취는 역외 결제가 불가하므로 일반적으로 제한되나, 인도에 진출한 일부 한국계 은행들을 통하여 한국에서 인도로 루피화로 송금이 가능

하며, 인도에서 한국으로 원화로 송금도 가능하다. 인도 외환시장은 09시부터 17시까지 거래되며 인도 중앙은행에서는 대고객 거래를 16시 30분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일일 거래량은 현물환 기준 하루평균 100억 달러 내외로 유동성 측면에서는 양호한 수준이며 선물환 및 교환시장도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는 전일자의 거래량 가중평균 환율을 다음날 1회차 매매기준율로 고시하고 있는데, 인도에서는 일일 평균환율은 고시되지 않고 있으며 대신 장중 오후 1시 30분에 당일자 레퍼런스 환율(Reference Rate, 통칭 Fixing rate)을 고시하고 장 마감 후에는 당일자 마감환율을 고시하고 있다.

※ Reference Rate: www.fbil.org.in에서 오후 1시 30분 이후 확인 가능

외환 규제

1) 외화송금 관련 규제

인도의 외국환관리 규정은 그 내용이 매우 방대하고 예외적용 항목들이 많아 상당히 복잡하고 규정 개정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편으로, 다음의 내용은 개인 및 기업의 외화송금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한 것이므로 실제 거래 전 관련 사항을 거래은행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1) 개인의 외화송금

인도는 2004년 Liberalized Remittance Scheme(LRS)을 도입하여 개인인 거주자의 허용된 경상/자본거래에 대한 해외송금 허용 한도를 관리하고 있다. LRS 한도는 경제상황에 따라 변경을 해오고 있으며 2015년 5월 LRS limit을 USD 250,000으로 확대한 후 현재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개인인 거주자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April-March)으로 연간USD 250,000까지 AD 은행을 통해 증빙을 제출하고 송금할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할 경우 RBI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

개인의 허용된 경상거래는 개인적인 방문, 증여/기부, 해외취업, 이민, 출장, 의료목적 방문, 유학 등이 포함되며, 개인의 허용된 자본거래는 해외소재 은행에 외화계좌 개설, 해외 부동산 매입, 해외투자, 해외 자회사 설립, 비거주자 해외법인에 대한 자금대여 등이 포함된다.

해외여행 목적의 경우에는 1인당 USD 3,000 이내에서 현찰로 환전이 가능하다. (여권, 비자, 항공권 등 여행 증빙 필요) 인도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의 해외송금은 인도 영구거주자가 아닌 인도 거주자로서 파키스탄 제외한 외국의 시민권자인 경우 세금 등 공제항목을 제외한 Net Salary 범위에서 송금이 가능하다. (TDS Certificate 등 급여 증빙 필요) 외국으로부터 들어온 자금의 범위 이내에서의 재송금 또한 가능하다.

(2) 기업의 외화송금 (수출대금 영수)

사후송금방식인 경우 수출대금은 선적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결제토록 규제하고 있으며 인도 밖의 보세창고로 수출한 경우에는 선적일로부터 15개월 이내에 결제되어야 한다. 사전송금방식인 경우 수출자는 수출대금 영수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출품을 선적해야 하며, 사전송금액에 대한 이자를 적용하는 경우 이자율은 LIBOR+100bp를 초과할 수 없다. 선적서류 및 수출 관련 서류들은 사전송금을 수취한 AD은행을 통해서 제출되어야 하며, 수출자가 수출대금 영수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일부 혹은 전부를 선적하지 못하는 경우, 수출대금의 일부 혹은 전액 반환은 RBI의 사전 승인 대상이다. AD은행은 수출대금을 영수하는 경우 이를 EDPMS(Export Data Processing and Monitoring System)에 등록해야 하며, 세관에서 등록하는 수출정보와 매칭하여 해당 건을 종결시켜야 한다.

과거 3년 이상의 양호한 거래기록을 보유한 수출자가 장기 공급계약에 대한 사전송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AD 은행으로부터 최장 10년까지 승인을 받고 수취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는 최소불능 공급계약이 체결되어야 하고 수출자는 그러한 공급계약을 실제로 수행할 수 있는 생산능력을 갖추어야 하는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이 경우 수취한 자금은 부실자산(NPA)으로 분류된 루피화 대출을 상환하는 데 사용할 수 없으며, 미화 1억 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RBI에 신고되어야 한다. 생산에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상품의 수출로서 수출계약서에 선적일이 사전송금 수취일로부터 1년을 경과한 시점으로 되어있는 경우 AD은행은 이를 승인할 수 있다.

(3) 기업의 외화송금 (수입대금 결제)

사후송금방식의 경우 수입대금은 선적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결제해야 한다. 하지만 품질, 수량, 계약조건 미이행 등으로 인한 분쟁, 소송, 재무적 어려움 등으로 결제가 지연된 경우, AD은행은 6개월 단위로 최장 3년까지 송금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단, 선적일로부터 1년 초과한 수입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해당 수입건은 감독기관으로부터 조사의 대상이 아니어야 하며, 결제 시점 현재 미결제 수입 총잔액이 미화 1백만 불을 초과하거나 직전 2년 평균 수입금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RBI 승인 후 송금이 가능하다.

사전송금방식의 경우 송금일로부터 6개월 이내(자본재인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수입이 완료되어야 하며 수입자는 송금일로부터 6개월이 종료되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입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송금이 여러 건으로 분할되어 송금된 경우에는 마지막 송금일을 기준으로 한다.

AD은행은 수입결제 해외송금에 대한 정보를 IDPMS(Import Data Processing and Monitoring System)에 등록하고 세관으로부터 등록된 수입통관 정보와 매칭하여 해당 건을 종결시켜야 한다.

후불 약정(Deferred payment arrangement) 수입의 경우에는 수입 결제 기한이 최대 3년 까지 허용되며 Trade credit으로 간주하여 중앙은행(RBI)의 Master Circular - External Commercial Borrowings and Trade Credits의 적용을 받는다. Trade credit에는 대표적으로 Supplier's credit과 Buyer's credit이 있으며, 수출입 거래의 후불 약정을 위한 신용을 누가 제공하고 있는가에 따라 구분한다. 수입자가 금융기관이나 은행 신용장 등을 이용하여 수출자에게는 즉시 지급하고 수입자는 금융기관이나 은행으로 나중에 지급하는 형태가 Buyer's credit의 일반적인 형태이고, 수출상이 결제 조건에 후불 결제가 가능토록 신용을 주는 경우가 Supplier's credit의 일반적인 형태이다.

(4) 이익(잉여)금의 송금

연락사무소(Liaison Office)는 상업활동이 제한되므로 본국으로의 이익금 송금이 불가하며 사무소 청산(closure)의 경우에만 송금이 가능하다. 연락사무소는 AD은행을 통해 1개의 계좌만 보유할 수 있으며 이때 입금의 경우 경비목적으로 해외 본사로부터의 자금 수취, 보증금의 반환, 세금 환급, 자산매각 자금의 경우에만 허용되며, 지급의 경우 현지 경비지출을 위한 자금으로 쓰일 때만 허용된다.

프로젝트오피스(Project Office)는 특정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설립된 사무소로 기본적으로는 프로젝트 종료 시 잉여금 송금 가능하다. 프로젝트의 종결이 지연되는 상황으로 프로젝트 종결 전 송금이 필요한 경우 AD은행의 승인 후 송금 가능(정상적인 종결에 문제가 없다는 회계감사인의 확인서 및 PO의 각서 제출)하다. 프로젝트오피스는 AD은행을 통해 외화계좌 개설이 가능하며, 루피화와 미 달러화로 2개의 계좌 개설이 허용된다. 허용되는 입금거래는 해외 본사로부터의 송금, Project Sanctioning Authority로부터 외화수취 등이고, 지급은 프로젝트 관련 지출만 가능하다.

지점(Branch Office)은 이익금에 대해서 세금(40%)납부 후 송금 가능하다.

단독투자회사(Wholly owned subsidiary)는 배당의 형태로 송금하는 것과 자사주 매입의 형태로 송금하는 것이 가능하다. 배당은 법인 소득세(30%)와 배당 분배세(15%)를 납부한 후 송금이 가능하며, 자사주 매입은 법인소득세(30%)와 재매입세(20%)를 납부한 후 송금 가능하다. 다만 특정 외국기업(해외 자회사 또는 지분이 26% 이상인 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한 15% 양허세율이 철회되어 외국 법인의 배당금은 해당 법인 세율로 과세가 적용된다.

(5) 자본금 송금

이전에는 법인 설립을 위한 최소자본금이 10만 루피 이상이어야 하는 등 자본금 관련 제한사항이 있었으나 2015년에 관련 규정이 폐지되어 현재로서는 한도 관련 제한사항은 없다.

자본금은 정관상 기재되는 명목자본금과 실제로 납부하는 납부자본금으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명목자본금을 높게 책정하고 실제로는

소액만 납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하지만 명목자본금 규모에 비례해서 등록세를 납부하기 때문에 중장기 사용 계획에 따라 적절한 금액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본금은 사업자등록증 발급 후 60일 이내에 송금이 완료되어야 하고, 자본금 수취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주식이 발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주식 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FIRMS(RBI(인도중앙은행) 운영 포털사이트)를 통해 FC-GPR 신고를 하여야 한다. 자본금 수취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주식이 발행되지 않는 경우 기한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자본금을 다시 반환 송금하여야 한다.

(6) 기타 RBI(인도중앙은행)의 사전 승인을 필요로 하는 경우

- 기부: 과거 3개년 외환소득의 1% 또는 USD 5,000,000을 초과하는 경우
- 커미션 지급: 거래 건 별 해외송금 수취금액의 5% 또는 USD 25,000을 초과하는 경우
- 법인설립 전 비용의 반환: 인도로 투자된 자금의 5% 또는 USD 100,000을 초과하는 경우
- 컨설팅 서비스 비용의 지급: 계약 건당 USD 1,000,000을 초과하는 경우(인프라 프로젝트 관련인 경우 USD 10,000,000)

2) 자금조달(역외대출)

(1) 인도에서의 자금조달은 크게 인도 내 금융기관을 통한 현지금융과 인도 밖의 금융기관 또는 본사/관계사를 통한 역외금융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인도에서 외화대출은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한 무역금융 상품이 있으며, 그 외에는 모두 역외금융을 통해 이루어진다.

(2) 역외금융(External Commercial Borrowing) 주요 내용

- 차입통화: USD, EUR 등 자유롭게 환전 가능한 외국통화 및 INR
- ECB 종류: 은행대출, 3년 초과 무역금융(Buyer's/Supplier's credit), 변동/고정금리부 유가증권, 전환/교환사채
- 취급가능 차입자: 외국인직접투자(FDI)를 받을 수 있는 모든 회사(Entity) 및 Port Trust, SEZ(Special Economic Zone) 소재 기업, micro-finance 회사, 협동조합/신탁 등
- 취급가능 대여자: 대여자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국제증권관리위원회기구(IOSCO) 회원국의 거주자이어야 한다. 해외 은행, 인도은행의 해외지점/자회사, 차입자의 본사/관계사(Foreign equity holder) 등
- 최소평균 만기: 최소평균만기(MAMP) 3년 이상 (단, 제조업 영위 기업은 회계연도 기준 5백만 불 이내 1년 이상). 본사/관계사* ECB로서 운전자금, 일반기업자금 또는 루피대출 상환 목적인 경우 5년 이상
- 차입비용 상한: All-in-Cost* 기준 기준금리(Benchmark) + 450bp(Benchmark: 6M Libor, 6M EURIBOR 등 해당 통화 6개월물, INR의 경우 해당 만기 국채수익률)
- 자금용도 제한
 - Real estate activities(단, 기존시설 확장/현대화/새 프로젝트 등을 위한 산업용 토지의 매매/장기임대는 가능)
 - 자금시장/주식/지분 투자
 - 운전자금, 일반 기업자금, 루피화 대출 상환 (단, 본사/관계사 ECB인 경우 가능)
- 한도/차입비용: 회계연도 기준 USD 750백만 이하 자동승인(Automatic route)이나 대출 취급 전 LRN 발급 필요. 본사 차입 외화 ECB인 경우 ECB 채무와 자본비용 7:1 이내로 제한(총 잔액 5백만불 이하 적용 제외)
-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대출계약(Loan Agreement) 체결 후 7영업일 이내 Form ECB를 RBI에 제출해야한다. (LRN 발급신청) ECB liability-equity ratio 산출 시, INR ECB 제외된 모든 ECB의 잔액을 포함하고 equity는 최근 감사보고서 상의 납입자본금(paid-up

capital)과 이익잉여금(free reserves)을 합산해야 한다. 외화에서 외화 혹은 외화에서 루피로 차입통화는 변경 가능하나 루피에서 외화로
는 변경이 불가하다.

6. 노무

가. 임금 수준

기준환율 : 1USD=76.74INR(22.5.1~5.10 평균)

대졸-사무직 초임 (평균임금, 달러)	377	고졸-생산직 초임 (평균임금, 달러)	285	최저임금 (시간당, 달러)	1
비고	<p>인도의 최저임금액은 정확하게 통일된 하나의 숫자로 나오지는 않는다. 산업분야 직업별, 그리고 비숙련, 반숙련, 숙련 근로자인지 여부, 주별로 최저임금 수치가 다르다. 최저임금법(Minimum Wages Act, 1948)에서는 특정고용에서 최저 임금 금액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인도 노동청은 미숙련, 준숙련, 숙련 노동자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인도 전역의 평균 임금은 8,080INR~143,000INR(US\$ 107.78~US\$ 1,907.25/월)으로 지역, 직종별로 임금수준이 상이하어 인도 고용 노동부 2022년 3월 31일 발표 기준은 아래와 같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숙련 : INR 423/일 - 준숙련 : INR 461/일 - 숙련 노동자 : INR 502/일 - 고속련 노동자 : INR 554/일 ○ 광산 분야(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숙련 : INR 443/일 - 준숙련 : INR 553/일 - 숙련 노동자 : INR 663/일 - 고속련 노동자 : INR 772/일 ○ 광산 분야(지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숙련 : INR 553/일 - 준숙련 : INR 663/일 - 숙련 노동자 : INR 772/일 - 고속련 노동자 : INR 862/일 ○ 건설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숙련 : INR 663/일 - 준숙련 : INR 734/일 - 숙련 노동자 : INR 806/일 - 고속련 노동자 : INR 876/일 				

<자료원 : 인도 중앙은행(환율), 인도 고용 노동부(평균임금)>

나. 노무관리

고용계약

서면, 구두 또는 명시, 묵시적 계약 등 모든 형태의 고용계약에 계약법상의 일반 원칙이 적용되며, 일반적으로 입사 일자, 보수, 수습 기간, 업무 범위, 교육 및 수행 규칙, 임무변경, 연금, 퇴직, 비밀유지, 경쟁금지 조항 및 기타 핵심 관련 조건들과 관련된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고용계약의 내용은 상업시설(상점 및 상업시설법)인지 공장(공장법)인지 아닌지에 따라서도 다르며 해당 직원이 근로자(Workmen)인지 관리자인지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특히 50인 이상의 상업시설, 100인 이상의 공장 근로자에 대하여는 산업고용법(Industrial

Employment(Standing Orders) Act)이 적용되어 (i) 고용조건서 서면작성 의무화; (ii) 입사 일자, 보수, 수습 기간, 업무 범위 및 변경, 교육 및 수행 규칙, 연금, 퇴직, 비밀유지, 경쟁금지 조항 등 필수 조항 의무화; (iii) 인도 노동 관련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법정 최소 혜택을 무시한 고용계약을 무효로 간주하는 등 근로자를 더욱 보호하고 있다.

상여금 지급에 관하여 상여금지급법(Payment of Bonus Act, 1965)에서 규정하고 있다. (1) 모든 공장, (2) 회계연도 중 20명 이상을 고용한 기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데 당 해에 최소 30일을 근무하고 월 21,000루피(기본수당+DA) 이하의 급여를 받는 근로자만 자격이 된다. 급여의 8.33%를 최소 상여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급여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계절성 공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최소 30일을 근무했다면 상여금의 수급 자격을 가지며 견습생은 상여금 수급 대상이 아니다. 상여금은 최소임금을 7,000루피로 간주하여 상여금 지급율에 따라 산출한다.

근로시간

공장법(The Factories Act, 1948)은 10인 이상 전력 사용 제조공장, 20인 이상 전력비 사용 제조공장에 대해 성인 근로자의 경우 일일 9시간, 주당 48시간 근무를 규정하고 있다. 100인 이상의 공장의 경우 산업고용법을 적용하며 주별로 상이하지만 통상적으로 50인 이상의 상업시설에는 주법인 상점 및 상업시설법이 각각 따로 적용된다.

1일 9시간을 초과하거나 주당 4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근무 시간에 대하여 두 배의 임금이 지급된다.

휴식 시간을 포함하여 하루 10시간 반 이상을 근무할 수 없으나 주 정부는 ①긴급 수리 종사자, ②공장의 정상적인 가동을 위한 업무 종사자, ③업무 자체가 단속적이어서 법정 이상의 휴식시간을 갖는 종업원, ④기술적 사유로 연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업무의 종사자 등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초과근무의 범위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초과근무를 지시하였거나, 승낙하였을 경우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통상적으로 회사 내 인사규정(HR Policy) 또는 추가수당정책(Overtime Policy)을 규정하고 있을 경우, 이에 따라 적용하면 되기 때문에 사용자-근로자 간 불필요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초과 근무가 아니라면 일요일 근무나 야간 근무에 특별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며, 공휴일 근무는 통상 100% 수당이 지급되나 근로자들은 대체로 유급 휴가로 대체하는 것을 선호한다. 산업이나 직종에 따라 표준 근로시간은 어느 정도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근로 시간 관련 규정을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휴가

인도의 법정 공휴일은 중앙정부 및 주 정부에 의해 공지되는데, 통상 연간 10~15일의 공휴일이 있다. 또한, 휴무일 및 공휴일과는 별도로 연간 24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20일당 1일의 유급 휴가가 지급되며 연간 7일의 유급 병가가 허용되고, 개인 경조사 등을 위해 7~10일의 임의 휴가가 주어진다.

○ 중앙정부 법정 공휴일

- <https://dopt.gov.in/sites/default/files/holiday%20list%202022..pdf>

출산 휴가는 각 주의 관습과 상업적 관행,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유동적으로 결정이 되나, 공식적으로는 The Maternity Benefit Act, 1961 (임산부복지법)에 따라 1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80일 이상 근무한 여성 근로자에게 출산 전 8주를 포함하여 최대 26주의 유급 휴가가 주어진다.

해고

산업분쟁법(Industrial Dispute Act, 1947)에 따르면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한 기업의 경우,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대한 일시 해고 시에 해고 기간에 임금의 50%를 지급해야 한다. 또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감축 시에는 1개월 전에 서면 통보해야 하며 근무

연수만큼의 15일치의 급여가 감축보상금으로 지불되어야 한다.

모디 정부는 종업원 해고 시 고용주에게 대체 근무자를 소개해줄 것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노동자를 보호하는 기본 기초를 유지하고 있다

퇴직금

퇴직금법(Payment of Gratuity Act, 1972)은 근로자의 사임, 서비스의 종료 또는 퇴직 시 지불하는 수당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20인 이상 고용한 사업체에 적용된다. 최소 5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들에게 고용종료 또는 퇴사할 때 의무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장애를 입은 경우, 5년 이하를 근무한 근로자라도 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다. 이 외에도 관행상 지급하기도 한다.

직원에 대하여 퇴직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장은 아래와 같다.

- 공장(공장법, 1948년 등록)
- 회사(회사법에 따라 등록됨, 1956/2013년)
- 상점 & 설립(주 정부 상점 & 설립법에 따라 등록됨)
- 교육기관, 직원 10명 이상 고용
- 기타 등록된 사업체 (광산, 정유, 농장, 항만, 철도 계의 업종)

○ 퇴직금 = 월급/26 X 15일 X 근무연수

노사관계

인도는 노동쟁의와 관련한 다양한 사법제도를 보유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인도의 노무소송은 조정관에서 시작하여 대법원에서 종결된다.

노동자의 기본권을 침해한 소송/사건은 해당 고등법원, 대법원에서 제기되며 근로자, 사용자, 노동조합에 관련된 소송은 노동법원, 산업재판소, 국가 재판소, 지역법원에서 제기된다.

다. 사회보장제

건강보험

근로자국가보험제도(ESIC, The Employee's State Insurance Scheme)은 근로자국가보험법(Employees State Insurance Act, 1948)에 의해 통합된 사회보험제도로써 가족 의료혜택(Medical benefits of family), 부양 혜택(Dependent benefits) 그리고 사망할 경우 받는 혜택(Funeral benefits or death benefits)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ESIC가 한국의 국영건강보험제도와 같은 건강보험이라고 표현할 수 없다.

10명 이상의 직원이 근무하는 도로 교통, 호텔, 레스토랑, 영화관, 신문, 상점, 교육 및 의료 기관 등이 대상이다. 보너스, 유급휴가보상액, 팀을 제외한 매월 21,000루피 이상의 급여를 받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고용주는 임금의 4.75%, 근로자들은 임금의 1.75%를 보험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고용보험

근로자국가보험제도(ESIC, The Employees State Insurance Scheme)에 포함되는 내용으로 인도는 고용보험이 별도로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산재보험

근로자재해보상법(Workmen compensation Act, 1923)으로 사망이나 신체적 장애를 수발하는 고용 기간 또는 사고가 발생하는 기간 동안에 근로자 또는 그들의 부양가족에게 원조를 제공하는 등의 규정을 담고 있다. 고용주는 자신의 사업장에 적어도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어떤 특정한 직업병이 발병한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본 법에 의한 책임은 '보험'이라 할 수 없다. 본 법에 따라 사망, 장애 등이 발생한 경우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 한국과 같이 평상시 보험료를 납부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지 않기에 한국과 같은 산재보험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보상금액은 장애의 성격, 장애 또는 사망의 원인이 된 상해가 있는 근로자의 연령에 따라서 다양하다.

국민연금

'근로장려금 및 기타 충당금법'인 EPF(Employees' Provident Funds and Miscellaneous Provisions Act, 1952)는 20인 이상 사업장(영화관의 경우 5인 이상)의 월 급여 15,000INR 이하 근로자에 대해 의무적으로 적용되며, 그 이상의 급여를 받는 근로자는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기본급과 수당을 합한 급여의 12%를 노동자와 사측이 각각 부담한다.

또한, EPF 연계 보험인 EDLI(Employees' Deposit-Linked Insurance Scheme, 1976)는 EPF의 적용을 받는 모든 구성원에게 적용되나 코로나19 감염병의 장기화에 따라 해당 기간 인도 정부는 약관을 강화하여, 계약자 사망 시에 수익자가 INR 600,000 ~ 700,000까지 수령 가능할 수 있도록 개정한 바 있다.

7. 세무

가. 조세제도

법인세

1) 법인세

법인 소득에서 원자재 매입, 임금, 합리적인 수준의 상여금, 임대료, 보험금, 로열티 지급액, 이자, 배당금, 리스대금, 세금(판매세, 시영(市營)세, 재산세, 도로세, 관세), 감가상각, R&D 관련 비용 등을 제한 금액이 법인세의 과세표준이 된다. 인도법인과 외국법인 간에 법인세 율에는 차이가 있다. 외국기업이 인도에 법인을 설립하였다면, 인도 내국법인으로 간주되나, 지사, 프로젝트 사무소의 경우는 외국법인으로 간주된다. 2022년부터 특정 외국기업(해외 자회사 또는 지분이 26% 이상인 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한 15% 양허세율이 철회되어 외국 법인의 배당금은 해당 법인 세율로 과세가 적용된다.

(1) 내국법인

2019년 9월 20일 인도 재무장관은 기존 법인세율에 추가적으로 연 매출 규모와 상관없는 22% 적용 구간을 추가하였고, 2019년 10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 제조시설을 설립한 경우 15%의 기본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2022년 2월 인도 정부는 신규 제조시설 법인세를 기존 기한인 2023년 3월 31일에서 2024년 3월 31로 연장한 바 있다. 내국법인들은 2020-2021 회계연도에 대한 소득세 신고부터는 기존 소득세율 체계를 유지하거나, 신규 소득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신규 소득세율의 경우 다른 조세혜택이나 조세감면을 신청하지 않고 최저한세(MAT: Minimum Alternate Tax)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조건하에 신청이 가능하다.

○ 기존

- 연매출 40억 루피 미만: 기본세율 25% * Surcharge 7%, 12%(차등적용) * 추가세 4% = 26%, 27.82%, 29.12%
- 연매출 40억 루피 이상: 기본세율 30% * Surcharge 7%, 12%(차등적용) * 추가세 4% = 31.2%, 33.384%, 34.944%
- 유한책임파트너십: 기본세율 30% * Surcharge 10% * 추가세 4% = 34.32%

○ 신규

- 매출액 무관: 기본세율 22% * Surcharge 10% * 추가세 4% = 25.168%
- 신규 제조업(2023년 3월 31일까지 제조시설 설립): 기본세율 15% * Surcharge 10% * 추가세 4% = 17.16%

(2) 외국법인

외국법인과 외국법인의 인도 지점은 40%의 세율이 적용되며, 여기에 세율 구간별로 2%에서 5%의 Surcharge, 4%의 건강교육세(Health and Education Cess)가 추가된다. 이에 건강교육세가 반영된 유효세율은 1) 과세소득 천만 루피 미만인 경우에는 41.6%, 2) 과세소득 천만 루피 초과 일억 루피 이하인 경우 42.43% 3) 그리고 일억 루피 초과인 경우 43.68%가 적용된다. 또한, 외국법인 및 지점은 내국기업과 달리 배당의 형식을 거치지 않고 직접 송금이 가능하기 때문에 배당분배세에 해당하는 세율차이를 두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와 별도로, 법인세 산정 시 회사의 장부상 이익을 기준으로 최저한세(MAT)율 18.5% (추가 Surcharge 및 Cess 별도)가 고려된다.

개인소득세

개인 소득세는 당해 회계연도 중 인도 내에 182일 이상 머무는 경우, 또는 지난 4년간 합쳐서 365일 이상을 인도 내 체재한 경우, 당해 회계연도에 인도에 60일 이상 머문 경우는 거주자로 간주돼 개인 소득세가 과세된다. 인도 세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개인은 60세 미만, 60세 이상 80세 미만, 80세 미만을 기준으로 나이에 따라 납부 의무가 달라진다. 또한 계산된 소득세와 가산세에서 4%의 교육 건강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 2020년 2월 인도 정부는 개역 소득세(Old Regime)세율을 신규 소득세(New Regime)로 변경했으며, 기존 세율과 변경된 세율 중에 납세자가 선택이 가능하다.

1) 기존 소득세(Old Regime) 세율 (60세 미만 기준)

▲250,000 루피 미만의 경우 0% ▲250,000 루피 이상 500,000 루피 미만 경우 5% ▲500,000 루피 이상 1,000,000 루피 미만의 경우 20% ▲1,000,000 루피 초과인 경우 30%의 세율이 적용된다.

2) 신규 소득세(New Regime) 세율

- 기존 3개의 구간으로 운영되었던 소득세율에서 각각의 구간을 아래와 같이 좁혔다. 하지만 신규 소득세율을 적용 시 기존 세금 공제 항목 중 일부를 공제 적용할 수 없다.

▲250,000 루피 미만의 경우 0% ▲250,000 루피 이상 500,000루피 미만의 경우 5% ▲500,000루피 이상 750,000 미만의 경우 10% ▲750,000 루피 이상 1,000,000 루피 미만의 경우 15% ▲1,000,000 루피 이상 1,250,000 루피 미만의 경우 20% ▲1,250,000 루피 이상 1,500,000 루피 미만의 경우 25% ▲1,500,000 루피 초과인 경우 30%의 세율이 적용된다.

- 근로자의 퇴직연금 납부분 중 25만 루피 초과분에 대해 발생하는 이자 수익에 대해 과세하기로 했다.

- 동일 은행을 통한 연금 및 이자소득만 보유하고 있는 75세 이상 납세자 대상 소득세 신고 의무를 면제하고 은행이 이를 처리하도록 했다

부가가치세

통합간접세(GST)

GST는 Goods and Services Tax의 약자로, 인도정부가 2017년 7월 1일 도입한 간접세 체계로 한국의 부가가치세와 유사하다. 과거 인도는 주별로 재화 및 서비스에 부과하던 간접세가 상이하였는데, 이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인도 전체가 하나의 간접세로 통합되었다.

2021년 1월 1일부터 E-invoice(전자세금계산서)의 의무적용대상이 기존 최근 3 회계연도 중 1회 이상 연 매출 50억 루피였으나 10억 루피로 낮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을 확대하였다. 다만, 일부 재화와 상품이 아직까지 GST제도로 통합되지는 않았다. 주류 (Alcohol for human consumption)와 석유제품 (Petroleum products)은 현재 GST적용대상 재화에서 제외된다. 이들의 생산시설에 서의 반출 및 거래에는 기존 간접세인 물품세(Central excise duty)와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가 부과된다.

GST는 1,300개 이상의 재화와 500개 서비스를 대상으로 하며, 0%, 5%, 12%, 18%, 28%의 5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생활필수품일 수록 세율이 낮고 사치재의 경우 세율을 높게 적용하는 형태이다. 2017년 7월 1일 GST 시행 이후 간접세 세수가 확대되었으며 이에 인도 정부는 28%의 고세율 구간의 품목 수를 줄이고 12%, 18% 적용 품목의 수를 확대해왔다. GST 위원회(GST Council)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분류된다. 추가적으로 2022년 6월 GST 위원회는 47차 회의에서 다수 품목의 GST 세율을 높였으며, 해당 정부 발표자료는 아래와 같다.

* 47차 GST 위원회 회의 관련 정부 발표 자료: <https://pib.gov.in/PressReleaseDetailm.aspx?PRID=1838020>

(1) 세율별 적용 품목

- 면세(0%): 빵, 소금, 고기, 생선, 계란, 우유, 밀가루 등 생필품
- 5%: 의약품, 커피(인스턴트 제외), 차, 석탄, 등유, 전기자동차 등
- 12%: 가공육, 치즈, 과일주스, 치약, 우산, 피쳐폰 등
- 18%: 케첩 등 소스류, 아이스크림, 카메라, 스피커, 모니터(32인치 이하), 철강제품, 스마트폰, 초콜릿, 화장품, 티비, 세탁기 등 재화

- 28%: 담배, 자동차, 모니터(32인치 초과), 식기세척기, 자판기, 가구 등 사치품

(2) 통합간접세(GST) 과세시스템

- CGST: Central Excise Tax, Various Cess and Surcharges
- SGST: Value added Tax, Entry Tax, Luxury Tax, Entertainment Tax, Tax on the lottery, betting, gambling
- IGST: Special Additional Duties of Customs, Counterveiling Duties, Central Sales Tax

특별소비세

인도의 특별소비세(사치세)는 GST(SGST)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따로 존재하지는 않으며 사치품으로 확인될 경우 28%의 높은 GST가 부과된다.

다만, 인도 정부는 2017년 7월 1일 GST를 도입함으로써 발생한 주(州)정부의 세수 손실 보전을 위해 5년간 한시적으로 사치품(승용차, 담배 등)에 대한 Compensation Cess(보상부과세)를 부과해왔으며 2022년 7월 30일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 19 대유행으로 인한 보상부과세 부족분을 채우고자 2026년 6월 30일까지 연장되었다.

주류의 경우 GST 품목에 포함이 되지 않고 소비를 억제하고자 하는 정부 지침에 따라 특별소비세인 주류세가 부과된다. 주류세는 주마다 차이가 있다.

8. 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

○ 지식재산권 개요

인도 정부가 본격적으로 지식재산권 정책을 도입한 시기는 2016년, '국가지식재산권 정책'(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Policy 2016)을 통해서이다.

동 정책은 지식재산권 인식확대,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 및 침해 대응을 위한 집행 및 사법제도 강화 등으로 구성되어있다. 인도의 지식재산권 정책 이행은 인도 산업정책진흥국(상공부 산하)이 특허청(The Office of the Controller General of Patents, Designs & Trade Marks: CGPDTM) 및 지식재산권 진흥 관리셀(Cell for IPR Promotion and Management: CIPAM)을 통해 하고 있다. 특허청은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과 관련한 행정 집행 중앙부서로서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정책 및 이행 제도 구축에 직접적인 역할을 한다. 지식재산권 진흥관리 셀(CIPAM)은 지식재산권 인식, 상업화 및 정책 집행을 촉진하며 지재권 관련 부처 협력을 담당한다.

인도는 다음과 같은 개별 법령을 통하여 다양한 지식재산을 권리로서 법적 보호하고 있으며, 주요 보호 대상 지식재산은 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물, 지리적표시 등으로 분류된다.

- 상표법 (The Trade Marks Act, 1999)
- 저작권법 (The Copyright Act, 1957)
- 특허법(The Patent Act, 1970)
- 디자인법(The Designs Act, 2000)
- 상품지리적표시등록보호법(The Geographical Indications of Goods (Registration and Protection) Act, 1999)
- 반도체 집적 회로 레이아웃 설계법, 2000(The Semiconductor Integrated Circuits Layout Designs Act, 2000)
- 식물, 품종 및 농민 권리 보호법(The Protection of Plants and Varieties and Farmers Rights Act, 2001)
- 생물 다양성 법(The Biological Diversity Act, 2002)

○ 주요 법령

- 상표법

인도에서 상표의 등록과 보호는 상표법(The Trade Mark Act, 1999, 2010년 개정)에 따라 보호된다. 상표는 기호, 문자, 도형, 소리, 냄새, 입체적 형상, 홀로그램·동작 또는 색채 등으로서 그 구성이나 표현방식에 상관없이 상품의 출처(出處)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표시이다. 인도는 우리나라와 달리 상표의 한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상표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는 부분 상표로서 보호받을 수 있으며, 유사상표에 대해서 연속 상표로서 연속적인 보호가 가능하다. 상표의 보호기간은 10년이며 갱신이 가능하다.

- 저작권법

인도에서 저작권은 저작권법(The Copyrights Act, 1957, 2012년 개정) 및 저작권 규칙(The Copyright Rules, 2013)에 따라 저작물의 무단 사용 또는 복제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인도에서 저작권 등록, 보호 등과 관련된 지원은 저작권 사무소(Copyright Office)가 담당하고 있으며 인도의 저작권은 표현 형식과 관계없이 문학, 음악, 미술, 건축, 연극 및 영화의 창작물 등의 저작물을 저작권법으로 보호한다. 저작권은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60년간 존속한다.

- 특허법

인도의 특허 시스템은 특허법(Patents Act, 1970; Patents (Amendment) Act, 2005) 및 2005년 개정 특허법, 특허 규칙(Patents Rules, 2003; 2016 개정)을 근거로 하고 있다.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을 가진 모든 기술분야의 물질과 제법에 대해 특허를 인정하며 공공질서 또는 공서양속보호, 공중보건보호, 환경보호에 위반되는 발명, 인간, 동물의 치료를 위한 진단 방법, 요법 및 외과적 방법, 식물, 동물 생산을 위한 생물학적 제법은 특허대상에서 제외가능하다. 특허의 보호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이다. 그러나 특허협력조

약(Patent Cooperation Treaty, PCT)에 따라 국내단계로 출원하는 경우에는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일로부터 20년이 된다. 또한 인도는 발명이 아직 실험 단계에 있는 경우에 가출원이 허용된다. 발명자가 완전한 명세서를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가명세서에서 개시된 발명에 대해서는 가명세서의 출원일을 우선 일로 인정받을 수 있다.

- 디자인법

인도에서의 산업디자인의 등록과 보호는 디자인법(The Designs Act, 2000)과 디자인 규칙(The Designs Rules, 2001)에 근거한다. 디자인법은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RIPS 협정에 따라 산업디자인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따르며, 산업디자인의 로카르노(국제분류)에 따른 국제 분류를 적용한다. 디자인이란 공예적, 기계적 혹은 공업적 방법 또는 수단에 의해 2차원 혹은 3차원 형태로 물품에 적용되는 선 또는 색채의 형상, 윤곽, 모양, 장식 혹은 구성의 특징에 한정되는 것이며, 제품에 대하여 시각에 호소하고, 시각에 의해서만 판단되는 것으로, 신규하고 독창적인 디자인은 디자인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다. 디자인 등록의 존속기간은 최초 등록일로부터 10년이다. 최초의 기간은 10년의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연장 신청한 경우 5년간 연장될 수 있다.

9. 청산 및 철수

청산 및 철수

1) 휴업 및 등록말소

○ 휴업

인도 회사법 제 455조에 따라 사업 운영의 잠정적인 중단을 위한 법인의 휴면 상태를 허용한다. 휴면기업(Dormant Company)는 인도 기업등록부 기록에서 잠정적인 휴업상태로 등록된 기업을 의미하며, 어떠한 사업활동도 수행하지 않고, ▲현금흐름표 작성 의무 면제 ▲연 2회의 이사회 개최 (활성기업의 경우 연 4회) ▲감사인 의무 교체제도 적용 제외 등 회사법상의 의무도 일부 면제될 수 있다. 휴면기업은 기업 자산이나 지적재산을 차후에 사용할 수 있도록 기업 방패막이로 보유하는 경우 장점이 될 수 있다. 휴면기업은 회사법에 따라 회사의 중대한 회계거래가 없는 경우 휴면 회사의 지위를 획득하고자 인도 기업부에 휴업을 신청할 수 있다. 휴면회사 신청절차는 ①이사회 결의 ② 주주총회 특별 결의 ③ 기업등록국 신청서 제출 ④기업등록국의 심사 후 휴면회사 승인 발급 순으로 진행된다. 이후 정상적인 상업활동을 개시하려는 휴면회사는 Form MSC-4를 제출하여 전환할 수 있으며, 5년간 휴면회사상태가 지속될 시 기업등록국은 해당 회사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 등록말소

인도기업은 자발적 또는 인도 기업부에 의해 강제적으로 등록말소(Striking Off)가 될 수 있다. 법인 설립 이후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못하거나, 직전 2년간 어떠한 영업을 수행하지 않고, 해당 기간 내에 휴면 기업의 지위를 획득하기 위해 어떠한 신청도 하지 않은 회사의 경우, 회사는 등록이 말소될 수 있다. 회사에 의한 등록 말소는 통상 3~6개월이 소요되며, 등록말소를 신청하려는 회사는 이사회를 개최하고 등록신청을 담당할 이사를 지명해야 하는데, 이사회 개최 이전 모든 채무는 변제되어야 한다. 등록말소 신청은 E-Form STK-2 양식과 채무완납 확인, 손해배상책임 약약서 등 관련서류와 CA, CS 또는 CMA의 인증서류를 첨부하여 전자방식으로 제출한다.

2) 법인철수 및 청산 절차 구분

○ 법원에 의한 청산

회사가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등에 있어서 채권자, 회사(채무자), 법원의 청산관재인(official liquidator) 등의 신청에 따라 법원은 회사의 청산을 명할 수 있다.

○ 주주에 의한 자발적 청산

자발적 청산은 도산법 (Insolvency and Bankruptcy Code, 2016)이 다루고 있는 제도이다. 회사가 채무를 모두 변제할 능력이 있으며, 자발적 청산을 원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청산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해 청산인과 그의 보수가 결정되며 청산인의 임기시작과 더불어 회사의 대표를 비롯한 경영층은 경영권을 상실하게 된다.

청산인은 자산의 이전 및 매각을 통하여 부채를 정리하게 되며 청산 절차가 1년을 초과하여 지속될 경우 매년 주주총회를 소집해야 한다. 또한 마지막 주주총회에서 청산인은 회계장부에 대한 주주들의 승인을 받아 해당 지역 법원에 부속된 청산사무관과 회사등록계(registrar of company)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법원은 청산사무관에게 추가적인 조사를 지시할 수 있으며 이상이 없을 경우 법원은 청산을 명령하게 된다.

- 채권자에 의한 청산

회사가 변제능력이 없는 경우 채권자가 자발적으로 청산을 진행할 수 있으며, 청산절차에 대한 관리 및 회계장부의 승인은 채권자가 담당하고 채권자들은 5인 이상의 채권자로 구성된 채권단을 구성할 수 있다.

3) 법인철수 및 청산 관련 기타 사항

- 종업원 해고

100명 이상 고용기업은 사업장 폐쇄 시 2개월 전에 정부에 신청을 해야 하는 등 다양한 노동법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사업장 상황에 맞게 법률을 검토하여야 한다.

- 청산금 회수

인도 내 외국회사의 지점/연락사무소의 청산절차의 송금은 RBI 승인을 조건으로 허용되며, 인도 내 외국회사 프로젝트 사무소의 청산대금 송금은 회사의 필요한 절차 이행을 조건으로 자동 승인된다. 단, 지사의 청산 시에는 청산대금의 본국 송금을 인도중앙은행이 공인한 거래 은행을 통해서 처리하여야 한다는 제약이 있다는 점에서 프로젝트 오피스와는 구별된다. 인도에 투자한 외국자본이 송환을 원칙으로 투자되었다면, 일반적으로 자본에 대해 부과된 세금을 납부한 후에 본국으로 송환 가능하다. 또한 주식 펀드의 경우 주주의 양도 또는 청산 시에만 회수될 수 있으며, 제한된 바이 백(buy-back) 조항은 회사법에 의하여 규율되며, 감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가능하다.

IV. 참고정보

1. 시장특성

가. 시장 특성

소비인구

인도의 인구는 14억 명을 상회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중국에 이은 세계 2위의 인구 수 보유국으로 2025~2030년 기간 동안 중국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인구의 절반(45.24%)가량이 24세 이하이며, 남성의 평균연령은 27.2세, 여성은 28.6세로 저연령대 인구 비중이 압도적이다. 1인당 GDP는 2021년 기준 전년 대비 약 13% 상승한 2,185달러이며, 명목 GDP는 3조 419억 달러이다. 인도의 2022년 명목 GDP 전망치는 국가별 GDP 순위 세계 7위로 액수 기준 3조 2913억 달러로 예상된다.

딜로이트 소비자 보고서(Deloitte report Unravelling the Indian Consumer, 2019. 2.)에 따르면, 인도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밀레니엄 세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약 4억 4천만 명으로 전체 인구 수의 34%를 차지하고 있다. 밀레니엄 세대는 전체 노동 및 소비 분야에서 약 48%를 차지하며, 다수의 밀레니엄 세대로 인해 인도 소매시장의 성장 가능성이 유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소비자 접근성 측면에서 도시화율은 주요한 지표인데, 인도의 도시화율은 2020년 기준 34.93%에 불과하다. 다만, 인도 정부의 102조 루피 규모의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NIP)에 따라 민관합작투자사업(PPP) 장려하는 등 적극적으로 인프라 확충에 나서고 있어, UN은 2030년까지 인도의 도시화율이 40.76%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자료원 : 인도국가경제연구원, 딜로이트, statista, UN, IMF>

소비 성향

1) 자연친화 제품 소비 경향

인도는 14억의 인구나 28개 주와 8개 연방 직할지로 구성된 거대 국가이며, 공식 언어만 23개에 이르는 등 계층별, 지역별 구분이 뚜렷하기 때문에 몇 가지 특징으로 인도 전체 소비자의 성향을 재단하기는 매우 어렵다. 다만, 타 국가와 비교해 봤을 때 채식주의자의 인구비율이 높게 나타나며, 종교적 특성으로 인해 자연제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 채식주의

- 인도정부(2014)에 따르면 인도 내 채식주의자의 비중은 28.85%이며, 나머지는 비 채식주의자로 조사되었다. 채식주의자 비중의 지역별 편차가 있어, 탈렝가나 주의 경우 비 채식주의자의 비중이 98.7%에 이르며, 웨스트벵갈 98.55%, 오디샤 97.35%, 케랄라 97% 등 주요 동부와 남부 지역에 위치한 지역의 비 채식주의자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 이에 반해 라자스탄(74.90%), 하리아나(69.25%), 편잡(66.75%), 구자라트(60.95%)와 같은 북서부 지역의 경우 채식주의자의 비중이 타 지역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인도의 모든 식품에는 채식(Veg), 비 채식(Non-Veg) 여부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고 미량이라도 동물성 원료가 제품에 포함되어 있다면 라벨링 규정 위반이 되고 채식을 선호하는 인도 소비자의 신뢰를 잃게 된다. 따라서 대부분 비 채식 원료로 제작되는 한국산 식품의 경우 동식물성 원료 표기에 유의해야 한다.

○ 자연제품에 대한 선호

- 대부분의 인도인은 자연 친화적이며 생명을 중시한다. 전 인구의 80%를 차지하는 힌두교와 힌두교의 영향을 받은 기타 종교의 경우, 깨끗한 것(정)과 깨끗하지 않은 것(부정)을 엄격히 나누고 항상 '정'한 상태에 이르도록 교육을 한다. 이런 점에서 자연재료가 아닌 화학 재료가 들어간 제품에 대한 거부감이 상대적으로 크고 화장품, 의약품, 식품 등의 품목에 대해 특히 이러한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 인도에서 잘 팔리는 제품의 경우 'Organic,' 'Ayurveda'와 같이 천연성분임을, 제조공정이 자연친화적임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다.

과거 화학 공장의 폐수 유출이나 납이 들어간 식품이 판매되는 사건들이 일어나면서 일반 국민의 자연제품에 대한 선호와 인식은 보다 높아진 상황이다.

2) 외국산 제품에 대한 선호

○ 자동차

- 주요 제조업 관련 글로벌 기업의 대부분이 인도에 진출해 있다. 2022년 3월 기준, 자동차 시장 점유율 기업 순위는 일본계 마루티 스즈키(41.63%)와 현대자동차(13.87%)이며, 그 뒤를 이어 타타(13.15%), 기아차(8.58%)가 차지하고 있다.

- 신규 SUV모델인 셀토스와 카니발을 출시한 기아 자동차는 지난 2022년 3월 2만 2622대를 판매하며, 월별 판매량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이는 전년대비 18%증가하였다. 특히 셀토스는 8,415대를 판매하며 베스트셀러 자리를 지켰으며, 신규 출시된 카렌스는 7,008대를 출하하며, SUV 시장 내 판매 1위를 기록하는 등 한국 차량의 선호도를 높이고 있다.

○ 휴대폰

- 2021/22 회계연도 2분기(7~9월) 기준 중국 브랜드가 인도 스마트폰 시장의 63%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샤오미가 신규 출시한 3개의 모델이 높은 인기와 함께 스마트폰 판매순위 5위 내에 포함되면서 23%의 점유율로 1위를 유지했다. 그 뒤를 이어 삼성전자(17%), Vivo(15%), Realme(15%)이 차지하게 되었다.

- 각 통신업체가 5G 시범운영을 진행 중이며, 5G 주파수 경매가 2022년 8월 경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5G 스마트폰에 대한 수요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분기(7~9월) 5G 스마트폰 판매량은 1,000만 대를 넘어섰으며, 조사업체 CyberMedia Research, Counterpoint Research에 따르면, 2022년 인도 5G스마트폰은 인도 전체 스마트폰 출하량의 40%를 차지할 것을 전망하였다.

*2021년 전체 스마트폰 출하량 1억 6,900만 대

3) 코로나19 이후 바뀐 소비 습관

○ 고가의 프리미엄 제품보다 저렴한 제품의 소비 증가

- 심각한 경기침체로 인해 일자리를 잃고 소득이 감소한 소비자들은 저렴한 제품을 찾게 되며 기존 프리미엄 제품을 찾는 소비문화에서 저렴한 제품을 찾는 소비문화로 소비 패턴이 일부 변화했다. 경제위기 발생과 커져가는 경제 불확실성으로 소비자들은 기존보다 저렴한 제품을 선호하게 된 것이다.

○ TV, 노트북, 태블릿 PC 등 가전용 전자기기 수요 증가

-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온라인 교육 및 원격 근무가 일상화 되는 등 소비자들의 주택 거주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온라인 교육, 게임, OTT, 엔터테인먼트 등 PC를 통한 콘텐츠 소비가 증가 되는 중이다. IDC(IT 및 통신 테크놀로지 부문 시장조사 및 컨설팅 기관)이 2022년 3월에 발표한 인도 PC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1년 데스크탑, 노트북 및 워크스테이션을 포함한 인도 PC시장은 전년 대비 44.5% 증가하였다.

- OLED, QLED TV와 같은 고급 디스플레이가 탑재된 신규 제품 또한 인기를 얻고 있으며, 최근 삼성은 인도 노트북 시장에 6개 제품(갤럭시 북 고, 갤럭시 북2 프로, 갤럭시 비즈니스 등)을 출시했으며, 지난 2022년 3월 30일에는 최신 Neo QLED 8K TV를 공개하였다.

○ 온라인 쇼핑 증가

- 전자상거래 사이트 Amazon에 따르면, 인터넷 이용자 3억 9천만 명 중 42%가 코로나19 상황에 온라인 주문을 이용했으며, 이 중 50%는 처음으로 온라인 쇼핑을 접한 것으로 발표되었다. 이 중 재이용 의사를 보인 소비자들은 82%에 이른다.

- 온라인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제품군으로는 의류, 모바일기기, 홈케어제품, 미용제품, 식료품 등이 있으며, 재택에서 보내는 시간이 증가하면서 가전용 전자기기 수요도 높게 나타났다.

○ 건강음료에 대한 소비 증가

- 코로나19로 면역강화 등 건강제품을 선호하는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비타민 등이 포함된 과일주스 구매가 증가하였다.

Euromonitor에 따르면 2020년 과즙주스 수요는 전년 대비 41.4%가 증가한 74.1억 루피(한화 약 1,110억 원)를 기록했다.

- 특히 100% 과즙주스의 경우 82.3%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42.4억 루피(한화 약 635억 원)의 매출을 달성했는데 이는 소비자들이

인공적인 주스보다 천연과일로만 만들어진 고급 주스에 대한 선호가 크게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 주스 제조사들 역시 다양한 홍보와 함께 신제품 출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면역력 향상을 언급하며 한 팩으로 일일 비타민C 권장량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주스를 출시하거나, 수입품이 아닌 인도산 과일을 원료로 생산됨을 강조하는 홍보가 증가했다.

한국 상품 이미지

자동차, 전기·전자를 중심으로 한국계 기업이 높은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하드웨어 분야를 중심으로 한국 상품에 대한 인지도가 매우 높게 나타난다. 특히 삼성전자 인도법인의 경우 인도인들에게 인도산 브랜드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고, 현지 진출기업들이 'Make for India,' 'Make with India와 같이 현지에 녹아드는 마케팅을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인도 소비자들이 해당 브랜드를 친근하게 여기는 성향도 나타난다.

여기에 기업 진출명을 변경하면서 인도 소비자들의 이목을 끄는 사례도 있다. '19년 인도 시장에서 런칭한 이후, SUV 판매율 1위를 지키는 기아 모터스는 기아 인디아로 명칭을 바꾸는 등 친인 전략으로 한국산 제품 홍보에 나서고 있다. 가전분야에서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시장을 양분하고 있다. 인도 최대 가전 업체 LG 인디아는 '21년 1~3 월 분기에 가전 제품 판매로 55,000 백만 루피, 사상 최대의 매출액을 기록했다. 또한 자동차 분야에서는 현대자동차가 17%의 시장점유율로 2위를 차지했으며, 정부의 관심 시장인 전기자동차 분야에도 진출을 계획하는 등 친인도 전략을 수립했다.

유통소비재에 대한 현지 소비자의 인식 수준은 낮은 편인데, 네슬레, 킨더조이, 코카콜라와 같은 서구 글로벌 브랜드에 비해 한국 유통소비재 기업의 인도진출 시기가 늦은 편이기 때문이다. 롯데제과와 오리온이 초코파이 제품을 인도에서 런칭하였으며, 중소규모 업체를 중심으로 한국산 라면, 김 등이 수입되고 있다. 최근 들어 한국산 화장품의 현지 매출이 확대되고 있으나 아직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은 미미하다. 다만, 한-인도 CEPA에 따라 화장품은 대부분의 품목에서 기본관세율 0%가 적용되기 때문에, 가격경쟁력을 갖추고 한류 마케팅을 활용하여 시장점유를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2. 비즈니스 에티켓

가. 상거래 유의사항

상거래 시 유의사항

1) 품질 대비 가성비 강조

인도는 대표적인 저가 전략시장으로 알려져 있으나, 인도인 바이어들이 중시하는 것은 가격 대비 품질, 즉 가성비이다. 따라서 제품이 다소 가격이 높아도 품질이 우수하면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아직 인도 소비자의 수입 수준이 선진국 대비 낮고, 상대적으로 사업자의 자금력이 우수하지 않아 가격에 큰 민감성을 보이고 있어 일부 품목의 경우 중국산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우수한 한국산 제품을 인도 소비자 및 바이어에게 소구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조성하고 현지 산업계에서의 평판을 높여나가 장기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2) 계약서 작성은 신중히

인도인과 계약서 작성 시 사소한 사항까지 모두 계약서에 포함시켜야 하며, 인도인이 협상 중 “No Problem”이라고 대답했을지라도 이는 단지 “당신 의중은 알겠다”는 식이지 동의가 아니므로, 계약에 반영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인도인에게 최종 의사결정이란 계약이 아닌 하나의 과정의 의미에 가까우며, 체결을 앞두고 갑자기 협의된 사항을 변경하자는 제안이 들어오면 계약을 취소하려는 의사로 받아들이지 말고 차분히 대응해야 한다.

흔히 구사하는 전략으로 계약서에 자신에게 유리한 조항들로 모두 채우고 선심 쓰듯 하나씩 양보해주는 방법을 사용하여 상대방이 나머지 조건들에 대해 느슨한 대응을 하도록 유도하여 불리한 계약에 이르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따라서 계약서 초안을 한국 측에서 작성하여 인도 측이 수정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3) 지급조건과 판권 계약

인도 바이어와 거래 경험이 있는 업체들은 D/A, D/P 거래를 피할 것을 권하는데, 인도 바이어들이 상당 기간 정상 거래를 하다가도 외상 거래로 전환하면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계약상 위반 상황이 발생하면 우리 측은 절대적으로 불리하나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중재국을 제3국으로 해두는 방편도 고려해볼 만하다.

인도 바이어가 독점 계약 기간을 수년간 정해두고 경쟁국 제품만 취급하며 한국기업이 다른 바이어에게 공급하려고 하면 위반 클레임을 거는 경우가 있다. 독점수입 계약 기간은 짧을수록 좋으며, 계약금을 받아두면 계약 이행 및 공급 계약 체결을 독촉하는 방편으로 활용할 수 있다.

4) 결정권한이 있는 상대방과 협상할 것

인도 회사의 고용인들은 지시받은 대로 행동하며 설령 보스의 지시가 잘못되었음을 아는 경우에도 모든 결정권과 책임이 보스에게 귀속되기에 반박을 잘 하지 않는다. 인도의 경직된 계급 사회적 특성을 감안할 때 일반 직원이 상위 레벨의 관계자를 대면하게 되는 경우는 흔치 않기에 상위 직책을 가진 직원이 직접 미팅에 참석하여 결정권을 가진 사람과 상담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도인들은 협상이 생활의 일부로 뛰어난 언변과 능수능란한 협상력을 갖추고 있다. 인도 바이어는 가격 내리기와 조건 양보받기로 유명하며, 협상 과정에서 인내심과 침착함은 필수 요건이다. 공격적 협상 태도는 무례함으로 받아들이며 인도인들은 체면을 매우 중요시하기에 미팅 중 지적이나 비판에 신중해야 하고, 사전에 상세한 설명이 포함된 제안서를 보내면 담당자가 책임자에게 먼저 보고를 올려 관심을 높일 수 있다. 인도인은 대부분 뛰어난 기억력으로 협상을 유리하게 전개하며, 식사 자리에서 주고받은 이야기도 나중에 협상에 유리하게 이용하기도 한다. 관련 분야 지식도 상당한 수준이므로 계약 마지막 순간까지 사소한 이야기나 약속에 유의해야 한다. 미팅 후 협의 내용 요약서를 보내는 것도 좋다.

나. 상담 유의사항

상담 및 문화적 유의사항

1) 약속 잡기

인도인들은 시간을 지키는 것은 높이 평가하지만 스스로는 잘 실천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여 언제든지 약속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일정을 짤 필요가 있다. 인도 경영층은 보통 오전 10시에서 오후 4시 사이에 약속을 잡는 것을 선호하며, 인도 회사의 근무시간은 통상 9시 반~5시, 점심시간은 1~2시 사이라는 점을 유념하여 미팅 시간을 잡는 것이 좋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인도 출장에 제약이 많아 비대면 상담이 활발해져 있으며, 한국시간과의 시차(3시간 30분), 각 국가의 일반적인 업무시간을 고려해 상담을 희망하는 한국기업은 한국시간 기준 13:30~17:00에 상담을 요청하는 것이 좋다.

인도를 방문할 시 우기기간(6~10월 초)에는 많은 비가 내려 이동이 쉽지 않기 때문에 더위와 우기를 피할 수 있는 10월 말~3월 사이에 방문하는 것이 좋으며, 지역별로 서로 다른 공휴일들이 존재하고 해마다 날짜가 바뀌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스케줄 변경과 지연은 인도인과 사업을 하는 데 있어 자주 발생하는 부분이며, 인도의 문화 특성상 가정에 중요한 일이 발생하였을 때 또 한 비즈니스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인도 가정에서 아이들의 결혼, 관혼상제, 일가친척과 양친을 보살피는 것은 남성의 주된 의무이다.

2) 드레스 코드

남성은 정장을 갖추어야 하나 더운 날씨로 인해 양복 상의와 넥타이는 생략하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IT 분야의 경우 구두 대신 스니커즈를 신는 등 캐주얼한 의상이 보편화하여 있다.

인도 문화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족으로 된 의상은 피하는 것이 좋으며, 외국여성이라 하더라도 짧은 치마나 반바지 등은 피하는 것이 좋다. 여성은 보통 전통 의상이나 바지 정장(pantsuit)을 선호하는 편이다. 하지만 최근 도시 지역의 경우 이러한 경향이 점차 사라지면서, 전통의상의 경우 주요 행사 시에 한해 착용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3) 대화

대부분의 인도인들은 다양한 주제로 대화하는 것을 즐기며 비즈니스 미팅을 하면서도 가벼운 잡담으로 회의를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인도인들은 일반적으로 개방적이고 우호적이며 서구에 비해 사생활에 대한 관념이 낮은 편으로 지나치게 사적인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가족 문화와 활발한 커뮤니티의 특성상 인도인에게 있어 가족과 개인의 생활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는 것은 일반적이며 심지어 가족에 대해서 자주 물어보는 것을 우호의 표시로 해석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개인차가 있으며 처음 만난 사이거나, 적절하지 않은 자리에서 지나치게 사적인 질문을 하게 되면 큰 결례가 될 수 있으니 항상 이러한 상황과 질문에는 주의가 필요하며 상황과 분위기에 따라 적절히 조절하고 될 수 있으면 먼저 사적인 질문을 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도인들은 직접 반대 표시를 잘 하지 않는데 드러내 놓고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적대적인 태도로 인식하기에 주의가 필요하다. 인도인이 대화 도중 양옆으로 고개를 흔들거나 8 자형으로 빠르게 고개를 움직이기도 하는데, 이는 부정의 표현이 아니라 “당신의 말을 이해한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한국의 고개를 위아래로 끄덕이는 것과 같다고 보면 된다.

인도인은 귀납적 접근을 통한 인식 성향이 강하여 상대방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목적으로 주제와 맞지 않는 개인적, 사회적, 경험적 맥락에서 다방면의 질문을 던질 수 있어 혹 이러한 주제들이 나오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나가면 된다.

4) 화제

인도인들에게 있어 매우 인기 있는 세 가지 화제는 정치, 크리켓, 영화이며 정부에서 경제개발을 위한 다양한 인프라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어 경제개발 관련 주제도 추가되었다. 동 주제들에 대해 미리 사전 준비를 하고 비즈니스에 임하면 관계 형상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인도 사람들은 정치적 문제에 대해 토론하는 데 열광하지만, 특정 지역에 한정된 정치 이슈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 경우가 아닌 이상 언급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인도인들이 좋아하는 크리켓 게임의 경우 이는 단순한 게임이 아니라 국가적인 오락으로 몇몇 세계적 크리켓 선수들은 스타 대접을 받고 있다.

외국인을 만나면 인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자주 던지는데 이는 부정적인 의사표시를 기대하고 던지는 것이 아니기에 될 수 있으면 긍정적인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좋다.

5) 호칭

서구식으로 성이 이름 뒤에 명기되며 Mr. 또는 Ms.를 성 앞에 붙여 부르며 되나 이름 앞에 Dr.나 Professor가 명기되어 있으면 성 앞에 이러한 명칭을 붙이는 것이 좋다. 상대방의 직위나 나이가 높은 경우 Sir, Madam이라 부르는 것이 좋으며 정부 고위급 인사의 경우 존칭으

로 성명 앞에 Shri(슈리), 성명 뒤에 Ji(지)를 붙인다.

한 사람의 지위는 나이, 학력, 직업 카스트에 따라 정해지는 경향이 있으며 특히 정부 기관에 근무하는 것은 민간 부문에 종사하는 것보다 훨씬 고상한 것으로 인식된다.

6) 선물

선물을 받자마자 열어 보는 것은 예의가 아니며, 전달 시 가장 높은 직책의 임원에게 두 손으로 전달하는 것이 좋고 선물 포장은 흰색, 검정색은 피하고 녹색, 빨간색, 노란색을 쓰는 것이 좋다.

초대를 받았을 경우에는 초콜릿, 꽃 등의 작은 선물을 준비하거나 술을 마시는 사람에게는 수입 위스키가 아주 좋은 선물이 된다.

7) 인사

코로나19 이전 비즈니스 에티켓은 상대와 만남을 가지는 자리에서는 직위가 낮은 사람 혹은 예의를 표하고자 하는 사람이 먼저 손을 건네 악수를 청하는 것이 관례였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대부분 비즈니스 미팅이 비대면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때 첫 만남에서 두 손을 가지런히 모은 후 고개를 약 30도 정도 숙이며 '나마스떼'라는 말과 함께 만남 인사를 건네는 것이 예의로 자리 잡았다. 혹 대면 만남을 갖게 되더라도 '나마스떼'라는 말과 함께 인사를 건네거나, 접촉이 적은 팔꿈치를 살짝 부딪치는 것으로 인사를 대신한다.

3. 주요상거래 플랫폼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

1) Amazon.in(<https://www.amazon.in/>)

- 개요: 미국 뿐만 아니라 인도에서도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 주목받는 아마존은 소비자가 직접 판매 제품을 검색할 수 있으며, 연관된 판매자들이 판매하는 제품까지 고루 검색이 가능하다. 2022년 3월 기준, 인도 아마존은 10만 명이 넘는 판매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인도 뿐만 아니라 세계 185개국의 고객들에게 제품을 판매한다. 인도를 포함한 많은 나라에 진출해 있는 아마존은 전자상거래뿐만 아니라 E-Book, 비디오 스트리밍 등 서비스를 확장했으며 자체 브랜드 상품도 출시하고 있다.
- 설립 연도 및 매출규모, 고용인원: Amazon은 1994년 설립되었으며, 인도에는 2013년 6월에 첫 진출하게 되었다. 2019/20 회계연도 기준 매출규모는 26억 USD이며, 고용인원은 10만여 명이다.
- 주요 판매 품목: 가정 주방용품, 운동기구, 캠핑 장비, 게임, 장난감, 건강 유아용품, 미용제품, 개인 생활용품, 의류 신발, 장신구, 정원용품, 공구류 등 생활소비재를 주로 판매하고 있다.
- 특징: 아마존 프라임(Amazon Prime)이라는 회원제도를 통해 회원들에게 빠른 무료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 프라임데이(Prime Day), 각 축제일에 맞춘 할인행사(Great Indian Festival 등) 등 여러 할인 판매 이벤트를 통해 대규모 판촉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그 외에도 일정 제품을 짧은 시간 동안 상당히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는 번개딜(Lightning Deal), 핫딜(Hot Deal) 행사를 수시로 진행하고 있어 판매자는 홍보효과를, 소비자들은 저렴한 제품 구매가 가능하도록 프로모션을 진행해왔다. 하지만 이런 할인혜택은 2021년 정부에서 발표한 전자상거래 법안에 따라, 불공정거래로 판명되어 인도에서는 중단된 상황이다.

2) Flipkart(<https://www.flipkart.com>)

- 개요: 플립카트(Flipkart)는 인도 벵갈루루에 본사를 둔 전자상거래 기업이다. 초창기 인터넷 서점이었던 플립카트는 이후 전자기기, 패션, 가정용 소비재 등으로 판매품목을 확대했다. 2018년 5월 미국의 월마트(Walmart)가 플립카트의 지분 77%를 16억 USD에 인수하며 월마트의 자회사로 합병되었다.
- 설립 연도 및 매출규모, 고용인원: 플립카트는 2007년 10월 인도 벵갈루루에서 설립되었다. 2020/21 회계연도 기준 플립카트의 매출규모는 56.6억 USD이며, 고용인원은 1.6만여 명이다.
- 주요 판매 품목: 주 판매 품목으로는 전자기기, 전자제품 등이 있다. 삼성, LG 등 다양한 현지 및 글로벌 제품을 판매하며, 자체브랜드(DigiFlip)를 개발해 태블릿, USB, 노트북 가방 등의 제품도 판매하고 있다.
- 특징: 매시간 갱신되는 투데이딜(Deals of the Day)을 통해 전자제품에서 소비재까지 다양한 제품의 할인행사가 이루어진다. 기존 B2C시장에만 집중하던 플립카트는 2020년 9월 B2B시장 진출을 발표했으며, 거대 내수소비시장을 활용, 온라인 매출 증가를 꾀하고 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인도 전자상거래 이용자 수가 급증했으며, 이에 글로벌 펀드 기업들의 인도 플립카트에 대한 투자가 이어졌다. 플립카트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캐나다, 미국, 중국, 일본 등 여러 국가로부터 총 규모 36억 달러의 투자를 유치했다.

3) Snapdeal(<https://www.snapdeal.com>)

- 개요: 스냅딜(Snapdeal)은 아마존의 인도시장 진출 이전, 플립카트와 함께 인도 전자상거래 1,2위를 차지하던 온라인 쇼핑 플랫폼으로 전자제품과 패션, 가전제품 등 다양한 제품을 홍보하고 판매한다. 30만 명 이상의 판매자를 보유한 스냅딜은 홈페이지에 등록된 상품만 3,500만여 개에 이르며, 인도 6천여 개의 도시 및 지역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 설립 연도 및 매출규모, 고용인원: 스냅딜은 2010년 인도 뉴델리지역에 처음 설립되었다. 2020/21 회계연도 기준 스냅딜의 매출규모는 6,400만 USD이며, 고용인원은 3,700여 명이다.
- 주요 판매 품목: 가전제품, 유아용품, 의류, 미용제품, 주방용품 등 생활소비재 제품을 주로 판매한다.
- 특징: Toofani라는 자체 할인 프로모션을 통해 특별기간에만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기간별로 할인 품목 대상 카테고리 지정해, 해당 제품은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설립 이후 플립카트와 함께 인도의 핵심 전자상거래 업체로 주목받아 알리바바, 폭스콘, 소프트뱅크 등으로부터 15억 달러 이상의 투자를 유치했다.

4) India Mart(<https://www.indiamart.com>)

- 개요: 인디아마트(Indiamart)는 인도 온라인 B2B 전자상거래업체로, 제조 및 판매 업체들이 직접 플랫폼에 제품을 홍보하며, 직접적으로 고객들에게 연락을 받아 제품 판매 및 구매를 진행한다. 인도를 포함 세계적으로 1.3억 명의 소비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660만 명의 등록된 판매자가 7,400만 개 이상의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 설립 연도 및 매출규모, 고용인원: 1996년 노이다에 설립된 인디아마트는 인도 기업들을 위한 온라인 B2B 시장이다. 2020/21 회계연도 기준 인디아마트의 매출규모는 8,954만 USD이며, 고용인원은 2,754명이다
- 주요 판매 품목: 식품, 가전, 의류, 화장품 등 생활소비재 제품부터 농업기계, 의약품 원자재 등 공업제품까지 다양한 제품을 취급한다.
- 특징: 홈페이지상에 게시된 제품 가격이 있긴 하나, B2B 거래 특성 상, 다량의 주문 발주 시, 가격 조정

○ 특징: 홈페이지상에 게시된 제품 가격이 있긴 하나, B2B 거래 특성 상, 다량의 주문 발주 시, 가격 조정을 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구매자가 필요로 하는 제품에 대해 구매자 정보와 희망구매가격을 명시해 두면 판매자와 직접 연결되어 거래를 할 수 있다.

5) Nykaa(www.nykaa.com)

○ 개요: 나이카(Nykaa)는 화장품, 의류 제품만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뷰티 전자상거래 업체이다. 2021년 기준, 나이카 패션은 1,350개의 브랜드, 180만 개 이상의 의류 제품을 보유하고 있으며, 나이카는 2,400개의 브랜드, 190만 개 이상의 뷰티 제품을 보유하고 있다.

○ 설립 연도 및 매출규모, 고용인원: 화장품 전문 전자상거래로 2012년 처음 뭄바이에 설립된 나이카는 이후 2017년 나이카 패션을 론칭해 의류사업에도 참여하게 되었다. 2021/22 회계연도 기준 나이카 그룹의 총 매출규모는 2.87억 USD이며, 고용인원은 1,872여 명이다

○ 주요 판매 품목: 기초화장품, 헤어제품, 의류, 가방, 악세서리, 메이크업제품 등 다양한 의류 및 뷰티 제품을 취급한다.

○ 특징: 나이카는 설립 초 여러 화장품 브랜드 제품을 판매하는 뷰티 전자상거래로 시작 후 독자적인 화장품라인을 개발해 오프라인 매장까지 확장했다. 온라인 판매에서는 스포트라이트 할인(IN THE SPOTLIGHT)을 통해 대규모 브랜드, 제품에 대한 거대 할인행사를 진행하며, 다양한 DAY 소개와 동시에 그 날에 관련된 제품군 할인이벤트를 진행한다. 할인행사를 통한 홍보 외 다양한 인플루언서를 활용, SNS를 통한 제품홍보에도 집중하고 있다.

4. 현지 진출 성공사례

가. 성공사례

1) S사

- 인도시장 진출을 위한 사전상담 및 법인설립 지원 ('18. 2~4.)

S사 안과장 외 2명이 뉴델리 무역관을 방문하여 현지시장 진출 지원에 대해 상담했다. 이에 인도 시장, 경제에 관한 정보와 법인설립 정보를 안내하고, 인도 투자법률과 제도를 안내하였다. 이를 통해 인도 법인을 2018년 6월 설립하였다.

- 투자진출을 위한 사무실 및 공장부지 수배 지원 ('18. 5~10.)

S사의 요청으로 인도 뉴델리수도 광역권(National Capital Region) 지역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였다. 인도 발령 예정이었던 안 법인장과 현지 부동산 중개업자가 무역관에 방문하였고, 사무실 임대 및 공장부지 관련 미팅진행 및 현장 방문 지원하였다. 또한, 인도 컨설팅회사와 상담을 주선하고 법인 설립 진행 내역도 확인하였다.

- 현지 온라인 마케팅 유통망 진출지원 ('19. 2~5.)

주력 생산품인 핸드폰 케이스의 경우 온라인유통망을 중심으로 유통이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여, 인도 현지 온라인 유통망 진출을 추진하였다. 아마존, 플립카트 등 대표적인 인도 내 이커머스 회사들과 계약을 진행하였고 뉴델리무역관 자문 변호사를 동행하여 계약서 작성을 지원하였다. 특히 무역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아마존 인디아 최고운영자와 미팅을 주선하는 등, 온라인 유통망 시장개척을 적극 지원하였다.

- 채용 및 현지 노무관리 매뉴얼 작성 지원 후 공장 준공 ('19. 5~7.)

사무실 및 제조공장의 인도인 채용 및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노동법 자문 제공하였다.. 이를 통해 법인장 및 무역관 자문변호사, 실무진 등을 대동하여 수차례 실무미팅을 가졌으며 이를 통해 채용과 노무 관련 HR 매뉴얼을 작성하였다. 그 결과, 법인설립과 공장 설립을 순조롭게 진행하였고, 2019년 7월 공장 준공식을 개최하였다.

한국의 중소, 중견 기업이 인도 현지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한 사례이다. 법인설립 관련 단순 정보제공을 넘어서 계약 자문, 공장부지 물색, 온라인 유통망 진출 등을 아우르는 전천후 진출지원을 통해 성공 사례를 창출하였다. 또한, 채용 및 노무 매뉴얼 작성을 지원하는 등 현지에서 지속적으로 KOTRA 뉴델리 무역관과 함께하는 성공적인 기업으로써 목표한 매출액 달성을 지원하고 있다.

2) H사

H사는 1997년 인도 자동차 시장에 진출하였다. 당시 인도 법률상 외국기업의 단독투자 자체가 불가능했으나, 4억 달러의 초기투자과 부품 조달의 현지화율 약속을 시작으로 '21년 2월까지 약 40억 달러 투자를 감행하였다. 이에 첸나이 인근에 생산 공장을 건설하며 진출 2년 만에 소형차 시장 점유율 1위 차지하고 이후 공장 증설 및 제2공장 건설로 생산 능력은 70만대로 확장하였다. 최근 '22년 3월에 발표된 PLI(생산연계 인센티브) 자동차 및 부품 부문에 수혜기업으로 승인이 되었다.

- 진출 성공 과정

- 2006년 3월 진출 8년 만에 100만 번째 차량 생산에 성공
- 2012년 39만대 판매 14.9% 점유율
- 2015년 50만대 판매 17.3% 점유율
- 2015년 그랜드 i10과 그랜드 i20을 10만 대 이상 판매하며 '10만대 클럽'에 가입
- 2017년 52만대 판매 16.4% 점유율
- 2020년 17.4% 시장점유율
- 2021년 누적판매 900만대 달성

3) B사

B사는 2014년 7월 창업하여 인도시장에 진출하였다. 이 대표는 ○○○모바일 회사에서 통신사를 대상으로 서비스하고 있었기 때문에 통신환경이나 통신 사용자들의 패턴들을 잘 알고 있었고, 이에 인도에는 선불제 요금 사용자가 거의 95%인 것에서 가능성을 보고 '○○○'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인도에 진출하였다. 출시 3년 만에 5,000만이 넘는 다운로드수를 기록하고 또한 2017년에는 인도 선지급결제 PPI 라이선스(은행과 준하는 정식 금융사업을 할 수 있는 인증)를 국내 최초로 획득하는 등 소액대출, 공과금 납부 등 모바일 파이낸스 사업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2019년 다운로드수 7,000만 돌파하였다. 성공 요인으로 인도 도시지역에서부터 시골지역까지 ○○○앱을 알 수 있도록 접근하였다. 또한 불특정 다수 고객에게 1:1 마케팅을 진행하지 않고, 현지에 로컬 판매 에이전시와 계약을 맺어 마케팅을 펼치는 영업 전략을 사용하였다. 특히, 주변의 지인을 초대하여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면, 무료 통화와 보상 서비스 등을 제공하였다.

추가로 영문뿐만 아니라, 힌디어, 타밀어, 펀자브어 등 인도의 다수의 언어로 번역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4) S사

S사는 2007년 뉴델리에 처음 진출했으며, 2012년부터 뉴델리에 무역법인을 운영해왔다. 2016년부터는 푸네 지역에 초고압 차단기 생산공장을 설립하면서 사업을 확대했으며, 현재는 연 3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기록 중이다. 또한, S사는 2018년 2월 18일에 인도 뭄바이에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2019년까지 마하라슈트라주에 스파덱스 공장을 건립하기로 합의하여 인도 마하라슈트라주의 산업도시인 아우랑가바드시 인근의 아우릭 공단에 약 12만 평(40ha) 규모의 부지를 마련하고, 2019년에 공장 건립을 완료하였다. 2019년 9월부터 본격적인 생산을 진행하며 2020년 3월 공장가동 7개월 만에 코로나19로 인해 잠시 공장가동을 중단했으나 2021년 인도의 폭발적인 스파덱스 수요 증가로 인해 인도 시장 점유율 60%를 기록하였으며, 2022년 하반기 추가 증설을 통해 인도 내 점유율을 추가 선점할 계획을 밝혔다.

5) D사

단독 투자로 인도에 진출한 D사의 인도법인은 2011년에 인도 보일러 제조업체인 A사를 인수하면서 2012년 인도 국영 에너지회사인 N사로부터 13억 불 규모의 프로젝트를 수주하기도 하였다. 그 외에도 D사는 인도 L 화력발전소(2010년), M 화력발전소(2008년), S 화력발전소(2004년) 프로젝트를 수행한 바 있으며, 최근에도 인도 내 발전소, 담수화 플랜트 등 건설분야 및 장비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6) S사

2012년 인도 지사를 설립한 진단키트 제조사인 S사는 초기 딜러망을 통해 인도 시장 진출을 시작하며, 좋은 성과를 거두었으나 판매 단가에 비해 높았던 관세와 운송비용으로 2017년 인도 마네사르 지역에 자체 공장을 설립하였다. 이후 제품 설명회 등을 통해 영업활동, 고객 지원, 사후 처리 등을 원활하게 하며 기업 신뢰도를 높여왔다. 진출 2년여 만에 매출 250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매년 70% 수준의 빠른 성장세를 기록했다. 특히 2020년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되면서, 인도 정부로부터 코로나19 진단키트 제조 라이선스를 취득하고 현지 공장 생산량 확대와 함께 추가 공장을 구축하는 등 활발한 투자활동을 통해 인도 항원검사 시장을 장악했다. 최근에는 신약개발 및 비유럽권 시장 진출을 위해 적극적인 관계사 M&A 전략을 구사하고 있으며, '21년 11월에는 463억을 들여 E사 지분 100%인수, '22년에는 진단 기기 업체인 B사를 162억원에 인수하였다.

5. 출입국 안내

가. 비자

종류 및 발급절차

※ 인도정부는 2020년 10월 23일 E-Visa, 관광비자, 의료목적 비자를 제외한 모든 비자에 효력정지를 해제했으며, 2021년 10월 15일부터 관광비자 및 관광 도착비자 신규발급을 재개했다.

※ 2022년 5월 기준 모든 비자가 정상적으로 발급 되고 있으나, 실제 비자가 발급되는데 더 긴 시간이 소요되거나, 추가 서류가 요구되는 등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규정이 계속 수정되고 있으므로, 비자 발급 시 비자 접수센터를 통해 변동 사항이 있는지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입국 가능 대상 및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다.

1) 입국 가능 대상

- 외교관용비자, UN 등 국제기구, 고용프로젝트 비자, 비즈니스 비자(스포츠용 B-3 제외) 소지자
- 외국 의료전문가, 보건연구원, 엔지니어 및 기술자(인도에 있는 공인 및 등록된 의료 시설, 제약 회사, 대학의 초청장 필요)
- 외국인 기업체의 엔지니어링관리설계 담당 또는 기타 전문가(금융, 제조, 설계, 소프트웨어 및 IT 분야 포함)
- 인도 기업체 초청의 기계 및 장비 시설의 설치수리유지보수 기술 전문가 및 엔지니어(장비 설치, 보증 기간 내 또는 판매 후 서비스 또는 수리가 이에 해당)
- 고용비자 소지자의 가족, 인도인과 결혼한 외국인 또는 부모 중 1명이 인도인인 자녀 등
- 대사관, 국제기구 등에서 근무하는 직원 동반가족
- 인접국가에서 본국 또는 다른 국가로 환송하려는 외국인
- 치료 목적의 의료관광(간병인 1명 포함)

2) 신청방법

인도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비자가 필요하다. 비자 신청인은 승인받은 비자의 방문 목적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하며 승인받은 비자 목적 외의 업무를 하는 경우 법적 조치나 강제 추방을 당할 수 있다.

한국과 인도는 양국 협정에 따라, 2005년 10월부터 외교관 여권 및 관용여권 소지자는 최대 90일까지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다.

비자 신청 시, 공통으로 비자 신청서, 인도 비자용 사진 2장, 여권, 여권 사본 1장,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앞면 사본 1장, 무통장 입금증 혹은 온라인 이체 확인증, 인도비자 접수센터 예약완료 확인증을 준비해야 한다. 이외 기타 필요 서류들과 개정사항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인도비자접수센터: <https://visa.vfsglobal.com/kor/ko/ind>
- Bureau of Immigration: <https://boi.gov.in/>
- 주 인도 대한민국 대사관: <http://overseas.mofa.go.kr/in-ko/index.do>

비자 종류는 아래와 같다.

1) 관광비자

- 신청자격: 관광비자는 인도 방문의 주목적이 여가, 관광, 친구와 가족을 만나기 위해 방문하는 것이어야 한다. 관광비자는 비즈니스회의를 비롯한 기타 활동이 허용되지 않으며 비즈니스 회의 목적으로 인도에 입국할 경우, 상용 비자를 신청하여야 한다.

○ 체류기간: 일반적으로 한번 입국 시, 90일로 제한되어 있으며 현지 연장 및 타입 변경이 불가능하며 비자 유효기간은 주한 인도대사관으로부터 비자가 발급되는 날부터 시작된다.

○ 제출서류: 공통적인 필요 서류뿐만 아니라 인도방문 여행 일정표(방문 도시/날짜 등을 모두 포함하여 영문으로 작성, VFS 인도비자접수센터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가능), 여행티켓, 잔고증명서 미화 5,000달러 이상 보유)를 제출하여야 한다.

○ 발급절차

- 인도비자접수센터에서 본인의 방문 목적에 맞는 비자 체크리스트를 확인한 후 명시된 필요서류 준비
- INDIAN VISA ONLINE(<https://indianvisaonline.gov.in/visa/index.html>) 사이트에 접속하여 온라인신청서(Regular Visa Application) 작성
- 온라인으로 준비하시는 서류를 스캔하여 해당 항목에 업로드
- 인도비자접수센터에서 온라인신청서 작성 대행 서비스 제공 중
- 비자 발급을 위한 수수료 확인 후 온라인이체 또는 무통장입금으로 결제
- 인도비자접수센터 온라인예약(<https://www.vfsvisaservice.com/IHC-SouthKorea-Appointment/AppScheduling/AppWelcome.aspx?P=cCiy6xeqlBWf0MSvIUERSDLPTGMQfaKiXNB3g21Kz0Q%3d>) 사이트에 접속하여 방문날짜와 시간예약
- 수수료 결제 후 이체 확인증과 신청서/구비서류를 지참하여 비자접수센터 방문

2) 상용비자

○ 신청자격: 회사의 미팅 및 단기간 기계설치, 마케팅 분석을 위하여 방문하는 신청인에게 해당된다. 인도에 회사를 설립한 사업주 신청인은 상용비자(사업주용)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 체류기간: 일반 상용비자는 출장 명령서나 초청장 내 한 번 입국의 체류기간이 180일을 넘길 수 없다. 사업주용 상용비자는 도착 후 14일 이내에 외국인 등록 후 장기체류가 가능하다.

○ 제출서류

- 일반, 사업주용 공통필요서류 (여권, 사본, 최근 촬영된 사진 2장, 등)
- 인도 회사의 초청장(발행일 포함)과 사업자등록증 사본
- 여권과 동일한 신청자 성함
- 한국 회사에서 발행된 영문 출장증명서 원본
- 개인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제출
- 1년 이상의 상용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추가서류(한국 회사의 사업자 등록증, 세금내역서, 인도 회사의 세금 내역서)와 함께 인터뷰 필요
- 사업주 상용비자를 신청할 경우, 인도회사 사업자등록증, 인도 회사정관, PAN카드 사본, 임대 계약서, 최근 2년간 회사 세금 내역서, Turnover Certificate, 최근 6개월간의 회사통장(인도은행) 거래 내역서, 회사프로필을 증빙 서류로 추가 제출

○ 발급절차

- 관광비자 발급절차와 동일 / 사업주의 경우 인터뷰가 필요하므로 오전 9~10시 사이 비자센터 방문 필요

3) 도착비자

인도 정부는 2018년 10월 1일 이후 인도를 방문하는 우리 국민에 대하여 도착비자(Visa On-Arrival)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022년 5월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으로 중단되었던 도착비자는 2022년 9월 발급을 재개하였지만, 현지에서 발급절차가 원활하지 않은 상황인 점에 유의해야 한다.

(참고) 도착비자 세부 사항

도착 비자발급을 위해 2,000루피 또는 2,000루피 상당 외화(신용카드 가능)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도착비자는 외교관/관용 여권 소

지자, 신청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부계 또는 모계)가 파키스탄에서 태어났거나 파키스탄 영주권자인 경우에는 발급되지 않는다. 또한 도착비자는 연장 또는 다른 비자로 변경이 불가능하다.

○ 신청자격

- 관광, 상용, 회의, 진료 목적으로 최대 60일 이내 체류 예정으로 인도를 방문하는 자
- 인도에 거주하지 않고 인도에 직장이 없는 자
-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는 자
- 충분한 여행경비 소지자(왕복 또는 제3국행 항공권 소지 포함)
- 인도 정부의 기피대상 인물(입국금지자 등)이 아닌 자
- 인도 입국에 바람직하다고 간주되는 자

○ 체류기간

- 입국일로부터 최대 60일간 체류할 수 있으며, 체류기간 60일 이내에 1회 더 출입국 할 수 있다(더블엔트리 비자). 그러나 체류기간이 총 60일을 초과하여 체류할 수 없다.

○ 도착비자 부여 공항

- 델리, 뭄바이, 첸나이, 콜카타, 벵갈루루, 하이데라바드(6개에 한하며 출국은 제한 없음)

○ 발급절차

- 신청인은 도착비자신청서(VOA Application form) 및 입국카드(Disembarkation Card) 작성
- 신청인은 비자 접수창구(Visa Counter)에 여권 및 도착비자 신청서를 제출
- 이민국 직원은 도착비자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서에 'Scrutinized' 도장을 날인하고, 신청인에게 수수료를 지불하도록 안내
- 신청인은 수수료를 납부한 후 비자 접수창구에서 지문과 안면 촬영을 하고, 수수료 지불 사실을 확인받음
- 이민국 직원은 여권에 도착비자와 입국심사인을 날인하고 입국카드 수고
- 여권에 도착비자(타원형 도장)와 입국심사인이 날이되어 있는지 필히 확인

4) E-VISA

E-Visa에는 전자 관광 비자 (30일/ 1년/ 5년), 전자 비즈니스 비자, 전자 회의 비자, 전자 의료 보조 비자 및 전자 의료 비자.와 같이 5개의 범주가 있다.

전자 관광 비자는 30일 25달러, 1년 40달러, 5년 80달러이고 2.5%의 결제 수수료가 부과된다. 인도 입국 전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기 때문에 늦어도 반드시 4일 전에는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한다.

○ 체류기간 : 일반적으로 한번 입국 시, 관광 비자 최대 90일, 비즈니스 비자 최대 180일(180일 이상 머물 경우 FRRO 2주 내 등록), 회의 비자 최대 30일, 의료 보조 및 의료 비자 최대 60일로 제한되어 있으며 현지 연장 및 타입 변경이 불가능하며 비자 유효기간은 신청 사이트에서 비자가 발급되는 날부터 시작된다.

○ 발급절차 : <https://indianvisaonline.gov.in/evisa/tvoa.html> 온라인 신청

5) 경유비자

인도에서는 환승객이 입국장 밖으로 나가 수하물을 찾고 다시 입국 수속을 밟을 때 비자가 필요하다. 필요 서류로는 제3국으로의 항공티켓 등이 있다.

※ 인도 공항에서 제3국행 항공편 탑승을 위하여 입국 심사대를 통과하지 않고 대기하는 경우에는 비자를 받을 필요가 없다

○ 비자기간 15일 단수

○ 체류가능시간: 72시간

○ 발급절차 : <https://indianvisaonline.gov.in/evisa/tvoa.html> 온라인 신청

6) 비자 연장

인도에서 체류 중 체류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사무소(FRRO)에 신청하면 된다. 비자를 연장할 경우 단기 비자는 180일까지 연장 가능하며, 추가 비용은 필요 없고 여권과 사진이 필요하다. 연장 기간이 180일 이상의 경우는 특별한 경우에 한해 허용된다. 관광비자 및 도착비자는 연장 또는 다른 비자로 변경할 수 없다. 관련된 서류를 모두 구비한 경우에도 FRRO에서 특정한 기준 없이 서류미비를 빌미로 발급하여주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에 비자연장을 미리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7) COVID-19 인도 입국 정보

2022년 5월 기준 모든 인도 입국자는 온라인 시스템 내 지난 14일간 해외 방문국을 기재해야 하며, RT-PCR 음성지, 백신 접종 증명서를 지참 및 Air Suvidha 홈페이지에 등록해야 한다. 도착 시, 14일 내 위험국(at risk countries)을 방문하지 않은 경우 코로나 검사가 의무는 아니나, 일부 인원(2%)을 선별해 무작위 코로나 검사가 진행된다.

* Air Suvidha 등록 홈페이지 : <https://www.newdelhairport.in/airsuvidha/apho-registration>

* 경유지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으며,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계속해서 입국 규정이 수정되고 있으므로, 입국 시점에 재확인 요망

* 2022년 5월 7일 인도 보건가족복지부에서 대한민국을 백신상호인증 국가로 지정, 발표함에 따라 인도 입국 시 백신접종 완료 증명서(국내 백신 및 교차접종 인정)을 소지한 자의 경우 RT-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할 필요 없음. 그러나 인도에서 한국으로 입국 시에는 기존과 같이 출발시간 기준 72시간 이내 검사한 RT-PCR 음성확인서가 필요함.

나. 휴대품 통관

휴대품 면세

1) 휴대품 면세 한도

○ 휴대물품의 정의

- 물품의 수량 또는 가격이 상업용이 아니라고 판단되고, 여행자가 개인용 또는 선물용으로 휴대하는 신품 또는 중고 물품이다. 직업용 품은 장치 또는 설치가 필요한 기계류는 제외하며 통상적으로 운반할 수 있어야 한다.

○ 휴대물품의 면세 한도

- 네팔, 부탄 및 미얀마를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 귀국하는 인도 내국민 또는 인도 거주 외국인(거주증 소유)일 경우, 아래 공통 면세물품 제외 최대 50,000루피 면세

- 인도 출국 3일 이내 출국 시 10살 이상의 여행객은 최대 12,000루피, 10살 미만의 여행객은 최대 3,000루피 상당의 물품 면세

- 인도 출국 3일 이후 재입국 여행객에 대해서는 10살 이상의 여행객은 최대 25,000루피, 10살 미만의 여행객은 최대 6,000루피 상당의 물품 면세

- 2세 이하의 유아의 경우, 개인 사용물품 이외 면세한도 없음

○ 공통 면세 물품

- 개인사용 물품 및 기념품은 면세된다.

- 2L를 초과하지 않는 주류는 면세된다.

- 껌담배 100개비, 시가 25개비 또는 잎담배 125gm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면세된다.

- 18세 이상의 여행객의 노트북 1개까지는 면세된다.

○ 휴대물품의 관세 징수

- 초과된 면세한도 물품에는 기본관세 38.5% 부과된다.
- 초과된 위스키에는 기본관세 150% + 추가관세 4%가 부과된다.
- 초과된 맥주에는 기본관세 100% + 교육세 3%가 부과된다.
- 초과된 담배에는 기본관세 100% + 교육세 3%가 부과된다.

2) 외화 반·출입 한도 및 신고필요 반입물품

외국인의 경우 개인사용 보석류를 제외한 모든 보석류는 신고대상이며, 5,000달러 이상의 외화를 소지하고 인도 출입국 시에는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5,000달러 미만 휴대 시 신고 불필요).

- 5,000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을 소지하고 인도를 출입국 할 시에는 해당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 10,000달러 이상의 현금 또는 그에 상응하는 물품과 함께 인도를 출입국 할 시에는 해당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 보석류의 경우 인도인에 한해 남성의 경우 25gm 또는 50,000루피 가치까지, 여성의 경우 40gm 또는 100,000루피까지 면세되나 외국인의 경우 개인 사용 보석류를 제외한 보석류는 신고대상이다.
- 동식물 및 그 추출 및 가공품은 모두 검역절차를 거쳐야 하며, 무기 · 탄약 · 폭발물, 방사능 관련 물질, 영화필름 등은 각각의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소관기관의 수입허가를 받아야 한다.
- 2019년 10월 1일 이후 인도는 모든 전자담배와 관련 상품과 부품의 전면 수입, 수출 및 사용을 금지하였다. 위반 시 10만 루피의 벌금과 1년 이하 구속될 수 있으며 반복 위반 시 50만 루피와 3년 이하 구속될 수 있다.

6. 유관기관

가. 대사관 및 한국기관

○ 주 인도 한국대사관

전화번호	+91-11-42007000
주소	9, Chandragupta Marg, Chanakyapuri Ext. New Delhi- 110021
홈페이지	http://overseas.mofa.go.kr/in-ko/index.do

○ 인도 한인회

전화번호	+91-11-6514443
주소	Plot No. 90, Urban Estate, Sector-28, Gurgaon-122002, Haryana
홈페이지	http://indo.korean.net/

○ 한국문화원

전화번호	+91-11-4334-5000
주소	25-A, Ring Rd, Vikram Vihar, Lajpat Nagar IV, Lajpat Nagar, New Delhi,
홈페이지	http://india.korean-culture.org/ko

<자료원 : 동 사이트 및 KOTRA 뉴델리 무역관 자료 종합>

나. 현지정부 및 언론기관

○ 연방정부 사무소

전화번호	+91-11-2806-3684
주소	90 Killa, Rezag La Marg, Bijwasan, New Delhi, Delhi 110061
홈페이지	https://www.india.gov.in/

○ 인도 상공회의소(FICCI)

전화번호	+91-11-2373-8760(70) / 11-2348-7433
주소	1 Federation House, Tansen Marg, Todermal Road Area, Mandi House, New Delhi, Delhi 110001

홈페이지	http://www.ficci.com
------	---

○ 인도 연합 상공회의소 (ASSOCHAM)

전화번호	+91-11-4655-0555
주소	4th Floor, YMCA Cultural Centre and Library Building, 01, Jai Singh Road, New Delhi - 110001
홈페이지	http://www.assochem.org

○ 인도 자동차부품 제조협회 (ACMA)

전화번호	+91-11-2616-0315
주소	Capital Court, Block BH, Munirka, New Delhi, Delhi 110067
홈페이지	http://www.acma.in

○ 인도전자부품 산업협회 (ELCINA)

전화번호	+91-11-4161-5985
주소	Elcina House, 422, Okhla Industrial Estate, Phase-III, New Delhi, Delhi 110020
홈페이지	http://www.elcina.com
비고	* 한국에서는 링크가 열리지 않을 수 있음

○ 인도 수출협회 (FIEO)

전화번호	+91-11-2615-0101(04)
주소	Rao Tularam Marg, Subroto Park, Shankar Vihar, New Delhi, Delhi 110057
홈페이지	https://www.fieo.org/

○ 인도 산업연합 (CII)

전화번호	+91-12-4401-4060
주소	The Mantosh Sondhi Centre 23, Institutional Area, Lodi Road, New Delhi - 110003 (India)
홈페이지	https://www.cii.in/

○ 인도 무역진흥기구 (ITPO)

전화번호	+91-11-23371540
주소	Pragati Bhawan, Pragati Maidan, New Delhi-110001 (INDIA)

홈페이지	http://www.indiatradefair.com
------	---

○ 인도 식품안전기준청(FSSAI)

전화번호	+91-1800-11-2100
주소	03rd & 04th Floor, FDA Bhawan, Kotla Road near Bal Bhawan New Delhi - 110002 India
홈페이지	https://www.fssai.gov.in/

○ 인도 간접세 관세 위원회(CBIC)

전화번호	+91-011-2309-2849
주소	J684+843, North Block, Central Secretariat, New Delhi, Delhi 110001
홈페이지	https://www.cbic.gov.in/

○ 델리 관세청

전화번호	+91-011-2565-4160 / 011-2309-2849
주소	NEAR IGI AIRPORT, New custom house, Indira Gandhi International Airport, New Delhi, Delhi 110037
홈페이지	http://delhicustoms.gov.in

○ CDSCO

전화번호	+91-011-2323-6965
주소	FDA Bhawan, Kotla Marg, ITO, Mandi House, New Delhi, Delhi 110002
홈페이지	https://cdsco.gov.in

<자료원 : 동 사이트 및 KOTRA 뉴델리 무역관 자료 종합>

7. 물가정보

가. 물가정보 표

1 USD : 81.37

No	구분	품목	단위	금액(USD)
1	식품	햄버거(맥도날드 빅맥)	단품	1.950
2	식품	돌솥 비빔밥	1인분	8.600
3	식품	김치찌개	1인분	7.370
4	식품	신라면	1봉지	1.340
5	음료	커피(스타벅스-아메리카노)	1잔	2.270
6	음료	생수 (마트, 최저가)	500ml	0.120
7	음료	코카콜라(마트, 최저가)	600ml	0.470
8	의료	항생제	12정	0.630
9	교통	시내버스요금	기본요금	0.250
10	교통	지하철요금	기본요금	0.240
11	교통	택시요금	기본요금	0.800
12	서비스	헤어컷 (시내중심가, 외국인 애용)	1회	9.830
13	서비스	무연휘발유 1L	1L	1.190
14	서비스	전기요금	1Kwh	0.080
15	서비스	영화입장권	일반	1.380
16	여가	담배 (말보로라이트)	1갑	4.060
17	여가	소주 (한식당내 판매최저가)	360ml	11.060
18	임금	대출-사무직 초임 평균임금	월	215.070
19	학비	국제/사립학교(고등학교 3학년) 평균 수업료 (구르가온 AES 기준)	연간	30535.000
20	금리	중앙은행 기준금리	%	5.400

<자료원 : KOTRA 뉴델리 무역관>

8. 출장정보

가. 환전

통화체계

인도의 화폐단위는 루피(Rupee)와 소수점 아래 단위인 파이사(Paise)를 사용하며, 파이사의 경우 일상에서 거의 쓰이지 않는다. 루피화는 화폐 수량 단위로는 'Rs'로 표기되며 국제환표기시에는 INR로 표현된다. 지폐로 2,000, 500, 200, 100, 50, 20, 10루피가 있으며, 주화로 10루피, 5루피, 2루피, 1루피가 있다. 1루피는 한화로 대략 16.6원가량의 가치를 지닌다('22.4.28. 기준). 현지에서 루피화 이외의 통화 거래는 엄격히 금지되며, 달러의 경우 해외여행이 아닌 한 현금인출 및 해외 이체가 통제되고 있다.

환전방법

환전은 공항, 호텔, 은행 등의 공식적인 환전소에서 수시로 가능하나, 현지에서 달러를 루피로 환전 시 외화 환전 수수료가 높기 때문에 한국의 외국환 거래 은행에서 미리 바꾸어 오는 것이 좋다. 비공식 환전소의 경우 공식 환전소에 비해 환전에 유리한 경우가 있으나, 인도에서는 위조화폐가 유통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환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비공식적인 환전소에서 환전할 경우, 2,000루피와 같은 고액 화폐는 받지 않는 것이 좋다. 인도 경제 수준에 비해 지폐의 가치가 매우 높은 편이기 때문에, 2,000, 500루피보다는 200, 100, 50루피와 같은 잔돈을 넉넉히 구비하는 것이 거래 시 거스름돈을 제대로 돌려받거나 지불하는 데 도움이 된다.

신용카드 이용

도시지역에서는 신용카드 및 현금카드의 사용뿐 아니라 Paytm, Google pay 등 디지털 결제가 보편화되어 있다. 또한 출장자의 경우 한국발행 카드이더라도 비자, 마스터카드 등 대부분 국제카드사의 결제망을 사용하는 카드는 현지 결제가 대부분 원활하게 이루어진다. 다만, 뉴델리, 첸나이 등 대도시를 벗어나거나 시골 지역의 경우 카드 결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나. 교통

교통상황

인도의 도로망은 아직 열악한 편이며 출퇴근 시간에는 교통체증으로 인해 도로가 몸살을 앓는다. 아침 출근 시간인 8시 이후부터는 대부분의 도로가 심각하게 정체되며 퇴근길 정체 시간은 5시부터 시작이 된다. 순환도로나 우회로가 충분히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중요한 일정의 경우 예정시간보다 30분에서 1시간 가량 미리 출발하는 것이 좋다.

인도는 한국과 운전면허와 관련된 조약이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국제면허증을 가지고 자가운전을 할 수가 있다. 하지만 자동차의 핸들이 오른쪽에 위치해 있고, 인도의 도로 정체가 심하고 외국인의 경우 사고 발생 시 적절한 대응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다수의 주재원은 택시를 사용하거나 운전기사를 고용하여 차량을 운행하고 있다.

버스

시내, 시외, 장거리 버스 등 다양한 노선이 운행되고 있으며, 일반 시내버스의 경우 요금이 저렴하지만, 외국인의 경우 안전 상의 이유와 언어소통 등 애로사항으로 버스를 거의 이용하지 않는다. 특히, 여성에 대한 버스 내 강력범죄 사례가 잇따라 보고됨에 따라 버스 사용을 권하지 않는 편이다.

하지만 여행 시 장거리 버스는 이용 편의성과 저렴한 가격으로 자주 사용되는 교통수단이다. 대표적인 관광루트인 뉴델리-자이푸르 여행 시, 슬리핑버스를 이용하면 약 8시간 거리를 누워 쉬면서 갈 수 있다는 장점과 함께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 비용은 한화 약

12,000원 정도이다.

택시

택시는 택시운송사업자의 정식 택시와 애플리케이션 기반의 공유차량 사업자의 택시, 개인 운영 택시로 나뉜다. 인도에는 Meru, Radio Taxi와 같은 운송사업자와 개인택시가 한때 시장을 지배하였으나, 2015년 4G 통신망 서비스 도입 이래 애플리케이션 기반의 공유차량 사업자와의 경쟁에서 힘겨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4G 통신망 정착 이후, 한국의 카카오 택시와 유사한 차량 호출 서비스가 도입되었다. 우버(Uber) 및 올라(Ola)가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며, 운전사와의 별도 네고 절차 없이 경로, 거리를 기반으로 요금이 자동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사기 당할 위험이 적어지고, 외국인으로서도 이용이 편리하다. 또한, 해당 서비스는 해외결제카드와 전화번호 등록만으로 사용할 수 있어 편리하고 저렴한 것이 장점이다. 교통상황에 따라 다르나 대략 10km당 200루피 정도 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일반 길거리에서 잡을 수 있는 릭샤와 달리, 우버 및 올라는 운전사가 회사에 등록되어 있고, 회사 차원으로 운영하므로 안전성 측면에서는 선호되어 현지 여성들의 경우 운송사업자 택시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코로나19 이후, 지폐사용을 자제하게 되면서 대부분이 디지털 결제를 통해 계산하는 방법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택시 기사들이 지폐를 가지고 다니지 않는 경우가 많아 현금 결제 시 거스름돈을 꼭 챙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 통신

핸드폰

2015년 4G 통신망 서비스가 도입된 이래 통신망의 확충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져 인도 내에서 무선통신과 데이터 서비스 사용에 큰 문제가 없다. 인도에는 Airtel, Vodaphone, Reliance Jio와 같은 통신망 사업자가 있으며, Airtel이 가장 많은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다. 통신망 사업마다 지역별 기지국 인프라 설치 현황, 가격이 다양하므로, 일정 지역의 경우 특정 통신망 사업자의 서비스가 이용에 더 유리한 경우도 있다.

단기 체류 여행객의 경우, 공항이나 대형 쇼핑몰에 위치한 통신사 매대에서 USIM을 구입하여 사용할 수가 있다. 여권과 핸드폰을 제시하면 단기 체류용 USIM을 설치해준다. 거주자의 경우, 핸드폰 이용을 위해서는 각 통신사 서비스 센터를 방문하여, Prepaid(선불결제)의 경우 여권, 비자 사본, 증명사진, 신청서 등을 제출하여 개통 신청을 하면 약 48시간 이내에 개통된다. PostPaid(후불결제)의 경우, 상기 서류 외에도 거주증명서와 같은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하다.

인터넷(와이파이)

유선 인터넷의 경우 지역의 유선 인터넷 및 케이블 사업자와의 계약을 통해 이용할 수가 있다. 지역마다 사업자가 제각각이기 때문에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은 물론, 거주 건물에 해당 사업자의 인터넷 및 케이블망 사용이 가능한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대개 케이블 사업자가 인터넷 사업자를 병행하는 경우가 많으나, 한국의 경우와 유사하게 케이블과 인터넷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 할인혜택을 주는 경우가 많다. 대개 한국과 같이 기간 약정을 계약조건으로 제시한다. 인터넷의 경우 전송 속도와 제한 용량에 따라 가격이 다르지만, 대개 월 900-2,000 루피가량의 서비스를 이용하게 된다.

공공장소에서의 와이파이를 공항을 제외하면 거의 제공되지 않는다. 공항 와이파이 사용도 현지 번호가 있어야 사용이 가능하기에 인도 번호가 없는 출장자의 경우 공항 와이파이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 호텔이나 커피숍 등에서는 와이파이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는 투숙객이나 이용객에 한정된다. 도시 지역을 벗어난 소도시 지역의 경우 와이파이 자체가 없거나, 무선 인터넷 또한 느린 경우가 많으니 유의해야 한다.

라. 관광명소

○ 붉은요새(Red Port)

도시명	뉴델리
주소	Netaji Subhash Marg, Lal Qila, Chandni Chowk, New Delhi, Delhi 110006
운영시간	화~일: 오전 9시30분~오후 4시30분
휴무일	월요일 및 공휴일
명소소개	무갈왕조 제5대 황제 샤자한이 건설(1639~1748년)한 성으로 올드델리의 대표적 관광 명소로 붉은 빛의 사암으로 지어져 '붉은 성'이라는 이름을 얻었다.
비고	전화: +91 011-2327-7705 홈페이지: https://delhitourism.travel/red-fort-lal-kila-delhi

○ 인디아 게이트(India Gate)

도시명	뉴델리
주소	Rajpath, India Gate, New Delhi, Delhi 110001
운영시간	종일
휴무일	연중 무휴
명소소개	제1차 세계 대전에 참전하여 전사한 9만 명의 인도 병사를 위한 높이 42m의 위령비이다.
비고	홈페이지: http://www.delhitourism.gov.in/delhitourism/tourist_place/india_gate.jsp

○ 쿠투브 미나르(Qutab Minar)

도시명	뉴델리
주소	Mehrauli, New Delhi, Delhi 110030
운영시간	월~일: 오전 7시~오후 5시
휴무일	연중 무휴
명소소개	이슬람 세력이 인도를 정복한 기념으로 세운 높이 73m의 탑(1215년)이다.
비고	홈페이지: http://www.delhitourism.gov.in/delhitourism/tourist_place/qutab_minar.jsp

○ 라즈가트(Raj Ghat)

도시명	뉴델리
주소	Behind Red Fort, New Delhi, Delhi 110006
운영시간	월~일: 오전 6시30분~오후 6시

휴무일	연중 무휴
명소소개	마하트마 간디 묘소(1948년 1월 유해를 화장했던 장소)로 근처에 간디 기념관이 있다.
비고	홈페이지: http://www.delhitourism.gov.in/delhitourism/tourist_place/memorial_delhi.jsp

○ 타지마할(Taj Mahal)

도시명	아그라
주소	Dharmapuri, Forest Colony, Tajganj, Agra, UP 282001
운영시간	월~일(금요일 제외): 일출 전 30분~일몰 전 30분
휴무일	금요일
명소소개	아그라(델리에서 남동쪽으로 약 220km)에 있는 세계 7대 불가사의의 하나로 꼽히는 건축물로, 무갈 제국의 제5대 황제 샤 자한이 죽은 왕비를 위해 지은 무덤이다. (1631년 건축 시작, 1653년 완성)
비고	전화: +91 562-2227261 홈페이지: https://www.tajmahal.gov.in/

<자료원 : 해당 홈페이지>

마. 식당

- 현지식당

○ 사이드웍(Side Wok)

도시명	Gurgaon
전화번호	+91 124 438 6144
주소	Ground Floor, MPD Tower, DLF Phase V, DLF Golf Course Road, Sector 54, Gurugram, Haryana 122002
가격	USD 10
영업시간	오후 12시~오후 10시
휴무일	연중무휴
소개	아시아 푸드 전문점
비고	가격대는 1인 기준. 아시아 푸드(타이, 중식 등) 전문점으로 고급 분위기의 실내 인테리어가 되어 있으며 합리적인 가격으로 이용 가능

○ 파이렛츠 오브 그릴(Pirates of Grill)

도시명	구르가온
-----	------

전화번호	+91 124 401 3333
주소	Shop No. 7 - 10, Ground Floor, MGF Megacity Mall, Near Sikanderpur Metro, Station, Mehrauli-Gurgaon Rd, A Block, DLF, Sector 28, Gurugram, Haryana 122002
가격	USD 15
영업시간	오후 12시~오후 10시
휴무일	연중무휴
소개	바베큐 전문 음식점
비고	가격대는 1인 기준 바베큐 전문 음식점으로 치킨, 새우, 탄두리 등 그릴 음식들이 있으며 채식주의자 음식도 같이 있음. 뷔페식으로 다양한 음식들이 있음

◦ 난킹(Nan King)

도시명	뉴델리
전화번호	+91 11 2613 8936
주소	Delhi Public School, Sector- C, Vasant Kunj, New Delhi, Delhi 110070
가격	USD 10
영업시간	오후 12시~오후 3시, 오후 6시~ 오후 11시
휴무일	연중무휴
소개	중국 해산물 요리 전문점
비고	가격대는 1인 기준, 중식 전문점이며 해산물 전문 레스토랑.

◦ 라지즈 어페어(Lazeez Affair)

도시명	뉴델리
전화번호	+91 98993 30055
주소	Chanakyapuri Shopping Complex, 48, Malcha Marg, New Delhi, Delhi 110021
가격	USD 20
영업시간	오전 10시~오후 11시
휴무일	연중무휴
소개	인도 전통 음식점
비고	가격대는 1인 기준, 인도 전통 요리 전문점이며, 식당 내부가 깔끔하며 탄두리 및 커리 음식 등 다양한 인도 요리를 맛볼 수 있음

○ 굴라티(Gulati)

도시명	뉴델리
전화번호	+91 011 2338 8836
주소	6, Pandara Road Market,
가격	USD 15
영업시간	오후 12시~오전 12시
휴무일	연중무휴
소개	인도 전통 음식점
비고	가격대는 1인 기준 인도 전통 음식 전문점이며, 인도 현지인들 사이에 인기가 많으며 가격도 음식 대비 저렴한 편임, 식당 내부 인테리어도 세련됨.

<자료원 : Google>

- 한국식당

○ 명가 더비빔밥(MyoungGa The Bibimbab)

도시명	구르가온
전화번호	+91 9650275322
주소	202A, South Point Mall, Golf Course Road, Sector 53, Gurugram, Haryana 122002
가격	USD 8
영업시간	오전 11시~오후 9시
휴무일	연중무휴
소개	각종 찌개, 탕 고기류 등 한식 전문

○ 미소()

도시명	구르가온
전화번호	+91 99102 99367
주소	Unit 201D, Second Floor, Global Foyer Building, Golf Course Road, Sector 43, Gurugram, Haryana 122002
가격	USD 8
영업시간	오후 12시~오후 9시
휴무일	연중무휴
소개	편안한 분위기에서 식사하기 좋은 곳이며, 해물탕, 감자탕 등 다양한 한국 요리를 즐길 수 있음.

○ 하루()

도시명	구르가온
전화번호	+91 98108 04367
주소	Shop No 1, Sector 53, South Point Mall , LG, Gurugram, Haryana 122022
가격	USD 8
영업시간	오후 12시~오후 9시
휴무일	연중무휴
소개	한국식 중화요리 전문점이며 식당이 위치한 건물에 한국 빵집 및 한인마트가 있어 식사 후 디저트 및 간단한 한국 음식 재료들을 살 수 있음.

○ 한스키친(Hahns Kitchen)

도시명	구르가온
전화번호	0124 408 5334
주소	SN T1/101, 1st Flr, One Horizon Centre, Golf Course Road, Gurugram, Haryana 122002
가격	USD 8
영업시간	오전 11시:30분~오후 11시
휴무일	연중무휴
소개	깔끔하고 세련된 인테리어로 회사 미팅하기에 적합하며, 가족과도 식사하기 좋은 식당, 각종 찌개, 탕 고기 류 등 한식 전문

○ 단비(The barbecue house Danbi)

도시명	구르가온
전화번호	98217-80098 / 99107-73761
주소	veritas tower, Gurugram, Haryana
가격	USD 8
영업시간	오전 11시~오후 11시
휴무일	연중무휴
소개	깔끔하고 세련된 인테리어로 회사 미팅하기에 적합하며, 가족과도 식사하기 좋은 식당, 각종 찌개, 탕 고기 류 등 한식 전문

○ 궁()

도시명	델리
전화번호	+91 11 4608 2663 / 98712-95093
주소	D-1/B Near Aashirwad Complex, Green Park, New Delhi, Delhi 110016
가격	USD 10
영업시간	오후 12시~오후 9시
휴무일	연중무휴
소개	델리에 위치한 한식당으로, 만찬이나 여러사람이 함께 식사하기 좋은 식당, 갈비, 등심, 한식 전문

○ 서울식당()

도시명	델리
전화번호	+91 11 4100 3848
주소	Ansal Plaza, August Kranti Marg, Hudco Place, Andrews Ganj Extension, Andrews Ganj, New Delhi, Delhi 110049
가격	USD 6
영업시간	오전 11시~오후 9시
휴무일	연중무휴
소개	델리에 위치한 식당이며, 각종 찌개류 등 다양한 한식이 있으며 편안한 자리에서 식사하기 좋은 식당

<자료원 : Google>

바. 호텔

- 비즈니스 호텔

○ 더 릴라(The leela)

도시명	구르가온
주소	Africa Ave, Diplomatic Enclave, Chanakyapuri, New Delhi, Delhi 110023
전화번호	+91 11-3933-1234/
홈페이지	https://www.theleela.com
숙박료	USD 70(스탠다드 룸)
소개	5성급 호텔로 국제 중요 행사 및 포럼 등 주최되고 있으며 한국에서 인도로 출장올때 많이 이용하는 호텔임. 구르가온과 뉴델리 경계 부근에 위치함.

○ 코트야드 메리어트(COURTYARD marriott)

도시명	구르가온
주소	Plot No, 27 B, Sector Rd, B Block, Sushant Lok Phase I, Sector 27, Gurugram, Haryana 122002
전화번호	0124 488 8444
홈페이지	https://www.marriott.com/reservation/rateListMenu.mi?defaultTab=standard
숙박료	USD 30~35(스탠다드 룸)
소개	4성급 호텔로 구르가온 시내 중심부에 있으며 인디 라 간디 국제 공항(뉴델리 공항)에서 14km 떨어진 곳에 위치.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깨끗하고 현대적인 시설에 머물 수 있음

○ 크라운 플라자(Crowne Plaza)

도시명	구르가온
주소	Site No.2 Sector 29 Opposite Signature Tower, Gurugram, Haryana 122001
전화번호	0124 453 4000
홈페이지	https://www.ihg.com/hotels/kr/ko/gurgaon/ndegg/hoteldetail?fromRedirect=true&qBrs=6c.hi.ex.sb.ul.ic.cp.cw.in.vn.cv.rs.ki.ma.sp.va.sp.re.vx.nd.ii.sx&qSrt=sAV&qDest=%25EA%25B5%25AC%25EB%25A5%25B4%25EA%25B0%2580%25EC%2598%25A8&qRms=1&qAdlt=1&qChld=0&qCiD=05&qCiMy=042021&qCoD=06&qCoMy=042021&qAAR=6CBARC
숙박료	USD 40~50(스탠다드 룸)
소개	5성급 호텔로 구르가온 레저 밸리 공원에서 도보로 13 분, 킹덤 오브 드림스 극장에서 도보로 15 분 거리. 내부 시설이 럭셔리하며 비즈니스맨들에게 적합한 호텔. 브라질 식당, 트렌디한 디저트 카페 있음
비고	주차 무료

○ 오베로이 호텔(The Oberoi)

도시명	뉴델리
주소	Dr. Zakir Hussain Marg New Delhi - 110003.
전화번호	+91 11-2436-3030/
홈페이지	https://www.oberoihotels.com/
숙박료	USD 160(스탠다드 룸)
소개	5성급 최고급 호텔로 해외 주요 인사들이나 VIP 고객들이 주로 이용하는 호텔임. 비즈니스맨들에게도 적합한 호텔로, 내부시설도 깨끗하고 위치도 뉴델리 시내 중심지에 위치함.

○ 르메르디안 호텔(Le Meridien)

도시명	뉴델리
주소	Windsor Place, Janpath, New Delhi - 110001.
전화번호	+91 11-2371-0101/
홈페이지	https://www.marriott.com/hotels/travel/delmd-le-meridien-new-delhi/
숙박료	USD 45~50(스탠다드 룸)
소개	5성급 호텔로 뉴델리 출장 시 이용하기에 적합하며 뉴델리 시내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 미팅 방문이나 호텔로 찾아오기도 적합하여 비즈니스 미팅을 하기에 편리함.

◦ JW 메리어트(JW Marriott Hotel New Delhi Aerocity)

도시명	뉴델리
주소	Asset Area 4 - Hospitality District Delhi, Aerocity, New Delhi, Delhi 110037
전화번호	011 4521 2121
홈페이지	https://www.marriott.com/reservation/rateListMenu.mi?defaultTab=standard
숙박료	USD 80(스탠다드 룸)
소개	델리 에어로시티 지하철역에서 도보로 8분 거리에 있으며 인디라간디국제공항 터미널에서 2.5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인도 출장 시 이용하기 적합, 세계 각국의 요리를 선보이는 유명 뷔페, 라이브 공연이 열리는 라운지 바 있음

<자료원 : Google>

- 게스트하우스

◦ 신라 게스트하우스(Silla Guest House)

도시명	구르가온
주소	The Belaire DLF Phase5 Gurgaon Haryana, Gurgaon
전화번호	+91 9899235829
홈페이지	https://blog.naver.com/silla2006
숙박료	USD 100~110(일반룸)
소개	뉴델리 국제 공항에서 차로 25분 소요 신도시 구르가온 내 최고급 아파트에 위치, 한식 제공 및 다양한 출장 서비스 제공
비고	이메일: silla2006@gmail.com

◦ 구하우스 (Koo House)

도시명	노이다
주소	Plot7 Chi3- Casia Nodosa Estate, Great Noida

전화번호	+91 9811649124
숙박료	USD 100~110(일반룸)
소개	뉴델리 국제 공항에서 약 50km 떨어진 신도시 그레이터 노이다 중심부 위치, 한식 제공 및 다양한 출장서비스 제공
비고	이메일: kss8032@hanmail.net

○ 코린도 하우스 (Korindo house)

도시명	뉴델리
주소	C3, Green Park Extension, New Delhi-110016
전화번호	+91 98111-73132 / 98116-16374
홈페이지	https://blog.naver.com/balsam1014
숙박료	USD 100 ~ 110 (싱글룸)
소개	뉴델리 국제공항에서 25분 소요, 구르가온, 노이다 등으로 이동이 편이한 지역의 고급 아파트에 위치, 한식 제공 및 다양한 출장 서비스 제공
비고	이메일: korindo100@gmail.com / abcindia@naver.com

<자료원 : 동 사이트 및 KOTRA 뉴델리 무역관 자료 종합>

사. 치안

치안상황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인도의 치안은 상당히 안정된 편이며, 인도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인구당 범죄율 또한 낮은 편이다. 다만, 인도가 워낙 넓은 나라이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2020년 3월 23일부로 외교부는 인도 북부의 카슈미르 지역과 카르길 지역을 여행 경보 3단계 철수권고지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서부 카르길 지역은 험준한 산악지역 특성과 파키스탄과 국경을 맞대고 있기에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으며, 카슈미르 지역은 인도-중국 국경분쟁 발생 지역으로 여행객의 안전을 위해 철수권고지역으로 지정하였다.

하기 내용은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외국인 대상 범죄유형이다.

○ 강도, 절도, 소매치기

- 외국인들에게 가장 많이 발생하는 범죄는 강도 및 절도이며, 그 수법은 현지인이 친밀감을 나타내며 접근하여 대화를 나누다가 어느 정도 친해지면 수면제 등 약물을 탄 음식물을 호의로 건네주어 먹게 하고 잠든 사이 소지품을 강탈하는 사건이 게스트하우스, 기차 등에서 가끔 발생한다. 또한, 관광명소, 지하철역, 기념품점, 시장 등 혼잡장소에서 고객을 하거나 관광안내를 한다며 접근하여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 지갑, 카메라, 휴대전화 등 고가품을 소매치기하는 사례가 흔히 발생한다. 그러므로 낯선 사람이 주는 음식물은 절대 섭취해서는 안되며 혼잡장소에서 의도적으로 접근하는 사람은 관심을 보이지 말고, 귀중품은 복대를 이용하여 항상 몸에 소지하는 등 보관에 유의하여야 한다.

- 기차역 등 다중 밀집지역에서 오토바이 등을 이용한 날치기 사례가 빈발하므로 외출 시 고가품, 귀금속류 등을 휴대치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여권, 현금 등이 든 가방을 허술하게 메거나 차량 탑승 시 차창을 내린 채 소지품이 바깥에서 관찰되도록 하는 등의 행위는 삼가야

한다.

○ 성범죄

- 인도는 보수적인 사회로 아직도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매우 낮으며 인도 남성들의 외국 여성에 대한 호기심이 종종 성추행 심지어 성폭행 등의 성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 2012년 12월 발생한 버스 안 여대생 집단성폭행치사 사건은 인도 전역에 엄청난 충격과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켰으며, 그 외에도 스위스 주부 집단 성폭행, 미국인 여성 집단 성폭행 사건 등 외국인 여성상대 집단 성폭행 사건도 수시로 발생하여 뉴스 이슈화된 바 있다.

- 따라서 성범죄 예방을 위해 여성의 경우 가급적 혼자 여행하지 말고, 불가피하게 혼자 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야간에 기차, 버스를 이용하여 이동하거나 저렴한 게스트하우스에서 숙박을 하는 경우에는 주위의 사람을 미리 확인하고 출입구의 시정을 확실히 하며, 오토릭샤, 택시를 이용 시에는 되도록 대로(大路),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을 이용하여 이동할 것을 요구하고 기사가 의심스러울 경우에는 승차하지 말아야 한다. 관광지, 기차역 등에서 목적지가 같은 방향이라며 호의로 오토바이를 태워준다고 제안하는 경우 및 인도남자의 이유 없는 접근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거절 의사를 표현하며, 계속하여 추근대는 경우에는 소리를 지르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등 주변에 알려야 한다.

○ 호객 및 폭리행위(여행사기)

-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오토릭샤, 택시기사 등이 여행사, 호텔 등과 결탁하여 공항, 기차역에 도착하는 여행객들이 '특정 호텔로 가져'고 하면 '축제나 테러로 그 지역이 폐쇄되었다. 호텔이 영업을 하지 않는다'라고 속이고 다른 여행사나 호텔 등에 데려다주고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을 요구하는 등 폭리를 취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한다.

- 따라서 폭리행위를 피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미리 묵고자하는 숙소의 위치, 연락처, 가격 등 정보를 파악하고, 만일 오토릭샤, 택시기사 등이 다른 곳으로 안내하려고 하여도 이에 응하지 말고 원래 예정하였던 목적지로 가자고 해야 한다. 또한, 사실 여행사가 마치 정부에서 운영하는 여행사인 것처럼 속이고 자신들의 여행사로 안내해서 바가지 상품을 강매하는 경우도 있으니, 정부운영 또는 정부보증 운운하는 여행사의 사기판촉에 절대 말려들지 않도록 해야 한다.

○ 환전 사기

- 현지인이 여행객에 접근, 유리한 환전조건을 제시한 후 약속한 환전금액에 못 미치게 환전해 주는 환전 사기 사례가 있다. 환전사기범은 눈앞에서 지폐를 세어 보인 후 봉투에 넣어 교부하는 과정에서 일부를 빼돌리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노상에서 환전하거나 무면허 환전소를 이용하는 것은 삼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응급상황 대처요령

1) 부상 시 병원 이용

과거 사회주의 영향을 받은 관계로 전국 각지에 정부운영 병원(Government Hospital)이 있어 외국인도 무료로 응급조치를 받을 수는 있으나, 의료진 부족 및 장비·시설의 노후, 비위생적 환경 등 우리나라에 비하면 의로서비스는 현저히 떨어진다. 델리, 첸나이, 뭄바이 등 주요 대도시에는 정부병원보다 의료진과 시설이 우수한 사설병원이 많이 있어 어렵지 않게 의로서비스를 받을 수는 있으나,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비용이 매우 비싼 편이다.

그러므로 델리, 뭄바이, 콜카타, 첸나이 등 대도시 이외 지역에서 발병, 사고 시 가급적 현지 병원에서 응급처치만 받고 대도시 병원으로 신속히 이동하여 진료를 받는 것이 좋으며, 수술 등 비교적 고가의 치료는 귀국하여 국내병원에서 받는 것이 비용, 의료 질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2) 여권/지갑 분실

여권이 분실될 경우를 대비해 복사본 및 휴대폰에 사본을 사진 형태로 가지고 있는 것이 좋다. 여권을 분실할 경우, 반드시 현지 경찰과 대사관으로 연락해야 한다. 한국 대사관에 신고하면 여행증명서(여권의 발급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에 발급되는 여권대용증명서)나 여권 재발급이 가능하며, 여행증명서만으로도 한국으로의 귀국이 가능하다. 여권 분실 시 재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다.

- 대사관 방문 및 발급 신청: 분실사유서 작성
- 구비서류: 여권용 사진 2장
- . 여권의 경우, 55달러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며 4~6주 소요
- . 여행증명서의 경우, 7달러 납부 후 당일 혹은 1~2일 소요

3) 응급 전화번호

- 화재 소방 : 101
- 경찰 : 100
- 구급차 : 102

4) 뉴델리 인근 종합병원

① FORTIS Hospital

- 주소 : 44, Opposite HUDA City Centre, Gurugram, Haryana 122002
- 전화번호 : +91-97300-01540

② Apollo Hospital

- 주소 : Sarita Vihar, Delhi Mathura Road, New Delhi - 110076
- 전화번호 : +91-011-2692-5858 / 5801

③ City hospital

- 주소 : B-1 / 1 N.E.A, Pusa Road, Central , New Delhi
- 전화번호 : +91-011-4225-5555

④ Max Hospital

- 주소 : 2, Press Enclave Road, Saket New Delhi, Delhi 110017
- 전화번호 : +91-011-2651-5050

9. 생활정보

가. 주택

주택 임차 방법 및 유의사항

뉴델리, 뭄바이, 첸나이 등 인도 주요 지역에서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가능한 한국인과 외국인이 다수 거주하는 지역을 선택하는 것이 생활편의나 안정상 유리하다. 뉴델리의 경우, 신도시인 구르가온과 노이다를 중심으로 아파트 단지가 형성되어, 일본인과 한국인이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주재원들이 거주하고 있다. 뉴델리의 경우 아파트가 거의 없고 3~4층짜리 단독주택의 일부를 빌리는 형태로 임차가 이루어진다.

단독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는 경우, 주택 임차료는 2022년 상반기 기준 월 600달러부터 월 2,500달러 수준으로 거실 1개, 방 3개, 주방 1개, 주차장 1~2개와 기본 가구가 포함된 가격이다. 전기세는 따로 지불해야 하며, 안전관리비, 공동유지비의 경우 포함, 불포함 여부를 계약서상에 기입해야 한다. 뉴델리에서 거주하는 경우 대개 단독 건물 임차를 하고 있다.

구르가온 지역은 뉴델리에 비해 저렴한 임차 가격에 동일한 면적, 전기 및 용수 문제 걱정이 없는 아파트를 구할 수 있어서 많은 주재원이 선호하는 곳이다. 한국 상점과 음식점이 모여있는 쇼핑몰을 갖추는 등 최근 한국 기업의 인도진출 활성화와 맞물려 거주 환경이 개선되고 있다. 구르가온 지역 아파트의 월 임대료는 500달러에서 3,500달러까지 다양하게 형성되어 있으며, 보통 연말에는 (10~12월) 내년에 새로 파견되는 사람들이 미리 임차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연중보다 5~10% 가격이 오른다.

2022년 상반기 기준,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지자 대부분의 임차 가격이 코로나 전 가격으로 회복하거나 가격이 오르고 있는 추세이다.

주택 임차 시 부동산 에이전트를 통하여 쉽게 물색할 수 있으며 수수료는 보통 1개월분의 임차료이나 네고 시 보름분의 임차료 지불도 가능하다. 이는 시기와 지역에 따라 이 수수료는 변경될 수가 있다. 임차 계약 시 대부분 소유주는 세금 감면을 위해 11개월 계약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며, 적게는 2개월 많게는 1년 치의 보증금을 요구하기도 한다. 계약 시 락인(Lock in)기간은 6~11개월로 정하는 경우가 많으며, 네고를 통해 0~3개월까지도 감면할 수 있다. 하지만 6개월 미만의 락인은 재계약에서 허용되는 경우가 있으며, 신규계약의 경우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편하다. 보증금은 해약 시 거주기간 중 미지불건 또는 주택 파손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공제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된다. 집주인에 따라서는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계약서 상에 보증금과 관련된 항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반환시기 또한 명시하는 것이 좋다. 추가로, 입주 당일 집주인 혹은 대리인이 함께 보이도록 영상 촬영을 해두면 훗날 계약 해지 시점 집주인과 보증금 문제가 발생했을 때 유용하게 활용 가능하다.

입주 전 수리를 필요로 하는 주택의 경우는 수리가 완료된 후 잔금을 지불하고 입주하는 것이 좋다. 가구를 함께 들이는 계약을 한 경우도 또한 가구나 관련 집기들의 대부분이 갖추어졌음을 확인하고 잔금을 치러야 하는데, 많은 경우 잔금이 지불된 뒤에 집주인이 집수리나 집기의 구비를 늦추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주요 건축물이나 집기가 파손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증빙을 남기고 공제 금액을 명확히 따져야 추후 계약 종료 시 보증금 반환을 두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 락인(Lock-in) : 필수적으로 주택 임차를 해야 하는 기간.

전화

전화 신청은 먼저 BSNL(국영 전화국)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받아, 작성하여 제출한다. 신청 시 신청서 및 거주 확인증 사본(주택 계약서 사본), 신원 증명서 사본 등을 제출한 후 최대 2~3주 내에 설치된다. 비용은 설치비, 등록비가 소요된다. 개인 통신사인 Airtel, TATA Indicom, Reliance의 경우, 신청서 및 거주 확인증 사본, 신원 증명서(아달카드, 여권) 사본 등을 제출한 후 최대 1~2주 이내에 설치된다. 비용은 설치비, 등록비가 소요된다.

전압/플러그

인도는 전력 공급이 수요를 쫓아가지 못해 약 10% 정도의 수급 격차가 상존하여 단전이 일상화되고 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단전이 되는 것을 볼 수 있고, 따라서 일반 가정이나 호텔 등에서 자체 발전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또한, 불안정한 전기사정으로 일반 생산 공장에서도 외부 전기를 사용하지 않고 자체 발전기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최근에는 뉴델리를 중심으로 전력 공급 상황이 상당히 개선된 상황이다.

전기 규격은 50Hz, 220V가 표준이다. 한국(60Hz)과 헤르츠가 달라 한국에서 반입한 국산 전자제품(특히 모터 부착)의 경우 가동되기는 하지만 100% 효율을 발휘하지 못하고 일정 기간(1~2년) 사용 후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다. 또한, 전압의 등락 폭이 커 180~280V까지 움직이므로 민간제품은 안정기를 사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외에도 컴퓨터 등에는 UPS를 부착하여 전기가 나갈 경우 자동으로 UPS 전원이 연결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플러그의 형태가 한국과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인도 전용 플러그가 달린 전자제품을 이용하거나 전환용 플러그를 사용해야 한다.

식수

물은 반드시 생수를 구입해서 마시거나 끓여 마셔야 한다. 인도에 온 지 얼마 되지 않거나 짧은 시간 체류하는 경우라면 양치질을 할 때도 생수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인도에서는 Aquafina, Kinley 등 다양한 브랜드의 생수를 슈퍼마켓 등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다.(1L 기준, 20루피, 약 330원) 인도의 하수 처리율은 매우 낮은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뉴델리의 경우 식수원을 히말라야 산지에서 끌어오지만, 노후 파이프 등을 사용하여 식수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구르가온, 노이다의 경우 지하수를 끌어서 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생수의 사용과 음용은 고급 호텔이라고 예외가 되는 것이 아니다.

나. 차량 구입 및 운전면허

구매방법

차량을 구입할 시 운전면허증, 거주지 확인서, 차량 구입 계약서, 차량 보험 지불증 등 관련 서류를 RTO(Regional Transport Office)에 제출하여 차량에 대한 검사(엔진 번호 등)를 마친다. 등록 후 10일 이내 차량번호판을 받을 수 있다.

차량은 현대, 스키, 도요타 등 다양한 브랜드가 있으며 현지 대리점을 통해 구입이 가능하며, 같은 차종이라도 옵션에 따라 가격 차이가 나는 것은 한국과 동일하다. 자동차 가격에서 세금 부분에 대한 언급을 빼놓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세금, 차량등록비용, 보험료 등 각종 공과금에 대해 미리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차량가격

인도는 자국 자동차 산업의 보호를 위해 수입차에 대한 고율의 관세를 적용하고 있어 수입자동차의 가격은 매우 비싼 편이다. 현지 생산에서는 시장점유율 1위 마루티 스키사와 한국 현대자동차의 차량의 인기가 높다. 인도의 도로 사정으로 인해 SUV 차량이 선호되고 있다. 차량 가격은 한국보다 조금 낮은 수준으로 경차의 경우 800~1,500만 원, 세단은 1,200~2,000만원 가량이며, SUV는 소형 위주로 판매되고 1,800~2,500만 원 수준이다.

*최근 차량 반도체 수급 문제 및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자동차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다.

운전면허 취득

국제면허증으로 운전이 가능하며 인도 면허취득이 가능하나 인도는 도로환경이 낙후되어 운전 시 위험한 상황이 자주 발생하므로 외국인 대부분의 경우 현지 기사(드라이버)를 고용한다.

다. 은행 계좌 개설

주요은행

- 한국계 은행 : 신한은행(뉴델리 등 3개 지점), 우리은행(구르가온 등 1개 지점), 하나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등
- 글로벌 은행 : HSBC, Citi Bank, Standard Chartered Bank 등
- 인도 은행 : State Bank of India, Baroda Bank, ICICI Bank, Punjab National Bank, HDFC Bank 등

계좌 개설방법

은행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 개인 여권 사본, 회사 고용 계약서, 팬카드, 거주 확인서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 하면 되고, 은행마다 다르나 은행 영업일 기준 7일 내지 15일 정도 소요된다. 한국인의 경우 대개 대도시를 위주로 영업을 하고 있는 한국계 은행에서 계좌를 열어 사용한다.

라. 교육

- 주요 국제학교

○ GD Goenka World School

도시명	구르가온
커리큘럼	구르가온 주에 위치한 국제학교로 입학시험 후 입학이 가능하며 기숙사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수업시간은 아침 7시 45분~오후 3시며 인도학제인 CBSE와 외국학제인 IGCSE와 IB를 따른다.
학비	기숙사비 10,696달러(한 학기당) 8학년까지 21,392달러 9~12학년까지 23,640달러
홈페이지	https://gdgws.gdgoenka.com/
비고	구르가온 내 국제학교

○ AES (Amarican Embassy School)

도시명	뉴델리
커리큘럼	뉴델리에 위치한 미국 대사관 학교로 입학시험 후 입학이 가능하며 수업시간은 아침 7시 45분~오후 3시이며 외국학제인 IGCSE와 IB를 따른다.
학비	8학년까지 31,880달러 9~12학년까지 33,605달러
홈페이지	https://aes.ac.in/
비고	미국 대사관에서 운영되는 학교

<자료원 : 동 사이트 및 KOTRA 뉴델리 무역관 자료 종합>

- 현지학교

o Lancers International School

도시명	구르가온
커리큘럼	구르가온주에 위치한 현지 국제학교로 시험 후 입학이 가능하며, 수업시간은 아침 7시 45분~오후 3시이며 인도학제인 CBSE와 외국학제인 IGCSE와 IB를 따른다. (5월 기준, 재택 온라인수업 진행)
학비	첫 등록비 - 185,000루피(한화 약 287만원) 연간 수업 등록료 - 50,000 ~ 66,000루피(한화 약 83~109만원) 분기별 수업료 - 25,000~114,000루피(한화 약 41.5만원 ~ 189만원) * 환율 1루피 = 16.6원 * 2022년 4월 기준 가격
홈페이지	http://www.lis.ac.in/
비고	구르가온 내 현지-국제학교

o Delhi Public School

도시명	뉴델리
커리큘럼	뉴델리에 명문 현지 학교로 입학시험 후 입학이 가능하며 수업시간은 아침 7시 45분~오후 2시이며 인도학제인 CBSE를 따른다. (5월 기준, 재택 온라인수업 진행)
학비	1학년 - 33,000루피(한화 약 55만원) 2학년 - 31,280루피(한화 약 52만원) 3~10학년 - 31,610루피(한화 약 52만원) 11~12학년 - 28,950루피(한화 약 48만원) * 환율 1루피 = 16.6원 * 2022년 4월 기준 가격
홈페이지	https://www.dpsrkp.net/
비고	대부분의 현지 학교는 입학 시 기부금을 요구한다.

<자료원 : 동 사이트 및 KOTRA 뉴델리 무역관 자료 종합>

마. 병원

o Fortis Hospital

도시명	구르가온
주소	Tower A, Unitech Business Park, Block F, South City1, Sector-41, Gurgaon, Haryana
전화번호	0124 37686 268
진료과목	종합병원

○ Medanta

도시명	구르가온
주소	CH Baktawar Singh Rd, near Olympus, Medicity, Islampur Colony, Sector 38, Gurugram, Haryana 122001
전화번호	0124 414 1414
진료과목	종합병원

○ Jaypee Hospital

도시명	노이다
주소	Jaypee Hospital Rd, Goberdhanpur, Sector 128, Noida, Uttar Pradesh
전화번호	1204122222
진료과목	종합병원

○ Indraprastha Apollo Hospital

도시명	뉴델리
주소	Srita Vihar Delhi Mathura Road, New Delhi
전화번호	011 2987 1090
진료과목	종합병원

○ Max Hospital

도시명	뉴델리
주소	2, Press Enclave Road, Saket
전화번호	011 2651 5050
진료과목	종합병원

○ AIIMS Centre

도시명	뉴델리
주소	Ansari Nagar, New Delhi - 110029
전화번호	011 2658 8500 / 8700
진료과목	종합병원

바. 쇼핑 및 여가생활

- 쇼핑센터/몰/백화점

○ Ambience Mall

도시명	구르가온, 뉴델리
주소	구르가온지점 - Ambience Mall Gurgaon, National Highway - 8 뉴델리지점 - Nelson Mandela Marg, Ambience Island, Vasant Kunj II, Vasant Kunj, New Delhi,
홈페이지	http://www.ambiencemalls.com
비고	뉴델리. 구르가온에 위치한 엠비언스몰은 각 각 뉴델리 시내공항에서 15분 정도 걸리며, 여러 쇼핑몰이 복합적으로 위치해 있다.

○ South Point Mall

도시명	구르가온
주소	South Point Mall, Golf Course Road, DLF City, Phase V, Sector 53, Gurugaon
홈페이지	http://www.southpoint.com
비고	뉴델리 수도권인 구르가온에 위치한 사우스포인트몰은 한국인, 일본인이 주로 애용하는몰로 한국식품점, 한국음식점, 일본음식점 등이 위치해있다.

○ MGF Megacity Mall

도시명	구르가온
주소	Mehrauli-Gurgaon Rd, near chakkarpur, A Block, DLF Phase 1, Sector 28, Gurugram, Haryana 122002
홈페이지	http://mgf.co/business-areas/mgf-mall-management/mgf-mega-city-gurgaon/
비고	뉴델리 수도권인 구르가온에 위치한 메가시티몰은 한식당 및 대형 한식료품점, 한인 미용실, 대형 전자제품 전문점 입점. 또한 치과 및 마사지사 등 생활 편의시설이 있다.

○ DLF Promenade

도시명	뉴델리
주소	3 Nelson Mandela Marg, Vasant Kunj Mall Road, New Delh
홈페이지	http://www.dlfpromenade.com/
비고	뉴델리 중심부에 위치한 프로미네이드몰은 엠비언스델리몰과 DLF엠포리오몰과 연결돼 있으며, 주요 브랜드 의류 가격은 보통 한국보다 저렴한 편이다.

<자료원 : 동 사이트 및 KOTRA 뉴델리 무역관 자료 종합>

- 식품점

o Le Marche

도시명	구르가온
주소	Ground floor, South Point Mall, Golf Course Road, DLF City, Phase V, Sector 53, Gurugaon
취급 식료품	과일, 생선 등 각종 식료품과 수입식품
비고	구르가온주에 위치한 대형 식품점으로, 주로 수입 식품이 많다.

o KS MART(구 Kims MART)

도시명	구르가온
주소	Basement, DT Mega Mall, Golf Course Road, DLF City, Phase V, Sector 53, Gurugaon
취급 식료품	한국 식품과 현지 특산품
비고	한국 식품점이나 현지 특산품도 판매한다.

o INA Market

도시명	뉴델리
주소	Sri Aurobindo Marg, Aviation Colony, INA Colony, New Delhi
취급 식료품	과일, 생선 등 각종 식료품과 특산품
비고	뉴델리 중심부에 위치한 현지시장으로 번잡하나 다양한 과일과 뉴델리지역에서 구하기 어려운 해산물을 구하기 적합하다.

<자료원 : 동 사이트 및 KOTRA 뉴델리 무역관 자료 종합>

- 기타 편의시설

o DLF Golf and Country Club

도시명	구르가온
주소	Opp American Express, Golf Course Road, DLF Phase 5, Sector 42,, Gurugram, Haryana
홈페이지	http://www.dlfgolfresort.com/
소개	구르가온에 소재한 골프장

o Jaypee Greens

크리스마스	2023-12-25	2023-12-25
-------	------------	------------

<자료원 : KOTRA 뉴델리 무역관 자료 종합>

10. KOTRA 무역관 안내

○ 뉴델리 무역관

무역관 주소 및 우편배송지

- 주소 : Unit 307, 3rd Floor, Worldmark 3, Aerocity, Indira Gandhi International Airport, New Delhi- 110037
- 전화 : (91-11)4230-6300
- FAX : (91-11)4230-6301
- E-MAIL : Reception@ktcdelhi.net

공항-무역관 이동

○ 공항 출발 시

무역관이 위치한 Aerocity는 인디라 간디 국제공항에서 약 3.9km 떨어져 있어 이동 시 택시 등을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약 5분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 공항에서 빠져나온 뒤 Northern Access Road를 타고 뉴델리 방면으로 이동하다가 유턴한다. 도로를 따라가다 보면 좌편으로 Lemon Tree Premier 호텔이 보이고, 호텔을 지나 좌회전하면 뒤편으로 Worldmark 3 건물이 보인다.

○ 건물 도착 후

3개의 빌딩(Worldmark 1,2,3) 중 무역관은 3빌딩의 3층에 위치해 있으며, 로비 Security Desk에서 방문처를 밝히고 신분증을 제시하면 무역관에 유선으로 확인 후 출입증을 제공해 준다. 무역관의 확인을 위하여 방문 전 이메일 또는 유선으로 방문 일정을 사전에 협의하는 것이 좋다.

○ 뭄바이 무역관

무역관 주소 및 우편배송지

- 주소 : 1001A, Tower 1, Indiabulls Finance Centre, Senapati Bapat Marg, Elphinstone(W), Mumbai 400 013, INDIA
- 전화 : (91-22) 4925-5400
- 팩스 : (91-22) 4925-5454
- E-MAIL : kotra_mumbai@kotra.or.kr

공항-무역관 이동

○ 공항 출발 시

국제공항(T2) → 뭄바이 무역관

로컬 택시보다는 콜택시인 우버(Uber) 혹은 올라(Ola)를 이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도착 게이트를 나와 P4로 이동하면 우버/올라 주차장이 나오며 앱을 통해 쉽게 요청할 수 있다.

앱에 'Kotra Mumabi'를 입력하면 쉽게 찾을 수 있으며 앱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안내 데스크를 통해 요청 할 수 있다. 정해진 요금으로 흥정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다. 택시 기준 약 30분이 소요되면 러시아워에는 약 1시간이 소요된다.

국내공항(T1) → 뭄바이 무역관

국내공항에서도 콜택시를 이용하는 걸 추천하며 도착 게이트가 외부와 바로 연결되어 있어 쉽게 요청할 수 있다. 기준 약 30분이 소요되면 러시아워에는 약 1시간이 소요된다.

*주의사항

콜택시는 최종 금액 외에는 추가로 지불 할 것이 없으며, 간혹 기사들이 톨게이트비용, 공항 주차 요금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최종 금액에 다 포함되어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 벵갈루루 무역관

무역관 주소 및 우편배송지

- 주소 : 9th Floor, Embassy One Pinnacle Tower, No. 8, Bellary Road, Ganganagar, Bengaluru, Karnataka 560032, India
- 전화 : 91-80-6809-9200 (무역관 리셉션)
- E-MAIL : kotrabangalore9200@gmail.com

공항-무역관 이동

- 공항 출발 시

공항 출발 시 벵갈루루 공항에서 시내 중심까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가 곤란하며, 택시(Uber, Ola)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도 도착 전 Uber 또는 Ola 앱을 설치하고, 목적지를 Embassy One 또는 KOTRA Bengaluru로 설정 후 Uber존 또는 Ola존에 대기하고 있는 택시를 이용하여 쉽게 이동할 수 있다. 벵갈루루의 경우 대중교통이 보편화 되지 않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택시를 이용할 것을 추천한다.

○ 첸나이 무역관

무역관 주소 및 우편배송지

- 주소: Bannari Amman Towers, 3th Floor, 29, Dr Radha Krishnan Salai, Mylapore, Chennai, Tamil Nadu 600004
- 전화: (91-44)2847-2281~7
- 팩스: (91-44)2499-4728
- E-MAIL : E-MAIL : seo16@kotra.or.kr

공항-무역관 이동

- 공항 출발 시

첸나이 공항에서 시내 중심까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가 곤란하며, 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사에게 무역관 주소를 보여 주면 쉽게 찾을 수 있으며, 평균 소요시간은 40분가량이다. 첸나이의 경우 대중교통이 보편화 되지 않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택시를 이용할 것을 추천한다.

○ 콜카타 무역관

무역관 주소 및 우편배송지

- 주소 : Smart Works Victoria Park, Level 8, Block GN37/2, Sector V, Salt Lake City, Kolkata, West Bengal 700091
- 전화 : (91-33)4055-8150
- E-MAIL : kolkata@kotra.org.in

공항-무역관 이동

○ 공항 출발 시

콜카타 공항에서 시내 중심까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가 곤란하며, 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운전사에게 무역관 주소를 보여 주면 쉽게 찾아올 수 있다. 대략 30분에서 40분가량 소요된다. 콜카타의 경우 대중교통이 불편화 되지 않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택시를 이용할 것을 추천한다.

○ 암다바드 무역관

무역관 주소 및 우편배송지

- 주소: 805 &806 Shivalik Shilp BD, Iscon Circle, SG Road, Ahmedabad 380015, Gujarat, India
- 전화: (91-79) 49130-111
- E-MAIL : leese@kotra.or.kr

공항-무역관 이동

○ 공항 출발 시

암다바드 공항에서 시내 중심까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가 곤란하며, 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운전사에게 무역관 주소를 보여 주면 쉽게 찾아올 수 있다. 대략 40분에서 50분가량 소요된다. 암다바드의 경우 대중교통이 불편화 되지 않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택시를 이용할 것을 추천한다.

국가정보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